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82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215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10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16호 일반측량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19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17호 일반측량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19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18호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 20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25호 일반측량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2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27호 승릉천 등 10개 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 작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결정(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21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3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2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42호 공시송달 공고 ····· 2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4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2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46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220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29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2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0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8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1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2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0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27호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2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28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30호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31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55

군 · 구

○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167호『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371

○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168호『도화도시개발구역 8-5블록』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372

훈 령

인 천 광 역 시 훈 령 (발 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현안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공직자의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개정하여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 이행에 대한 면책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제5조)

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통보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요건 신설(제5조)

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요건 신설(제5조)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15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2. 면책심사신청자가「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다만,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면책심사신청자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다만,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10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10호선, 사업명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밖 대2-10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 11.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9-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10호선) 사업
   - ❍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밖 대2-1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 면적(A)=3,431㎡, 연장(L)=96.6m, 폭(B)=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김진학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상권자	주 소
연수구 동춘동	산59-10	임야	3,4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

용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지 번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연수구 동춘동	산59-10	임야	3,431	3,4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66호(2018.07.05.)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2번지(영종 A58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4차)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 A58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변경 없음)

㈜화성개발 대표이사 도훈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파크드림갤러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2번지(영종하늘도시 A58블록)

나. 대지면적: 31,106.00㎡

다. 건축면적: 4,766.9515㎡

라. 연 면 적: 68,704.4560㎡

마. 건설주택의 규모

- 공동주택: 지상 21층 / 8동 / 499세대
  · 64형 228세대, 73형 143세대, 75형 111세대, 84A형 10세대, 84B형 7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 지상1층

※ 지하주차장 기초 및 구조 변경, 기초파일 위치 조정

4. 사업시행기간: 2020. 5. ~ 2022. 9.(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사항(변경 없음)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청라A3블록 공동주택(외국인 전용 임대)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 티에스자산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상욱(변경 없음)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6번지(청라A3블록)

나. 대지면적 : 16,147.3㎡

다. 연 면 적 : 39,968.8772㎡

라.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 지상 17층/ 4개동/ 210세대
  · 84A형 153세대, 84B형 55세대, 84C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6개동

4. 사업기간(변경)

- 2019. 2. ~ 2021. 05. → 2019. 2. ~ 2021. 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 허가 사항(변경 없음)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0호(19.9.3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22차)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3단계 2020년
- 변경 : 3단계 2021년

○ 행정청 등 요구사항 반영

- 중구청 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PB15), 경찰서 부지 확보(PB9)
-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씨사이드파크 시공 현황 반영

○ 공동주택·블록형단독주택용지 평균규모 조정 등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 면적변경 : 507,709.2㎡ → 495,144.1㎡(감 12,565.1㎡, 차고지 제척)
- 노외주차장 신설, 공공보행통로확보, 획지계획 변경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0년 까지	2021년 까지	6,676,873.9	-	변경

○ 변경내역 및 사유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업기간 변경	■ 개발사업 기간 변경 ○ 기정 - 3단계 구간 시행기간 : 2020년 까지 ○ 변경 - 3단계 구간 시행기간 : 2021년 까지	○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사업기간 반영 ○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후 즉시 사업종료시기 도래에 따른 산업단지 적정 사업기간 반영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ㅇ 인구수용계획【변경】

[인구수용계획(총괄)]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인구수(명)	135,201	133,629	
세대수(호)	53,553	53,553	

[인구수용 세부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
계		기정	4,310,441.1	100.0		53,553	135,201		
		변경	4,308,790.5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3,359	8,568	61	
		변경	1,414,345.8	32.8		4,400	11,091	78	
	일반형	기정	870,967.7	20.2		2,498	6,369	73	360
		변경	870,967.7	20.2		2,498	6,295	72	360
	블럭형	기정	477,379.2	11.1		723	1,847	39	500
		변경	477,379.2	11.1		1,764	4,448	93	150~500
	휴양형	기정	65,998.9	1.5		138	352	53	500
		변경	65,998.9	1.5		138	348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59,361.5	64.0	(100.0)	45,179	113,844	412	
		변경	2,757,710.9	64.0	(100.0)	45,427	113,148	410	
	저층	기정	262,430.2	6.1	(9.5)	1,212	3,092	118	
		변경	262,430.2	6.1	(9.5)	1,537	3,873	148	
	중층	기정	709,614.6	16.4	(25.7)	9,976	25,439	358	
		변경	708,414.6	16.4	(25.7)	10,003	25,205	355	
	고층	기정	1,787,316.7	41.5	(64.8)	33,991	85,313	477	
		변경	1,786,866.1	41.5	(64.8)	33,887	84,070	470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3,015	7,689	562	
		변경	136,733.8	3.2		2,767	6,973	510	
유보지		기정	-	-	-	2,000	5,100		
		변경	-	-	-	959	2,417		

○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계	기정	4,310,441.1	100.0	53,553	135,201	
	변경	4,308,790.5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3,359	8,568	
	변경	1,414,345.8	32.8	4,400	11,091	
공동주택	기정	2,759,361.5	64.0	45,179	113,844	
	변경	2,757,710.9	64.0	45,427	113,148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3,015	7,689	
	변경	136,733.8	3.2	2,767	6,973	
유보지	기정	-	-	2,000	5,100	
	변경	-	-	959	2,417	

주) 전시 및 산업시설 유보지내에 959세대 계획

▷ 단독주택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계	기정	1,414,345.8			3,359	8,568
	변경	1,414,345.8			4,400	11,091
일반형	기정	870,967.7	100%/150%	360	2,498	6,369
	변경	870,967.7	100%/150%	360	2,498	6,295
블럭형	기정	477,379.2	120%	500	723	1,847
	변경	477,379.2	120%	150 ~ 500	1,764	4,448
휴양형	기정	65,998.9	120%	500	138	352
	변경	65,998.9	120%	500	138	348

▷ 주상복합

구 분		면 적(㎡)	용적률주)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전용	분양		
계	기정	136,733.8	-	-	-	3,015	7,689
	변경	136,733.8	-	-	-	2,767	6,973
2BL (RC2)	기정	20,365.8	310%	60~85㎡	112	450	1,147
	변경	20,365.8	310%	60~85㎡	112	450	1,134
3BL (RC3)	기정	65,081.8	310%	60~85㎡	112	1,434	3,657
	변경	65,081.8	310%	85㎡초과, 60~85㎡	150 112	1,296	3,266
4BL (RC4)	기정	51,286.2	310%	60~85㎡	112	1,131	2,885
	변경	51,286.2	310%	85㎡초과, 60~85㎡	150 112	1,021	2,573

주) 건축물 전체 용적률

▷ 공동주택(저층)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262,430.2				1,212	3,092	
	변경	262,430.2				1,537	3,873	
A21	기정	56,078.9	80%	85㎡초과 60~85㎡	200 110	287	732	
	변경	56,078.9	80%	85㎡초과	150	298	751	
A22	기정	56,945.0	80%	85㎡초과 60~85㎡	200 110	287	732	
	변경	56,945.0	80%	85㎡초과	150	302	761	
A48	기정	57,345.0	80%	85㎡초과	400	116	296	
	변경	57,345.0	80%	85㎡초과	150	298	751	
A53	기정	21,095.6	100%	60～85㎡	100	211	538	
	변경	21,095.6	100%	60～85㎡	112	187	471	
A54	기정	49,870.3	80%	85㎡초과	400	100	255	
	변경	49,870.3	80%	85㎡초과	150	265	668	
A64	기정	21,095.4	100%	60～85㎡	100	211	539	
	변경	21,095.4	100%	60～85㎡	112	187	471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 공동주택(중층)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709,614.6				9,976	25,439	
	변경	708,414.6				10,003	25,205	
A10	기정	43,962.0	150%	60～85㎡	110	604	1,540	
	변경	43,962.0	150%	60～85㎡	110	604	1,522	
A11	기정	17,656.8	150%	85㎡초과	159	167	426	
	변경	17,656.8	150%	60～85㎡	112	236	595	
A13	기정	60,493.3	150%	60～85㎡	110	832	2,122	
	변경	60,493.3	150%	60～85㎡	112	808	2,036	외국인임대
A14	기정	23,290.2	150%	60～85㎡	110	320	816	
	변경	23,290.2	150%	60～85㎡	112	311	784	
A23	기정	41,017.5	150%	60～85㎡	110	564	1,438	
	변경	41,017.5	150%	60～85㎡	112	547	1,378	
A24	기정	46,628.9	150%	60～85㎡	110	641	1,635	
	변경	46,628.9	150%	60～85㎡	110	641	1,615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29	기정	41,481.1	150%	60㎡이하	80	784	1,999	국민임대
	변경	41,481.1	150%	60㎡이하	80	784	1,976	국민임대
A31	기정	30,710.1	150%	60～85㎡	110	422	1,076	
	변경	30,710.1	150%	60～85㎡	110	422	1,063	
A33	기정	33,467.0	150%	85㎡초과 60~85㎡	145 110	400	1,020	
	변경	33,467.0	150%	60～85㎡	112	447	1,126	
A35	기정	54,205.6	150%	60～85㎡	110	752	1,918	
	변경	54,205.6	150%	60～85㎡	110	752	1,895	
A37	기정	37,696.8	150%	60～85㎡	110	514	1,311	
	변경	37,696.8	150%	60～85㎡	110	514	1,295	
A40	기정	63,272.6	150%	60～85㎡	110	870	2,219	
	변경	63,272.6	150%	60～85㎡	110	870	2,192	
A41	기정	32,987.5	150%	60～85㎡	110	453	1,155	
	변경	32,987.5	150%	60～85㎡	112	440	1,109	
A51	기정	28,040.0	120%	60～85㎡	110	308	785	
	변경	26,840.0	120%	60～85㎡	107	299	753	
A57	기정	20,389.5	150%	60～85㎡	110	280	714	
	변경	20,389.5	150%	60～85㎡	112	272	685	
A58	기정	31,106.0	150%	60～85㎡	93	504	1,285	
	변경	31,106.0	150%	60～85㎡	93	504	1,270	
A62	기정	58,335.6	150%	60～85㎡	110	802	2,045	
	변경	58,335.6	150%	60～85㎡	110	802	2,021	
A63	기정	21,986.1	150%	60～85㎡	110	302	770	
	변경	21,986.1	150%	60～85㎡	112	293	738	
A67	기정	22,888.0	120%	60㎡이하	60	457	1,165	국민임대
	변경	22,888.0	120%	60㎡이하	60	457	1,152	국민임대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 공동주택(고층)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1,787,316.7**				**33,991**	**85,313**	
	변경	**1,786,866.1**				**33,887**	**84,070**	
A1	기정	24,048.0	190%	60～85㎡	110	422	1,076	
	변경	24,048.0	190%	60～85㎡	110	422	1,063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2	기정	23,581.0	190%	60㎡이하	45	990	1,584	행복주택
A3	기정	25,774.3	190%	60㎡이하	80	617	1,573	공공임대
	변경	25,774.3	190%	60～85㎡	112	435	1,096	공공임대
A4	기정	19,528.1	190%	60～85㎡	110	340	867	
	변경	19,528.1	190%	60～85㎡	110	340	857	
A5	기정	31,660.0	190%	60㎡이하	80	770	1,964	국민임대
	변경	31,660.0	190%	60㎡이하	80	770	1,940	국민임대
A6	기정	21,575.9	190%	60～85㎡	110	376	959	
	변경	21,575.9	190%	60～85㎡	110	376	948	
A7	기정	53,393.3	190%	60～85㎡	111	909	2,318	
	변경	53,393.3	190%	60～85㎡	111	909	2,291	
A8	기정	66,765.3	190%	85㎡초과 60~85㎡	126 110	1,153	2,940	
	변경	66,765.3	190%	85㎡초과 60~85㎡	126 110	1,153	2,906	
A9	기정	44,568.1	190%	85㎡초과 60~85㎡	126 100	847	2,160	
	변경	44,568.1	190%	60~85㎡	100	847	2,134	
A12	기정	75,681.9	200%	60~85㎡	105	1,445	3,685	
	변경	75,681.9	200%	60~85㎡	105	1,445	3,641	
A15	기정	35,104.0	180%	85㎡초과 60～85㎡ 60㎡이하	138 93 78	569	1,451	환지
	변경	35,104.0	180%	85㎡초과 60～85㎡ 60㎡이하	138 93 78	569	1,434	환지
A16	기정	90,808.0	180%	85㎡초과 60~85㎡	126 110	1,185	3,022	
	변경	90,808.0	180%	60～85㎡	112	1,457	3,672	
A18	기정	32,047.9	160%	60㎡이하	80	612	1,561	외국인분양
	변경	32,047.9	160%	85㎡초과 60~85㎡	150 112	438	1,104	외국인분양
A19	기정	27,771.1	180%	60～85㎡	110	444	1,132	외국인분양
	변경	27,771.1	180%	60～85㎡	112	444	1,119	외국인분양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20	기정	37,772.7	160%	85㎡초과	140	412	1,051	외국인분양
	변경	37,772.7	160%	85㎡초과 60~85㎡	150 112	516	1,300	외국인분양
A25	기정	72,300.5	190%	60～85㎡	110	1,260	3,213	
	변경	72,300.5	190%	60～85㎡	112	1,224	3,084	
A26	기정	42,347.0	190%	60~85㎡ 60㎡이하	110 80	731	1,864	
	변경	42,347.0	190%	85㎡초과 60~85㎡	150 112	687	1,731	
A27	기정	90,174.2	178%	60～85㎡	100	1,604	4,091	
	변경	90,174.2	178%	60～85㎡	100	1,604	4,042	
A28	기정	89,548.0	200%	85㎡초과 60~85㎡	145 110	1,426	3,636	
	변경	89,548.0	200%	85㎡초과 60~85㎡	145 110	1,426	3,594	
A30	기정	66,614.0	217%	60～85㎡	110	1,327	3,384	
	변경	66,614.0	217%	60～85㎡	110	1,327	3,344	
A32	기정	36,106.2	223%	60㎡이하	80	1,018	2,596	
	변경	36,106.2	223%	60㎡이하	80	1,018	2,565	
A34	기정	29,506.0	220%	60～85㎡	110	596	1,520	
	변경	29,506.0	220%	60～85㎡	110	596	1,502	
A36	기정	53,175.3	200%	60㎡이하	80	1,343	3,425	
	변경	53,175.3	200%	60㎡이하	80	1,343	3,384	
A38	기정	68,540.2	200%	60㎡이하	80	1,731	4,414	
	변경	68,540.2	200%	60㎡이하	80	1,731	4,362	
A39	기정	54,141.0	240%	85㎡초과	126	1,034	2,637	
	변경	53,690.4	240%	85㎡초과	126	1,034	2,606	
A42	기정	50,701.2	200%	60～85㎡	110	930	2,372	
	변경	50,701.2	200%	60～85㎡	110	930	2,344	
A43	기정	31,218.3	230%	60～85㎡	110	658	1,678	
	변경	31,218.3	230%	60～85㎡	110	658	1,658	
A44	기정	74,389.7	250%	85㎡초과	140	1,341	3,420	
	변경	74,389.7	250%	85㎡초과	140	1,341	3,379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45	기정	72,518.5	250%	60～85㎡	110	1,663	4,241	
	변경	72,518.5	250%	60～85㎡	110	1,663	4,191	
A46	기정	84,025.3	200%	60～85㎡	110	1,540	3,927	
	변경	84,025.3	200%	60～85㎡	110	1,540	3,881	
A47	기정	32,335.9	181%	60～85㎡	110	537	1,369	
	변경	32,335.9	181%	60～85㎡	110	537	1,353	
A49	기정	13,469.6	182%	60㎡이하	47	450	720	행복주택
A50	기정	18,489.3	182%	60～85㎡	100	339	864	
	변경	18,489.3	182%	60～85㎡	112	299	753	
A56	기정	35,921.1	180%	85㎡초과 60～85㎡	174 93	583	1,487	환지
	변경	35,921.1	180%	85㎡초과 60～85㎡	174 93	583	1,469	환지
A59	기정	25,406.4	182%	60㎡이하	80	580	1,479	
	변경	25,406.4	182%	60㎡이하	80	580	1,462	
A60	기정	41,624.9	182%	60～85㎡	110	694	1,770	
	변경	41,624.9	182%	60～85㎡	112	675	1,701	
A61	기정	34,540.6	190%	60～85㎡	110	602	1,535	외국인임대
	변경	34,540.6	190%	85㎡초과 60~85㎡	150 112	560	1,411	
A65	기정	25,033.4	180%	60～85㎡	110	344	877	
	변경	25,033.4	180%	60～85㎡	112	401	1,011	
A66	기정	35,110.5	180%	85㎡초과 60～85㎡	131 93	569	1,451	환지
	변경	35,110.5	180%	85㎡초과 60～85㎡	131 93	569	1,434	환지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 유보지(전시 및 산업시설)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전용	분양		
계	기정	-	-	-	-	2,000	5,100
	변경	-	-	-	-	959	2,417

○ 임대 및 외국인 분양주택【변경】

▷ 공급/ 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전 체		규 모 별						비고
				60㎡이하		60㎡~85㎡		85㎡초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기정	290,986.3	100.0	190,901.9	65.6	62,311.7	21.4	37,772.7	13.0	
	변경	316,939.0	100.0	133,079.7	42.0	114,038.7	36.0	69,820.6	22.0	
외국인 분 양	기정	97,591.7	33.5	32,047.9	11.0	27,771.1	9.5	37,772.7	13.0	
	변경	97,591.7	30.8	-	-	27,771.1	8.8	69,820.6	22.0	
임대	기정	193,394.6	66.5	158,854.0	54.6	34,540.6	11.9	-	-	
	변경	219,347.3	69.2	158,854.0	50.1	60,493.3	19.1	-	-	
국민	기정	158,854.0	54.6	158,854.0	54.6	-	-	-	-	공공임대, 행복주택 포함
	변경	158,854.0	50.1	133,079.7	42.0	25,774.3	8.1	-	-	
외국인	기정	34,540.6	11.9	-	-	34,540.6	11.9	-	-	
	변경	60,493.3	19.1	-	-	60,493.3	19.1	-	-	

※ 규모가 혼합된 블록은 가장 큰 규모로 비율 산정

▷ 국민임대 및 외국인 임대·분양주택 계획

구 분		면적(㎡)	면적구성비(%)	세대수	인구(명)	비고
합계	기정	290,986.3	100.0	6,138	14,284	
	변경	316,939.0	100.0	6,092	14,027	
외국인 분 양	기정	97,591.7	33.5	1,468	3,744	
	변경	97,591.7	30.8	1,398	3,523	
임대	기정	193,394.6	66.5	4,670	10,540	
	변경	219,347.3	69.2	4,694	10,504	
국민	기정	158,854.0	54.6	4,068	9,005	공공임대, 행복주택 포함
	변경	158,854.0	50.1	3,886	8,468	
외국인	기정	34,540.6	11.9	602	1,535	
	변경	60,493.3	19.1	808	2,036	

7.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19,300,049.1	19,300,049.1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4,173,707.3	4,172,056.7	감) 1,650.6	21.6	21.6	
	공동 주택	2,759,361.5	2,757,710.9	감) 1,650.6	14.3	14.3	
	단독 주택	1,414,345.8	1,414,345.8		7.3	7.3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113,926.2		0.6	0.6	
주상복합용지		136,733.8	136,733.8		0.7	0.7	
상업시설용지		479,614.9	479,614.9		2.5	2.5	
산업물류시설용지		493,207.0	489,714.0	감) 3,493.0	2.6	2.5	
업무시설용지	소 계	108,084.1	108,084.1		0.6	0.6	
	업무시설용지	97,535.6	97,535.6		0.5	0.5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10,548.5		0.1	0.1	
관광위락시설용지	소 계	350,700.0	350,700.0		1.8	1.8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65.0	215,365.0		1.1	1.1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0.7	0.7	
공공시설용지	소 계	10,911,988.8	10,917,132.4	증) 5,143.6	56.5	56.6	
	도로	3,213,827.5	3,213,954.2	증) 126.7	16.7	16.7	
	주차장	132,141.5	138,122.3	증) 5,980.8	0.7	0.8	
	공원	4,344,597.2	4,328,038.2	감) 16,599.0	22.5	22.4	
	녹지	1,543,853.8	1,551,228.7	증) 7,374.9	8.0	8.1	
	공공공지	42,131.2	42,131.2		0.2	0.2	
	문화시설	67,580.2	67,580.2		0.3	0.3	
	사회복지시설	10,040.2	10,040.2		0.0	0.0	
	체육시설용지	88,210.0	88,210.0		0.5	0.5	
	광장	537,737.4	547,245.4	증) 9,508.0	2.8	2.8	
	학교	403,528.7	403,528.7		2.1	2.1	
	변전소	6,519.7	6,519.7		0.0	0.0	
	복합터미널	23,513.8	23,513.8		0.1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5.1	12,565.1		0.1	0.1	
	종교용지	22,053.1	22,053.1		0.1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10,499.9		0.1	0.1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58,485.3		0.3	0.3	
	공공청사	214,934.8	213,647.0	감) 1,287.8	1.1	1.1	
	교육지원시설	14,911.3	14,911.3		0.1	0.1	
	주유소	22,259.2	22,259.2		0.1	0.1	
	배수지	12,705.1	12,705.1		0.1	0.1	
	통신시설용지	1,361.1	1,361.1		0.0	0.0	
	오수중계펌프장	489.0	489.0		0.0	0.0	분리
	빗물펌프장	1,851.9	1,851.9		0.0	0.0	표시
	종합의료시설	110,139.0	110,139.0		0.6	0.6	
	정압기	96.0	96.0		0.0	0.0	
	가압장	2,544.9	2,544.9		0.0	0.0	
	시장용지	1,548.8	1,548.8		0.0	0.0	
	창고시설용지	1,001.4	1,001.4		0.0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1,941.7		0.0	0.0	
	군사시설용지	8,402.0	8,402.0		0.0	0.0	
	송유시설용지	518.0	518.0		0.0	0.0	
유보지		2,532,087.0	2,532,087.0		13.1	13.1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주택건설용지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
계		기정	4,310,441.1	100.0		53,553	135,201		
		변경	4,308,790.5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3,359	8,568	61	
		변경	1,414,345.8	32.8		4,400	11,091	78	
	일반형	기정	870,967.7	20.2		2,498	6,369	73	360
		변경	870,967.7	20.2		2,498	6,295	72	360
	블럭형	기정	477,379.2	11.1		723	1,847	39	500
		변경	477,379.2	11.1		1,764	4,448	93	150～500
	휴양형	기정	65,998.9	1.5		138	352	53	500
		변경	65,998.9	1.5		138	348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59,361.5	64.0	(100.0)	45,179	113,844	412	
		변경	2,757,710.9	64.0	(100.0)	45,427	113,148	410	
	저층	기정	262,430.2	6.1	(9.5)	1,212	3,092	118	
		변경	262,430.2	6.1	(9.5)	1,537	3,873	148	
	중층	기정	709,614.6	16.4	(25.7)	9,976	25,439	358	
		변경	708,414.6	16.4	(25.7)	10,003	25,205	355	
	고층	기정	1,787,316.7	41.5	(64.8)	33,991	85,313	477	
		변경	1,786,866.1	41.5	(64.8)	33,887	84,070	470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3,015	7,689	562	
		변경	136,733.8	3.2		2,767	6,973	510	
유보지		기정	-	-	-	2,000	5,100		
		변경	-	-	-	959	2,417		

○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산업(물류)시설	기정	24개소	493,207.0	
	변경	24개소	489,714.0	

○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유보지	소계	기정	40개소	2,532,087	
	기정	1	6개소	264,903	
	기정	2	11개소	339,692	
	기정	3	5개소	149,471	
	기정	4	9개소	464,925	
	기정	5	6개소	1,032,476	
	기정	6	1개소	140,246	
	변경	6	1개소	136,362	
	기정	7	1개소	65,160	
	기정	8	1개소	75,214	
	변경	8	1개소	79,098	

8. 교통처리계획【변경】

○ 광역접근체계【변경 없음】

○ 신호교차로 및 가감속차로【변경 없음】

○ 가로망계획【변경 없음】

○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계획【변경 없음】

○ 도로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7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667.9㎡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794.6㎡

○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주차장	○ 주차장 : 49개소(132,141.5㎡)	○ 주차장 : 51개소(138,122.3㎡)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ㅇ 학교시설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학교시설	기정	24개소	403,528.7	
	변경	24개소	403,528.7	고5 주소오기 정정

ㅇ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ㅇ 의료시설 【변경 없음】

ㅇ 공공청사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공공청사	기정	17개소	214,934.8	
	변경	17개소	213,647.0	

ㅇ 문화시설 【변경 없음】

ㅇ 도서관 【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도서관	기정	2개소	10,000.0	
	변경	1개소	5,000.0	

ㅇ 경로당 【변경 없음】

ㅇ 주유소 【변경 없음】

ㅇ 종교시설 【변경 없음】

ㅇ 검문소 【변경 없음】

ㅇ 구립종합운동장 【변경 없음】

ㅇ 군사시설용지 【변경 없음】

ㅇ 봉안당(메모리얼파크) 【변경 없음】

ㅇ 통신시설용지 【변경 없음】

ㅇ 교육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ㅇ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없음】

ㅇ 복합공공시설 【신설】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복합공공시설	신설	1개소	5,000.0	

주) 향후 공원내 입지할 수 있도록 부지만 계획, 공원세부계획에 따라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ㅇ 기본방향 【변경 없음】

ㅇ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변경 없음】

ㅇ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 외국인 임대주택용지 위치 변경

구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13	기정	60,493.3	150%	60～85㎡	110	832	2,122	-
	변경	60,493.3	150%	60～85㎡	112	808	2,036	외국인임대
A61	기정	34,540.6	190%	60～85㎡	110	602	1,535	외국인임대
	변경	34,540.6	190%	85㎡초과 60~85㎡	150 112	560	1,411	-

12.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가. 상수도계획 【변경】

ㅇ 계획급수량 산정(변경)

- 생활용수 = 급수인구(140,273인) × 일최대 급수원단위(410L/인 · 일) = 57,512㎥/일
- 산업용수 = 기정 : 산업시설용지(2,816㎥/일)+유보지(10,563㎥/일) = 13,379㎥/일
  변경 : 산업시설용지(1,807㎥/일)+유보지(10,563㎥/일) = 12,370㎥/일

※ 산업시설용지(영종항공일반산업지) = 산업용수(1,506㎥/일) + 상근및이용인구용수(301㎥/일)

- 지구외용수 : 2,050(㎥/일)

구 분	수 량		비 고
	기정	변경	
급수인구(인)	140,273	140,273	세입자 포함
급수원단위(Lpcd)	410	410	일최대
급수량(㎥/일)	72,941	71,932	
배수지(㎥)	40,000	40,000	
체류시간(hr)	13.4	13.6	

주) 인천광역시 2030년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주)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2015.3(LH)」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부록:상수도수용량 예측 업무편람) 2018.7(환경부)」 반영

▷ 수도시설 계획(변경없음)

나. 우・오수계획【변경】

ㅇ 계획오수량 산정(변경)

- B처리구역

기정 : 생활오수(23,251㎥/일)+산업시설용지(4,950㎥/일)+지구외(4,176㎥/일)=32,377㎥/일

변경 : 생활오수(23,163㎥/일)+산업시설용지(4,950㎥/일)+지구외(4,594㎥/일)=32,707㎥/일

- C처리구역

기정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347㎥/일) = 1,051㎥/일

변경 : 생활오수(792㎥/일) + 산업시설용지(463㎥/일) = 1,255㎥/일

※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단지내(332㎥/일) + 단지외(131㎥/일)

※ 폐수량 원단위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 2015.7(국토연구원)」 적용

구 분	계획 1일최대오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A처리구역	29,954	29,954	송산수질복원센터 (Q=30,000㎥/일)
B처리구역	32,377	32,707	영종수질복원센터 (Q=34,000㎥/일)
C처리구역	1,051	1,255	운북수질복원센터 (지구외)
합 계	63,382	63,916	

▷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변경없음)

▷ 오수중계펌프장 및 빗물펌프장 계획(변경없음)

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변경 없음】

라.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획【변경 없음】

마. 도로관리차량보관소【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단계
도로관리차량보관소	기정	1개소	1,653.0		3단계
	변경	1개소	1,434.0	광장 내 선형변경	3단계

바.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변경 없음】

사. 송유시설 부지【변경 없음】

아.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공원	○ 근린공원 : 38개소(3,975,071.0㎡) ○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 근린공원 : 38개소(3,989,478.0㎡) ○ 체육공원 : 2개소(89,610.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녹지	○ 완충녹지 : 66개소(889,208.5㎡) ○ 경관녹지 : 7개소(427,534.2㎡) ○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 완충녹지 : 66개소(902,686.4㎡) ○ 경관녹지 : 6개소(421,431.2㎡) ○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자. 기타 기반시설【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광장	○ 교통광장 : 5개소(416,567.9㎡)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공공공지	○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13.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 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 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없음】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변경】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서【변경】: 붙임1

Ⅱ.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기반시설(공원 등) 시설계획 변경

- 근린공원 11호, 15호, 29호, 506호 및 체육공원 1호
- 운북IC 사업기간 연장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토지처분계획 변경 등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0년 까지	2021년 까지	6,676,873.9	-	변경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라.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마.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아.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자.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차.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카.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타.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파.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7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667.9㎡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794.6㎡
주차장	○ 주차장 : 49개소(132,141.5㎡)	개발계획 내용과 동일하며 파.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제외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차고지	변경없음	
광장	○ 교통광장 : 5개소(416,567.9㎡)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공원	○ 근린공원 : 38개소(3,975,071.0㎡) ○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 근린공원 : 38개소(3,989,478.0㎡) ○ 체육공원 : 2개소(89,610.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녹지	○ 완충녹지 : 66개소(889,208.5㎡) ○ 경관녹지 : 7개소(427,534.2㎡) ○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 완충녹지 : 66개소(902,686.4㎡) ○ 경관녹지 : 6개소(421,431.2㎡) ○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공공공지	○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수도 공급 시설	변경없음	
가스 공급 시설	변경없음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변경없음	
전기 공급시설	변경없음	
시장	변경없음	
공공청사	○ 공공청사 : 17개소(214,934.8㎡)	○ 공공청사 : 4개소(114,127.8㎡)
학 교	○ 초등학교 : 7개소(100,283.5㎡) ○ 중학교 : 4개소(60,263.7㎡) ○ 고등학교 : 6개소(147,822.4㎡) ○ 외국인학교 : 1개소(85,588.0㎡)	○ 초등학교 : 7개소(100,283.5㎡) ○ 중학교 : 4개소(60,263.7㎡) ○ 고등학교 : 6개소(147,822.4㎡) ○ 외국인학교 : 1개소(85,588.0㎡)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빗물펌프장	변경없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0년 까지	2021년 까지	6,676,873.9	-	변경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붙임2

6.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 붙임3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 운북IC 실시계획(변경)

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운북IC 공사시행(변경)허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2	기 정	박 인 서
			변 경	이 승 우

8. 위치도·실시계획평면도 (S=1/10,000) 【변경 없음】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변경 없음】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근거 규정 : 변경없음(생략)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변경)

1) 일반적 처분기준
○ 주택건설용지·상업업무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 도시개발법에 의거 감정가격 기준, 경쟁입찰의 방법, 대상지내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에 동의자(동의서 징구)인 경우는 환지방법으로 처분
○ 산업시설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 산입법에 의거 조성원가 기준, 추첨의 방법으로 처분, 대상지내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에 동의자(동의서 징구)인 경우는 환지방법으로 처분
○ 기타 용지 : 감정평가액 기준

2) 특별공급기준
○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②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공공시설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④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⑤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존치부지의 공급
⑥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양도인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⑦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⑧ 법면부지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⑨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⑩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사업비·공사비를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하는 경우
⑪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추첨에 의한 공급의 경우

3) 무상양여
○ 공공시설용지중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배수지, 가압장, 오수중계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지하차도관리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함

4) 외국인투자유치 특례
○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조건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및 종사자(내국인 포함)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사업지구 공동주택지 공급시 매수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공급물량의 10%내외를 외국인투자자 등 에게 우선 공급하여야한다는 매각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 변경없음(생략)

라. 처분 및 투기방지대책: 변경없음(생략)

마.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생략)

바.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생략)

사.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 변경

처분대상토지 구분			처분대상토지 면적(㎡)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합계			19,300.049.1	-	-	-	-
주택건설용지	소계		4,288,362.7	-	-	-	-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소계	1,414,345.8	2007	실수요자	-	-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일반형(주거전용)	870,967.7	2007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일반형(점포겸용)	870,967.7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블럭형	477,379.2	2007	실수요자	추첨 혹은 설계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휴양형	65,998.9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 이주대책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 협의양도인 : 수의계약,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소계	기정 2,759,361.5 변경 2,757,710.9	-	-	-	-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60㎡이하 60-85㎡ 85㎡초과		2007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60㎡이하 60-85㎡ 85㎡초과		2007	국가 · 지자체 · LH 지방공사 등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60㎡이하 60-85㎡ 85㎡초과		2007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60㎡이하 60-85㎡ 85㎡초과		2007	협의양도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60㎡이하 60-85㎡ 85㎡초과		2007	인천지역소재업체	추첨	감정가격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60㎡이하 60-85㎡ 85㎡초과		2007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임대, 국민임대주택용지 :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2008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산업시설용지			기정 493,207.0 변경 489,714.0	2008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산업시설용지			기정 493,207.0 변경 489,714.0	2008	국가 ·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산업시설용지			기정 493,207.0 변경 489,714.0	2008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소계		724,432.8	-	-	-	-
상업업무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479,614.9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479,614.9	2007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97,535.6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97,535.6	2007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2007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136,733.8	2007	실수요자	주거부분: 감정가격 상업부분: 낙찰가격	
관광휴게및숙박시설			215,36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관광휴게및숙박시설			215,365.0	2008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문화및업무시설			135,33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문화및업무시설			135,335.0	2008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 환지예정자는 단독, 공동, 산업용지에 한해서 환지처분. 환지예정자중 현금청산자에 한해서 상업용지 우선공급권 부여.

주)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공급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인천지역 건설업체에게 우선 공급

처분대상토지 구분			처분대상토지 면적(㎡)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공공시설용지	소계	기정	10,911,988.8	-	-	-	-
		변경	10,917,132.4				
	학교시설	계	403,587.2	-	-	-	-
		유치원	9,571.1	200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초등학교	100,283.5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중학교	60,263.7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합시추점)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고등학교	147,822.4	2009			
		외국인학교	85,588.0	2009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종교시설용지		22,053.1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전소		6,519.7	2007	한국전력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차장용지	기정	132,141.5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138,122.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공공청사	기정	214,934.8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변경	213,647.0				
	사회복지시설		10,040.2	200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체육시설용지		88,210.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2,259.2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또는 평균낙찰가
	종합의료시설		110,139.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의료법인) :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또는 감정가격		
	문화시설		67,580.2	2008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복합터미널		23,513.8	200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여객자동차 차고지		12,565.1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시장용지		1,548.8	2009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창고시설용지		1,001.4	2009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제한경쟁입찰	낙찰가격
	통신시설용지		1,361.1	2011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처분대상토지 구분		처분대상토지 면적(㎡)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공공시설용지	정압기		96.0	2008	도시가스 설치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송유시설용지		518.0	2012	기존시설 이용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원	기정	4,344,597.2	준공시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변경	4,328,038.2				
	녹지	기정	1,543,853.8				
		변경	1,551,228.7				
	공공공지		42,131.2				
	광장	기정	537,737.4				
		변경	547,245.4				
	배수지		12,705.1				
	오수중계펌프장		2,340.9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군사시설용지		8,402.0				
	도로	기정	3,213,827.5				
		변경	3,213,954.2				
	가압장		2,544.9				
	교육지원시설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유보지			2,532,087.0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주)1. 학교·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행정청에 공급하는 경우 및 지자체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게 유료시설이외의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주차장, 복합터미널, 종합의료시설을 실시계획상의 사업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가능(도시개발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도시개발업무지침 제5-7-1)

2. 실시계획승인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공급토지의 위치, 공급규모, 면적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동 사항이 기본적인 처분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는 때에는 별도의 처분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본건 승인내용에 준하여 시행함

3. 실시계획의 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의 증감에 관한 사항과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 특정용도 용지의 추가공급 또는 매각잔량분에 대한 용도, 위치, 공급규모, 공급가격, 공급대상자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절차 없이 본건 승인내용에 준하여 시행함

4. 이주대책수립, 생활대책수립 등에 대한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 및 본건 승인내용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 및 인천도시공사 분양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함

5.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는 기준면적까지는 조성원가 기준,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6. 외국인분양 공동주택용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 공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순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7-1.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및 종사자(내국인 포함)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급되는 외국인임대 공동주택용지의 매수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 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그 외 관련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등 관계법령에 의함

7-2.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및 종사자(내국인 포함)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급되는 외국인분양 공동주택용지의 매수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특별공급하여야 함

8.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음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의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

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본부

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한함),「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앙회와 연합회에 한함),「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업·기타 제조업·광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9. 주차장 30은 지자체에 기부체납(면적3,157㎡)

13.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변경) 【변경】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 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변경 없음】

18.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해당 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 【해당 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 【변경 없음】

<붙임 1>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서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 면적 : (기정) 507,709.2㎡
(변경) 495,144.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주소	대표자성명	비 고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창흠	
기정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박인서	
변경			이승우	

4.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5. 주요유치업종【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ㅇ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507,709.2	495,144.1	감) 12,565.1	100.0	
산업시설용지	323,827.3	320,334.3	감) 3,493.0	64.7	
상업시설용지	4,319.0	4,319.0		0.9	
공공시설용지	176,137.9	167,065.8	감) 9,072.1	33.7	
교통광장	10,833.9	10,833.9		2.2	
공원	7,673.2	7,673.2		1.5	
녹지	36,884.2	36,884.2		7.4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5.1	-	감) 12,565.1	-	
오수중계펌프장	17.0	17.0		0.0	
빗물펌프장	500.5	500.5		0.1	
공공공지	237.0	237.0		0.0	
보행자도로	5,366.0	5,366.0		1.1	
도로	102,061.0	102,061.0		20.7	
주차장	-	3,493.0	증) 3,493.0	0.7	
기타시설용지	3,425.0	3,425.0		0.7	
주유소	3,425.0	3,425.0		0.7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로	○ 일반도로 : 21개노선(96,447.0㎡) ○ 보행자전용도로 : 4개노선(5,366.0㎡) ○ 가각 및 기타 : 5,614.0㎡	○ 일반도로 : 21개노선(96,447.0㎡) ○ 보행자전용도로 : 4개노선(5,366.0㎡) ○ 가각 및 기타 : 5,614.0㎡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차고지 : 12,568.0㎡	구역 제척
주차장	-	○ 주차장 : 3,493.0㎡

2) 공간시설계획【변경 없음】

3) 기타시설계획【변경 없음】

4)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①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일 최 대(㎥/일) 기정	일 최 대(㎥/일) 변경	비 고
산업용수	산업단지		1,912	1,182	감소:1,111
	산업단지 외		705	324	
생활용수	산업용지(상근인구)	산업단지	148	217	증가:117
		산업단지 외	51	84	
	지원 및 기타공공부지	산업단지	66	81	
		산업단지 외	36	36	
	소계		301	418	
계	산업단지		2,126	1,480	감소:646
	산업단지 외		792	444	감소:348

②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계획일최대 산업폐수량(㎥/일) 기정	계획일최대 산업폐수량(㎥/일) 변경	계획일최대 생활오수량(㎥/일) 기정	계획일최대 생활오수량(㎥/일) 변경	계 (㎥/일) 기정	계 (㎥/일) 변경	비고
산업단지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41.67	110.8	91.6	122.2	133.3	233.0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6.94	18.7	16.7	27.7	23.6	46.4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6.5	12.0	6.5	12.0	
	H50	수상 운송업	-	-	6.5	12.0	6.5	12.0	
	H51	항공운송업	-	-	6.5	12.0	6.5	12.0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9.3	16.6	9.3	16.6	
	지원시설 및 기타 공공용지		-	-	61.0	74.9	61.0	74.9	
	소계		48.61	129.5	198.1	277.4	246.7	406.9	
산업단지 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산업단지 제척부분)	1.76	4.8	3.7	5.5	5.4	10.3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단지 제척부분)	18.04	48.7	43.5	72.2	61.5	120.9	
	지원시설 및 기타 공공용지		-	-	33.3	33.3	33.3	33.3	
	소계		19.8	53.5	80.5	111.0	100.2	164.5	
총계			68.4	183.0	278.6	388.4	346.9	571.4	증) 224

③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④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7.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없음】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시행기간	2003. 8. 11 ~ 2020. 12. 31.	2003. 8. 11 ~ 2021. 06. 30.

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해당 없음】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구분	유치업종		면적(㎡)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23,827.3	320,334.3	100.0	100.0
항공관련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6,264.3	122,771.3	39.0	38.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63,082.0	63,082.0	19.5	19.7
항공운송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92,443.0	92,443.0	28.5	28.9
	수상 운송업	H50				
	항공운송업	H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42,038.0	42,038.0	13.0	13.1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제한됨
단,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입주 가능

라. 입수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

구 분		업체수	수요면적(㎡)	계획면적(㎡)	계획면적대비비율	비고
계		81	473,968.0	320,334.3	148.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C26	34	157,999.0	122,771.3	128.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28	114,274.0	63,082.0	181.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9	148,656.0	92,443.0	160.8%	
수상 운송업	H50					
항공운송업	H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10	53,039.0	42,038.0	126.2%	

마.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해당 없음】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붙임 2>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9,300,049.1	-	19,300,049.1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8,133,552.9	-	8,133,552.9	42.1	42.1	
	제2종전용주거지역	1,687,449.9	-	1,687,449.9	8.7	8.7	
	제1종일반주거지역	1,495,004.0	-	1,495,004.0	7.7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1,880,636.7	-	1,880,636.7	9.7	9.7	
	제3종일반주거지역	2,194,907.3	-	2,194,907.3	11.4	11.4	
	준주거지역	875,555.0	-	875,555.0	4.5	4.5	
상업지역	소 계	1,929,172.3	증) 177.0	1,929,349.3	10.0	10.0	
	중심상업지역	589,607.7	-	589,607.7	3.1	3.1	
	일반상업지역	1,339,564.6	증) 177.0	1,339,741.6	6.9	6.9	
공업지역	소 계	3,416,412.1	-	3,416,412.1	17.7	17.7	
	준공업지역	3,416,412.1	-	3,416,412.1	17.7	17.7	
녹지지역	소 계	5,820,911.8	감) 177.0	5,820,734.8	30.2	30.2	
	자연녹지지역	5,820,911.8	감) 177.0	5,820,734.8	30.2	30.2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ㅇ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기정	756	165,047.7	3,213,827.5	202	56,167.0	957,954.3	243	47,236.7	675,030.0	311	61,375.0	1,529,175.3
		변경	757	165,706.7	3,213,954.2	202	56,167.0	957,954.3	243	47,236.7	675,030.0	312	62,034.0	1,529,175.3
자동차 전 용 도 로	소계	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광로	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일반 도로	소계	기정	447	143,670.0	2,942,057.0	146	49,347.0	869,820.9	215	44,882.0	635,348.2	86	49,441.0	1,436,887.9
		변경	448	144,329.0	2,942,057.0	146	49,347.0	869,820.9	215	44,882.0	635,348.2	87	50,100.0	1,436,887.9
	광로	기정	7	21,644.0	896,162.0	0	0.0	0.0	0	0.0	0.0	7	21,644.0	896,162.0
	대로	기정	40	26,701.0	724,721.4	5	1,546.0	66,618.8	11	7,756.0	242,294.6	24	17,399.0	415,808.0
		변경	41	27,360.0	724,721.4	5	1,546.0	66,618.8	11	7,756.0	242,294.6	25	18,058.0	415,808.0
	중로	기정	126	51,492.0	926,158.4	53	29,090.0	615,953.1	39	12,736.0	189,246.6	34	9,666.0	120,958.7
	소로	기정	274	43,833.0	395,015.2	88	18,711.0	187,249.0	165	24,390.0	203,807.0	21	732.0	3,959.2
특수 도로	소계	기정	308	19,062.7	185,702.6	56	6,820.0	88,133.4	28	2,623.7	39,681.8	224	9,619.0	57,887.4
	대로	기정	2	312.0	9,360.0	-	-	-	2	312.0	9,360.0	-	-	-
	중로	기정	33	3,772.0	68,194.3	15	2,172.0	41,096.0	14	1,269.0	22,362.8	4	331.0	4,735.5
	소로	기정	273	14,978.7	108,148.3	41	4,648.0	47,037.4	12	1,042.7	7,959.0	220	9,288.0	53,151.9
가각 및 기타		기정	-	-	51,667.9	-	-	-	-	-	-	-	-	-
		변경			51,794.6									

② 광로【변경 없음】

③ 대로【변경】

ㅇ 일반도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01	18~35	주간선도로	396 (11,261)	대로2-501-1	대로2-513	일반도로		인고97-43호 (02.9.12)	1단계
기정	대로	1	501-1	18~35	주간선도로	47	경관녹지1	대로2-501	일반도로		인고97-43호 (02.9.12)	3단계
기정	대로	1	502	35	주간선도로	153 (5,914)	광로3-504	운북동897-15	일반도로		인고00-117호 (00.7.3)	1단계
기정	대로	1	504	36.5	집산도로	475	광로3-505-1	대로3-520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대로	1	505	36.5	집산도로	475	광로3-505-1	대로3-52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대로	2	506	30~33	보조간선도로	1,407 (1,526)	광로3-506	대로2-50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07	30~33	보조간선도로	901	광로3-505-1	대로2-507-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2	507-1	30~33	보조간선도로	304	대로2-507	광로3-506	일반도로		인고13-038호 (13.2.4)	1단계
기정	대로	2	508	30~33.5	집산도로	864	대로3-520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2	509	30 ~33.5	집산도로	860	대로3-521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변경	대로	2	509	30 ~33.5	집산도로	860	대로3-521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선형변경
기정	대로	2	510	30~33	국지도로	565	대로2-511	대로2-51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2	511	30~33	집산도로	1,503	광로3-505-1	광로3-50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2	512	30	집산도로	434	광로3-505-1	중로1-564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1단계
기정	대로	2	513	31	집산도로	95	대로1-501	대로3-506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1단계
기정	대로	2	516	31	보조간선도로	382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2	517	30	보조간선도로	441	광로3-505-1	광로3-504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신설	대로	3	177	30 (27~77)	주간선도로	659 (4,600)	광로505호	광장90호	일반도로		인고12-104호 (20.7.20.)	제3연륙교
기정	대로	3	506	25	보조간선도로	1,882	광로3-505-1	대로2-513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09	25	집산도로	3,717	광로3-506-2	광로3-506-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0	25	국지도로	648	광로3-506-2	대로3-50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2	25	집산도로	648	광로3-506-2	대로3-509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3	25	집산도로	642	대로2-507	대로3-513-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158m), 3단계 (484m)
기정	대로	3	513-1	25	집산도로	206	대로3-513	대로3-51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4	25	집산도로	1,769	광로3-506-2	광로3-506-2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3단계
기정	대로	3	515	25~28	집산도로	779	광로3-505-1	중로1-54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16	27~28	집산도로	546	광로3-505-1	대로3-516-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3	516-1	27~28	집산도로	311	대로3-516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17	25	보조간선도로	231	광로3-504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3	518	25	보조간선도로	513	광로3-504	광로3-505-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2-2단계
기정	대로	3	519	25	집산도로	792	광로3-505-1	대로2-508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0	25~28	집산도로	736	광로3-505-1	광로3-507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1	25~28	집산도로	1,723	광로3-507	광로3-505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변경	대로	3	521	25~28	집산도로	1,723	광로3-507	광로3-505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522	25	보조간선도로	375	대로1-501	중로3-552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대로	3	523	25	집산도로	300	광로3-505	중로1-592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2-3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25	25	보조간선도로	80	대로1-501	중로2-51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기정	대로	3	526	26	국지도로	385	광로3-505-1	대로2-50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7	26	국지도로	170	대로2-516	대로3-52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8	26	국지도로	170	대로2-516	대로3-526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29	26	국지도로	128	대로2-516	중로1-52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30	26	국지도로	128	대로2-516	중로1-524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기정	대로	3	531	26	국지도로	520	중로1-564	일반광장15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ㅇ 보행자도로 (변경 없음)

④ 중로【변경 없음】

⑤ 소로【변경 없음】

⑥ 주차장【폐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⑦ 지하공공보도【변경 없음】

⑧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변경】

ㅇ 광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537,737.4	증)9,508.0	547,245.4	-	-
교통광장	소계	-	-	-	-	416,567.9	증)9,508.0	426,075.9	-	-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운남동 1062-12임 일원	298,685.0	-	298,685.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3,494.1) 3단계 (295,190.9)
	기정	60	광장	교통광장	운서동 1499-3 일원	12,833.0	-	12,833.0	인고제1999-148호 (99.10.23)	3단계
	기정	61	광장	교통광장	운서동 1518-1도 일원	11,415.0	-	11,415.0	인고제1999-148호 (99.10.23)	3단계
	변경	505	광장	교통광장	중산동 1097-55답 일원	82,801.0 (153,801.0)	증)9,508.0	92,309.0 (97,919.0)	인고제2002-200호 (2002.9.12)	3단계
	변경	600	광장	교통광장	운북동 779-8잡 일원	10,833.9 (63,211.0)	-	10,833.9 (62,818.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광장	소계	-	-	-	-	121,169.5	-	121,169.5	-	-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운서동 3091-8 일원	6,428.7	-	6,428.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운서동 1094대 일원	4,232.0	-	4,232.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5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794도 일원	27,091.3	-	27,091.3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6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708-3 일원	560.0	-	56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7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704-1공 일원	591.4	-	591.4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8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877-5 일원	5,399.3	-	5,399.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9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884-5 일원	5,401.6	-	5,401.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1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958-10공 일원	5,807.0	-	5,807.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2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601-6공 일원	3,185.1	-	3,185.1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13	광장	일반광장	운남동 1603-4공 일원	3,294.1	-	3,294.1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14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89-34 제 일원	39,363.3	-	39,363.3	재고07-58호 (07.11.6)	2-3단계
	기정	15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956-2 일원	4,360.7	-	4,360.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6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36-2장 일원	15,455.0	-	15,455.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주) ( )의 면적은 광장시설 조서상 면적임

② 공원【변경】

ㅇ 공원 총괄표【변경】

구 분		개 소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기정	93	4,344,597.2	100.0	
	변경	93	4,328,038.2	100.0	
근린공원	기정	38	3,975,071.0	91.5	
	변경	38	3,989,478.0	92.2	
체육공원	기정	2	120,576.8	2.8	
	변경	2	89,610.8	2.1	
어린이공원	기정	27	102,267.1	2.4	
소공원	기정	25	46,682.3	1.0	
묘지공원	기정	1	100,000.0	2.3	봉안당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4,344,597.2	감)16,559.0	4,328,038.2	-	-
근린공원	소계	-	-	-	-	3,975,071.0	증)14,407.0	3,989,478.0	-	-
	기정	1	공원	제1호근린공원	운서동 3020-1공 일원	26,063.0	-	26,063.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2	공원	제2호근린공원	운서동 3073-1공 일원	392,450.4	-	392,450.4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3	공원	제3호근린공원	운서동 산167임 일원	144,608.0	-	144,608.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4	공원	제4호근린공원	운서동 산296-15임 일원	166,527.0	-	166,527.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5	공원	제5호근린공원	운서동 1116-1전 일원	30,910.0	-	30,910.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6	공원	제6호근린공원	운남동 1598-6공 일원	59,927.3	-	59,927.3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7	공원	제7호근린공원	운서동 산274임 일원	48,566.0	-	48,566.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8	공원	제8호근린공원	운남동 1604-3공 일원	26,614.7	-	26,614.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9	공원	제9호근린공원	운남동 1680-4 일원	10,746.1	-	10,746.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0	공원	제10호근린공원	운남동 1697-4공 일원	13,459.3	-	13,459.3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1	공원	제11호근린공원	운남동 1654-3공 일원	97,629.0	-	97,629.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2	공원	제12호근린공원	운남동 1740-19	14,542.6	-	14,542.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3	공원	제13호근린공원	중산동 1871-6	10,085.1	-	10,085.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4	공원	제14호근린공원	중산동 189-55잡 일원	43,441.1	-	43,441.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기정	15	공원	제15호근린공원	중산동 1960-6공 일원	48,505.2	-	48,505.2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6	공원	제16호근린공원	중산동 1880-4 일원	31,629.4	-	31,629.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7	공원	제17호근린공원	중산동 1911-4 일원	351,889.5	-	351,889.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8	공원	제18호근린공원	중산동 1887-16 일원	19,303.8	-	19,303.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9	공원	제19호근린공원	중산동 1912-1 일원	45,073.0	-	45,073.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20	공원	제20호근린공원	중산동 243-1전 일원	101,785.0	증)13,421.0	115,206.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21	공원	제21호근린공원	중산동189-185잡 일원	19,481.5	-	19,481.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기정	22	공원	제22호근린공원	중산동189-179잡 일원	58,403.7	-	58,403.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근린공원	기정	23	공원	제23호근린공원	중산동 1958-7 일원	17,403.5	-	17,40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5	공원	제25호근린공원	운남동 1711-62 일원	23,258.6	-	23,258.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6	공원	제26호근린공원	운서동 2856유 일원	87,222.1	-	87,222.1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27	공원	제27호근린공원	운서동 3076-1공 일원	10,926.1	-	10,926.1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8	공원	제28호근린공원	중산동 1878-2 일원	16,940.9	-	16,940.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9	공원	제29호근린공원	운남동 1766-3공 일원	20,126.9	-	20,126.9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30	공원	제30호근린공원	운남동 1681-3 일원	14,966.5	-	14,966.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1	공원	제31호근린공원	운남동 1680-3 일원	14,443.5	-	14,44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32	공원	제32호근린공원	중산동산265 일원	36,889.0	감)2,898.0	33,991.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3	공원	제33호근린공원	중산동 1959-2공 일원	8,651.9	-	8,651.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4	공원	제34호근린공원	운남동 1745-10공 일원	43,513.6	-	43,513.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5	공원	제35호근린공원	운남동 1681-9공 일원	55,128.2	-	55,128.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6	공원	제36호근린공원	중산동 산316임 일원	10,172.0	-	10,172.0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506	공원	제506호근린공원	운남동 1640-1 일원	1,770,719.2	-	1,770,719.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7	공원	제37호근린공원	운남동 1711-84공 일원	28,383.8	-	28,383.8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2단계
	기정	38	공원	제38호근린공원	운남동 산133임 일원	54,684.5	-	54,684.5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3단계
	변경	506	공원	제506호근린공원	운남동 1640-1 일원	1,770,719.2	증)3,884.0	1,774,603.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3단계
체육공원	소계	-	-	-	-	120,576.8	감)30,966.0	89,610.8	-	
	기정	1	공원	제1호체육공원	중산동 1878-3 일원	60,631.8	-	60,631.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2	공원	제2호체육공원	중산동253-1답 일원	59,945.0	감)30,966.0	28,979.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 어린이공원 (변경없음) :생략
- 소공원 (변경없음) : 생략
- 묘지공원(변경없음) : 생략

③ 녹지【변경】

ㅇ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1,543,853.8	증)7,374.9	1,551,228.7	-	-
완충녹지	소계	-	-	-	-	889,208.5	증)13,477.9	902,686.4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13공 일원	9,257.7	-	9,257.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200-5염 일원	99,263.0	-	99,263.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60-32 일원	9,426.3	-	9,426.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71공 일원	4,403.1	-	4,403.1	인고 제2000-117호 (2000.7.3)	2-2단계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097-14답 일원	13,519.0	증)13,471.0	26,990.0	인고 제2000-117호 (2000.7.3)	3단계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7-1공 일원	12,155.3	-	12,155.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083 일원	25,858.90	-	25,858.9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9-1 일원	3,783.8	-	3,783.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911-1답 일원	4,549.7	-	4,549.7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1598-7 일원	1,564.6	-	1,564.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2856유 일원	1,560.0	-	1,560.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산246-2임 일원	22,397.0	-	22,397.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13-23유 일원	13,713.0	-	13,713.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242-2염 일원	2,082.8	-	2,082.8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10-8공 일원	7,283.1	-	7,283.1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50-4공 일원	1,222.5	-	1,222.5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1711-22 일원	1,119.7	-	1,119.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65-5공 일원	6,268.1	-	6,268.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1-10 일원	18,140.9	-	18,140.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8-14 일원	24,356.8	-	24,356.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22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80-8 일원	19,991.7	증) 0.5	19,992.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변경	23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1-16 일원	24,700.3	증) 6.4	24,706.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완충녹지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80-5 일원	5,172.7	-	5,172.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50-9 일원	1,504.6	-	1,504.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58-2 일원	1,561.0	-	1,561.0	재고07-58호 (07.11.6)	1단계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27-28공 일원	6,081.7	-	6,081.7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1329-3 일원	880.2	-	880.2	지고09-278호 (2009.12.2)	1단계
	기정	34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86-4 일원	30,466.8	-	30,466.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5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1496-11임 일원	41,859.0	-	41,859.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6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1680-3 일원	79,134.0	-	79,134.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7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944-12 일원	51,921.0		51,921.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38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17-28공 일원	1,654.1	-	1,654.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39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2-2공 일원	2,548.6	-	2,548.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 단계
	기정	40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03-5 일원	3,292.1	-	3,292.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598-2공 일원	8,641.4	-	8,641.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2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8-38 일원	5,354.0	-	5,354.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3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41-25공 일원	3,242.6	-	3,242.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4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22-80 일원	5,294.0	-	5,294.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5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45-15공 일원	848.4	-	848.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6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40-14 일원	7,512.1	-	7,512.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7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61-30공 일원	4,190.0	-	4,19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48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87-6 일원	25,582.8	-	25,582.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9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915-4공 일원	7,091.1	-	7,091.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0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5-11공 일원	2,832.1	-	2,832.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8-37 일원	4,518.9	-	4,518.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2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08-5 일원	6,713.5	-	6,71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완충녹지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09-4공 일원	5,893.2	-	5,893.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67공 일원	141,557.9	-	141,557.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11-31 일원	4,670.8	-	4,670.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127-4공 일원	1,130.6	-	1,130.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3101-2일원	4,428.2	-	4,428.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8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911-51일원	2,798.0	-	2,798.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기정	59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598-12공 일원	7,424.7	-	7,424.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60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1113-23유일원	12,572.0	-	12,572.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6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710-6공 일원	818.5	-	818.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62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871-8 일원	6,672.7	-	6,672.7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63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714-8공 일원	3,440.3	-	3,440.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64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656-23 일원	3,161.0	-	3,161.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66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산53-1임 일원	10,674.3	-	10,674.3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기정	67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242-4구 일원	10,103.5	-	10,103.5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기정	6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310-3전 일원	1,304.3	-	1,304.3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기정	69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56임 일원	8,736.8	-	8,736.8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기정	70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13-30염 일원	3,562.2	-	3,562.2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206-1 일원	7,416.3	-	7,416.3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기정	72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795전 일원	1,209.4	-	1,209.4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4단계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113-30염 일원	17,119.8	-	17,119.8	-	3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관녹지	소계	-	-	-	-	427,534.2	감)6,103.0	421,431.2	-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 779-4잡 일원	13,147.0	-	13,147.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 644전 일원	19,696.0	-	19,696.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 3076-4공 일원	31,884.1	-	31,884.1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폐지	4	녹지	경관녹지	중산동251-4전일원	6,103.0	감) 6,103.0	-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운남동 1113-33 일원	2,757.0	-	2,757.0	인천경제청고 2015-262호 (15.10.5)	3단계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운남동 1494-1공 일원	3,694.0	-	3,694.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 산6임 일원	350,253.1	-	350,253.1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연결녹지	소계	-	-	-	-	227,111.1	-	227,111.1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17-26공 일원	6,062.9	-	6,062.9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79-3 일원	2,491.3	-	2,491.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472답 일원	6,911.0	-	6,911.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103-3 일원	14,370.3	-	14,370.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1619-18일원	3,884.3	-	3,884.3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1666 일원	13,721.8	-	13,721.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05-20공 일원	3,496.7	-	3,496.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66-18공 일원	4,952.7	-	4,952.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0-14공 일원	1,650.2	-	1,650.2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1-3 일원	5,213.5	-	5,213.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7-17일원	13,869.8	-	13,869.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88-3 일원	8,861.1	-	8,861.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85-3공 일원	4,400.5	-	4,400.5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9-1임 일원	7,200.0	-	7,200.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1687-6대 일원	2,731.0	-	2,731.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산261-7임 일원	23,720.0	-	23,720.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1083-18염 일원	21,173.0	-	21,173.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1177-3전 일원	7,305.0	-	7,305.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957-26염 일원	11,350.0	-	11,350.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연결녹지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11-40 일원	1,079.8	-	1,079.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71-7 일원	26,697.0	-	26,697.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3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33-21공 일원	2,386.6	-	2,386.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24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10-4공 일원	1,932.3	-	1,932.3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25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30-8공 일원	3,396.2	-	3,396.2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65-3공 일원	7,726.9	-	7,726.9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운남동 1765-10공 일원	7,951.4	-	7,951.4	지고09-278호 (2009.12.2)	2-2단계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89-36도일원	2,147.9	-	2,147.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3단계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907일원	5,010.0	-	5,01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4단계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1737-4일원	2,186.4	-	2,186.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중산동 135-8일원	3,231.5	-	3,231.5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주) ( )의 면적은 시설조서상 면적임

④ 공공공지【변경】

ㅇ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단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42,131.2	-	42,131.2		
기정	1	공공공지	운서동 3087-1 일원	3,881.5	-	3,881.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2	공공공지	운남동 1229-1답 일원	807.7		807.7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기정	3	공공공지	운남동 1705-11 일원	2,500.2	-	2,500.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	공공공지	중산동 1886-8 일원	6,259.2	-	6,259.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5	공공공지	운남동 1710-5공 일원	1,438.4	-	1,438.4	재고07-58호 (07.11.6)	2-2단계
기정	6	공공공지	운서동 3046-13 일원	1,053.5	-	1,053.5	지고09-278호 (09.12.2)	1단계
기정	7	공공공지	중산동 1916-11공 일원	1,258.7	-	1,258.7	지고09-278호 (09.12.2)	2-2단계
기정	8	공공공지	운서동 3096-2공 일원	993.2	-	993.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9	공공공지	운남동 1705-34공 일원	2,458.6	-	2,458.6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단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공공공지	중산동 1960-13공 일원	8,400.1	-	8,400.1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기정	11	공공공지	운서동 3085-6공 일원	413.5	-	413.5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2단계
기정	12	공공공지	중산동 189-249일원	2,507.5	-	2,507.5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3	공공공지	중산동 189-232일원	977.0	-	977.0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4	공공공지	중산동 189-187일원	793.3	-	793.3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5	공공공지	중산동 135-10일원	3,609.0	-	3,609.0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6	공공공지	중산동 189-245일원	1,095.7	-	1,095.7	인천경제청고 2014-295호 (14.11.07)	2-3단계
기정	17	공공공지	중산동 189-7답 일원	532.1	-	532.1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2-3단계
변경	18	공공공지	중산동 497-8잡 일원	2,915.0	-	2,915.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기정	19	공공공지	운북동 779-11잡 일원	237.0	-	237.0	-	3단계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① 수도공급시설【변경 없음】

② 가스공급시설 - 정압기【변경 없음】

③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 송유관【변경 없음】

④ 전기공급시설 - 변전소【변경 없음】

⑤ 시장【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① 공공청사【변경】

ㅇ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214,934.8	감) 102,007	114,127.8		
기정	1	공공청사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운서동3077-5 일원	26,213.6	-	26,213.6	재ㄴ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2	공공청사	인천교육연수원	운서동3077-2 일원	39,752.4	-	39,752.4	재ㄴ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3	공공청사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	운서동3075 일원	46,961.8	-	46,961.8	재ㄴ06-53호 (06.12.5)	2-2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1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운서동 3050-5 일원	1,008.6	감) 1,008.6	-	재고06-53호 (06.12.5)	1단계
폐지	5-2	공공청사	동사무소	운서동 3050-4 일원	620.7	감) 620.7	-	재고06-53호 (06.12.5)	1단계
폐지	5-3	공공청사	경찰지구대	운서동 3050-3 일원	1,014.8	감) 1,014.8	-	재고06-53호 (06.12.5)	1단계
폐지	6	공공청사	동사무소	운남동 1602-8대 일원	974.9	감) 974.9	-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폐지	7	공공청사	소방서	운남동 1062-3임 일원	16,372.0	감) 16,372.0	-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폐지	8	공공청사	경찰서(경비대포함)	운남동 1062-14유 일원	24,438.0	감) 24,438.0	-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폐지	9	공공청사	구청사, 구의회, 구민센터, 보건소, 등기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순찰지구대, 도시기반시설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등	운남동 1699-2대 일원	51,147.7	감) 51,147.7	-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폐지	10	공공청사	동사무소	운남동 1701-1대 일원	910.5	감) 910.5	-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폐지	11	공공청사	동사무소	운남동 1745-13대 일원	662.0	감) 662.0	-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폐지	12-1	공공청사	동사무소	중산동 1878-9 일원	600.0	감) 600.0	-	재고06-53호 (06.12.5)	1단계
폐지	12-2	공공청사	경찰지구대	중산동 1878-8 일원	600.0	감) 600.0	-	재고06-53호 (06.12.5)	1단계
폐지	14	공공청사	동사무소	중산동 1910-18 일원	605.9	감) 605.9	-	재고06-53호 (06.12.5)	1단계
폐지	15	공공청사	경찰지구대(이전)	중산동 1959-1대 일원	2,487.8	감) 2,487.8	-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신설	15	공공청사	동사무소	중산동 1912-2대	-	증) 1,200.0	1,200.0		1단계
폐지	16	공공청사	공공청사	중산동 189-137 일원	564.1	감) 564.1	-	인천경제청고 2014-268호 (14.11.07)	2-3단계

② 학교【변경】

ㅇ 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393,957.6	-	393,957.6		
소계	-	-	-	-	100,283.5	-	100,283.5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운서동 865답 일원	13,662.7	-	13,662.7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운남동 1208-5답 일원	14,871.8	-	14,871.8	재고06-53호 (06.12.5)	2-4단계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880-3	13,801.4	-	13,801.4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914-4학 일원	14,403.5	-	14,403.5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766-4학 일원	15,576.4	-	15,576.4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871-2	15,125.2	-	15,125.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887-3	12,842.5	-	12,842.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	-	-	60,263.7	-	60,263.7		
기정	1	학교	중학교	운서동 3083-23	15,082.0	-	15,082.0	재고06-53호 (06.12.5)	1단계
기정	2	학교	중학교	운남동 1655-12	15,954.8	-	15,954.8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3	학교	중학교	운남동 1737-2	13,651.9	-	13,651.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기정	4	학교	중학교	중산동 1914-2학 일원	15,575.0	-	15,575.0	인천경자고12-129호 (12.5.18)	2-2단계
소계	-	-	-	-	147,822.4	-	147,822.4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 3077-1학 일원	41,578.7	-	41,578.7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2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 3077-4학 일원	29,450.0	-	29,450.0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기정	3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 3103-8	15,273.2	-	15,273.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4	학교	고등학교	운서동3074	30,810.0	-	30,81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변경	5	학교	고등학교	운남동 1737-1	15,618.2	-	15,618.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12.12.28)	1단계
기정	6	학교	고등학교	중산동 1914-1학 일원	15,092.3	-	15,092.3	재고06-53호 (06.12.5)	2-2단계
소계	-	-	-	-	85,588.0	-	85,588.0		
기정	1	학교	외국인 학교	운남동 1105답 일원	85,588.0	-	85,588.0	재고07-58호 (07.11.6)	2-4단계

5)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없음】

①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없음】

②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없음

③ 빗물펌프장 【변경 없음】

④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① 단독주택용지【변경】

ㅇ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 H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	①	1,248.7	-1	409.5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402.7	
				-3	436.5	
		②	5,100.1	-1	440.8	
				-2	424.6	
				-3	432.0	
				-4	412.5	
				-5	441.6	
				-6	447.0	
				-7	411.2	
				-8	401.9	
				-9	418.5	
				-10	413.8	
				-11	444.4	
				-12	411.8	
		③	2,772.6	-1	376.0	
				-2	378.3	
				-3	422.2	
				-4	427.1	
				-5	487.8	
				-6	346.2	
				-7	335.0	
		④	5,005.8	-1	376.2	
				-2	379.1	
				-3	378.7	
				-4	403.1	
				-5	395.6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	④	5,005.8	-6	365.4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7	388.2	
				-8	407.5	
				-9	383.3	
				-10	382.9	
				-11	382.6	
				-12	382.3	
				-13	380.9	
		⑤	3,277.4	-1	405.8	
				-2	407.3	
				-3	406.5	
				-4	406.3	
				-5	405.9	
				-6	414.1	
				-7	423.8	
				-8	407.7	
		⑥	1,811.5	-1	403.1	
				-2	525.8	
				-3	460.3	
				-4	422.3	
		⑦	5,294.8	-1	394.5	
				-2	431.7	
				-3	399.9	
				-4	418.8	
				-5	407.2	
				-6	401.8	
				-7	394.9	
				-8	397.5	
				-9	413.8	
				-10	404.9	
				-11	400.6	
				-12	433.2	
				-13	396.0	
		⑧	3,427.8	-1	423.0	
				-2	431.4	
				-3	449.3	
				-4	426.8	
				-5	384.7	
				-6	424.9	
				-7	427.3	
				-8	460.4	
		⑨	7,362.2	-1	423.6	
				-2	408.0	
				-3	429.2	
				-4	428.5	
				-5	425.3	
				-6	428.2	
				-7	400.6	
				-8	416.8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	⑨	7,362.2	-9	434.6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0	423.1	
				-11	451.5	
				-12	451.2	
				-13	444.3	
				-14	444.6	
				-15	444.9	
				-16	466.3	
				-17	441.5	
		⑩	9,935.5	-1	411.9	
				-2	408.2	
				-3	412.0	
				-4	473.6	
				-5	502.0	
				-6	372.5	
				-7	458.2	
				-8	334.3	
				-9	516.8	
				-10	452.7	
				-11	466.5	
				-12	458.9	
				-13	439.3	
				-14	330.8	
				-15	548.5	
				-16	405.1	
				-17	408.8	
				-18	434.1	
				-19	422.1	
				-20	422.3	
				-21	422.3	
				-22	422.6	
				-23	412.0	
	소계	-	45,236.4	-	-	
	H4	①	11,582.2	-1	424.2	
				-2	423.9	
				-3	476.2	
				-4	455.1	
				-5	549.2	
				-6	549.4	
				-7	533.5	
				-8	286.1	
				-9	279.1	
				-10	272.9	
				-11	265.6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4	①	11,582.2	-12	271.8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3	274.1	
				-14	260.1	
				-15	264.8	
				-16	265.0	
				-17	274.0	
				-18	280.1	
				-19	344.1	
				-20	376.0	
				-21	314.0	
				-22	291.0	
				-23	291.1	
				-24	290.2	
				-25	289.3	
				-26	265.3	
				-27	289.4	
				-28	272.3	
				-29	274.1	
				-30	268.9	
				-31	268.6	
				-33	268.7	
				-34	268.4	
				-35	268.3	
				-36	268.6	
				-37	268.8	
		②	18,709.6	-1	318.5	
				-2	316.2	
				-3	316.1	
				-4	316.1	
				-5	312.2	
				-6	312.2	
				-7	319.3	
				-8	319.5	
				-9	436.9	
				-10	323.2	
				-11	300.5	
				-12	300.5	
				-13	300.3	
				-14	300.3	
				-15	300.3	
				-16	312.8	
				-17	322.1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4	②	18,709.6	-18	294.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9	293.4	
				-20	294.1	
				-21	294.1	
				-22	294.1	
				-23	296.9	
				-24	306.2	
				-25	404.2	
				-26	304.2	
				-27	368.4	
				-28	368.3	
				-29	368.5	
				-30	368.1	
				-32	304.2	
				-33	294.6	
				-34	294.7	
				-35	294.5	
				-36	318.1	
				-37	319.1	
				-38	326.4	
				-39	329.2	
				-40	327.7	
				-41	327.9	
				-42	345.7	
				-43	281.3	
				-44	278.6	
				-45	278.7	
				-46	279.3	
				-47	345.6	
				-48	283.8	
				-49	284.2	
				-50	283.9	
				-51	283.5	
				-52	285.5	
				-53	331.8	
				-54	326.5	
				-55	337.0	
				-56	461.3	
				-57	328.3	
				-58	297.3	
				-59	292.3	
				-60	286.9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4	③	2,419.7	-1	402.4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76.0	
				-3	435.9	
				-4	427.6	
				-5	376.8	
				-6	401.0	
		④	2,388.4	-1	539.4	
				-2	538.6	
				-3	446.5	
				-4	425.6	
				-5	438.3	
	소계	-	35,099.9	-	-	
	H6	①	9,737.7	-1	304.4	
				-2	303.3	
				-3	303.3	
				-4	303.4	
				-5	303.5	
				-6	323.1	
				-7	322.3	
				-8	327.1	
				-9	319.2	
				-10	325.4	
				-11	316.0	
				-12	318.2	
				-13	317.8	
				-14	318.1	
				-15	318.0	
				-16	318.1	
				-17	318.1	
				-18	317.1	
				-19	329.4	
				-20	491.4	
				-21	328.9	
				-22	330.9	
				-23	331.9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6	①	9,737.7	-24	332.3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5	334.4	
				-26	320.2	
				-27	320.0	
				-28	320.1	
				-29	318.8	
				-30	303.0	
		②	6,735.1	-1	377.2	
				-2	366.9	
				-3	343.0	
				-4	360.3	
				-5	267.4	
				-6	269.1	
				-7	269.1	
				-8	307.2	
				-9	268.9	
				-10	264.9	
				-11	288.1	
				-12	352.6	
				-13	257.6	
				-14	257.3	
				-15	257.5	
				-16	288.1	
				-17	257.6	
				-18	260.5	
				-19	266.9	
				-20	347.3	
				-21	271.6	
				-22	270.1	
				-23	265.9	
		③	2,335.5	-1	291.4	
				-2	285.4	
				-3	274.2	
				-4	374.8	
				-5	275.4	
				-6	275.2	
				-7	284.2	
				-8	274.9	
		④	1,799.1	-1	309.0	
				-2	324.8	
				-3	294.9	
				-4	289.4	
				-5	290.1	
				-6	290.9	
		⑤	5,637.6	-1	282.0	
				-2	273.0	
				-3	387.4	
				-4	406.9	
				-5	348.5	
				-6	325.6	
				-7	316.8	
				-8	318.8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6	⑤	5,637.6	-9	353.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0	398.9	
				-11	389.2	
				-12	357.7	
				-13	273.0	
				-14	270.4	
				-15	272.3	
				-16	270.9	
				-17	393.0	
		⑥	4,836.4	-1	338.9	
				-2	328.6	
				-3	338.1	
				-4	335.9	
				-5	337.0	
				-6	319.3	
				-7	314.9	
				-8	314.8	
				-9	315.0	
				-10	314.5	
				-11	318.4	
				-12	316.0	
				-13	316.0	
				-14	312.8	
				-15	316.2	
		⑦	4,829.0	-1	322.0	
				-2	332.8	
				-3	338.0	
				-4	336.1	
				-5	337.0	
				-6	316.0	
				-7	316.1	
				-8	316.1	
				-9	315.2	
				-10	315.0	
				-11	315.1	
				-12	316.1	
				-13	316.1	
				-14	321.3	
				-15	316.1	
		⑧	2,730.9	-1	307.6	
				-2	307.4	
				-3	307.4	
				-4	304.7	
				-5	310.2	
				-6	396.0	
				-7	399.2	
				-8	398.4	
		⑨	3,788.5	-1	326.3	
				-2	331.9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6	⑨	3,788.5	-3	293.8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4	327.1	
				-5	407.0	
				-6	270.0	
				-7	269.0	
				-8	498.3	
				-9	264.8	
				-10	262.9	
				-11	263.0	
				-12	274.4	
		⑩	1,812.9	-1	302.7	
				-2	299.9	
				-3	307.2	
				-4	325.6	
				-5	300.4	
				-6	277.1	
		⑪	4,054.9	-1	400.5	
				-2	374.8	
				-3	355.6	
				-4	438.8	
				-5	312.4	
				-6	387.6	
				-7	372.0	
				-8	454.2	
				-9	316.0	
				-10	322.0	
				-11	321.0	
		⑫	1,007.7	-1	338.6	
				-2	334.3	
				-3	334.8	
		⑬	7,129.6	-1	365.0	
				-2	390.1	
				-3	388.1	
				-4	333.9	
				-5	387.0	
				-6	483.7	
				-7	358.0	
				-8	328.0	
				-9	325.2	
				-10	323.0	
				-11	315.9	
				-12	272.0	
				-13	318.2	
				-14	301.7	
				-15	291.3	
				-16	360.5	
				-17	327.9	
				-18	278.3	
				-19	309.4	
				-20	379.4	
				-21	293.0	
		⑭	5,819.4	-1	295.4	
				-2	293.6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6	⑭	5,819.4	-3	293.7	
				-4	293.8	
				-5	293.9	
				-6	294.1	
				-7	345.0	
				-8	342.3	
				-9	310.3	
				-10	310.2	
				-11	310.2	
				-12	310.4	
				-13	303.5	
				-14	311.1	
				-15	311.9	
				-16	400.1	
				-17	399.8	
				-18	400.1	
	소계	-	62,254.3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H7	①	12,318.2	-1	253.0	
				-2	321.9	
				-3	324.6	
				-4	325.9	
				-5	324.8	
				-6	324.8	
				-7	324.7	
				-8	324.5	
				-9	324.3	
				-10	324.4	
				-11	323.9	
				-12	323.4	
				-13	324.1	
				-14	324.6	
				-15	325.9	
				-16	324.3	
				-17	337.9	
				-18	388.0	
				-19	634.1	
				-20	531.0	
				-21	563.4	
				-22	356.6	
				-23	517.7	
				-24	315.6	
				-25	315.6	
				-26	316.0	
				-27	416.9	
				-28	417.1	
				-29	434.0	
				-30	417.9	
				-31	304.2	
				-32	304.1	
				-33	303.9	
				-34	325.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②	6,837.9	-1	275.5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77.3	
				-3	287.6	
				-4	285.4	
				-5	281.6	
				-6	272.2	
				-7	270.3	
				-8	270.6	
				-9	470.1	
				-10	443.5	
				-11	444.3	
				-12	448.0	
				-13	445.9	
				-14	471.0	
				-15	271.4	
				-16	270.1	
				-17	269.8	
				-18	269.1	
				-19	270.3	
				-20	272.1	
				-21	271.8	
		③	1,127.5	-1	280.4	
				-2	281.6	
				-3	280.7	
				-4	284.8	
		④	6,858.1	-1	566.9	
				-2	496.0	
				-3	480.6	
				-4	483.0	
				-5	484.8	
				-6	559.9	
				-7	340.9	
				-8	364.5	
				-9	309.4	
				-10	406.1	
				-11	306.9	
				-12	303.0	
				-13	303.0	
				-14	297.1	
				-15	379.0	
				-16	379.0	
				-17	398.0	
		⑤	2,571.6	-1	575.6	
				-2	394.0	
				-3	435.0	
				-4	589.9	
				-5	577.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⑥	5,401.5	-1	285.8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84.7	
				-3	284.6	
				-4	285.7	
				-5	284.8	
				-6	284.8	
				-7	284.7	
				-8	284.7	
				-9	284.9	
				-10	284.7	
				-11	338.9	
				-12	338.6	
				-13	339.6	
				-14	373.8	
				-15	373.8	
				-16	393.8	
				-17	393.6	
		⑦	7,807.9	-1	282.0	
				-2	281.9	
				-3	284.7	
				-4	282.4	
				-5	282.5	
				-6	280.7	
				-7	282.1	
				-8	280.9	
				-9	319.8	
				-10	320.2	
				-11	325.5	
				-12	323.9	
				-13	274.6	
				-14	334.2	
				-15	334.9	
				-16	265.7	
				-17	264.2	
				-18	264.2	
				-19	264.1	
				-20	267.7	
				-21	266.0	
				-22	262.1	
				-23	266.6	
				-24	267.5	
				-25	334.6	
				-26	275.9	
				-27	319.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⑧	7,919.1	-1	296.8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99.0	
				-3	295.7	
				-4	295.2	
				-5	299.9	
				-6	285.0	
				-7	284.3	
				-8	284.5	
				-9	288.6	
				-10	288.9	
				-11	288.9	
				-12	288.3	
				-13	289.6	
				-14	289.5	
				-15	324.8	
				-16	333.4	
				-17	316.4	
				-18	312.0	
				-19	254.0	
				-20	256.0	
				-21	368.3	
				-22	378.4	
				-23	441.3	
				-24	289.4	
				-25	288.9	
				-26	282.0	
		⑨	5,405.8	-1	315.3	
				-2	311.4	
				-3	308.0	
				-4	310.8	
				-5	311.1	
				-6	312.2	
				-7	335.9	
				-8	338.0	
				-9	332.3	
				-10	331.1	
				-11	331.9	
				-12	329.3	
				-13	375.0	
				-14	375.4	
				-15	393.9	
				-16	394.2	
		⑩	3,224.6	-1	519.2	
				-2	520.0	
				-3	519.7	
				-4	519.9	
				-5	612.4	
				-6	533.4	
		⑪	5,003.5	-1	492.7	
				-2	496.4	
				-3	495.0	
				-4	497.3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⑪	5,003.5	-5	494.8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6	484.9	
				-7	492.7	
				-8	511.4	
				-9	525.8	
				-10	512.5	
		⑫	5,389.1	-1	393.2	
				-2	394.0	
				-3	371.4	
				-4	373.0	
				-5	314.1	
				-6	305.1	
				-7	305.1	
				-8	305.0	
				-9	303.1	
				-10	301.0	
				-11	336.3	
				-12	335.2	
				-13	336.1	
				-14	336.3	
				-15	336.1	
				-16	344.1	
		⑬	7,925.4	-1	264.8	
				-2	274.7	
				-3	321.9	
				-4	366.6	
				-5	281.0	
				-6	277.1	
				-7	264.5	
				-8	266.4	
				-9	267.1	
				-10	347.8	
				-11	361.1	
				-12	301.3	
				-13	301.5	
				-14	273.0	
				-15	273.4	
				-16	270.5	
				-17	265.6	
				-18	265.2	
				-19	264.9	
				-20	264.2	
				-21	267.2	
				-22	267.2	
				-23	268.7	
				-24	268.2	
				-25	268.3	
				-26	268.2	
				-27	268.1	
				-28	276.9	
		⑭	7,818.0	-1	264.5	
				-2	274.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⑭	7,818.0	-3	275.5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4	270.4	
				-5	274.6	
				-6	273.3	
				-7	362.2	
				-8	284.4	
				-9	277.2	
				-10	407.1	
				-11	461.7	
				-12	355.2	
				-13	273.2	
				-14	273.3	
				-15	270.7	
				-16	271.7	
				-17	273.9	
				-18	273.7	
				-19	274.5	
				-20	273.2	
				-21	276.0	
				-22	272.4	
				-23	326.9	
				-24	325.4	
				-25	325.8	
				-26	326.5	
		⑮	6,331.9	-1	394.3	
				-2	394.2	
				-3	373.1	
				-4	374.3	
				-5	302.0	
				-6	300.9	
				-7	301.4	
				-8	301.0	
				-9	301.0	
				-10	299.6	
				-11	297.4	
				-12	303.1	
				-13	368.5	
				-14	456.8	
				-15	631.9	
				-16	302.9	
				-17	316.3	
				-18	313.2	
		⑯	3,360.2	-1	303.0	
				-2	299.7	
				-3	300.0	
				-4	300.2	
				-5	296.8	
				-6	300.1	
				-7	299.9	
				-8	300.1	
				-9	300.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⑯	3,360.2	-10	312.1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1	348.3	
		⑰	5,242.6	-1	428.8	
				-2	429.0	
				-3	467.9	
				-4	364.2	
				-5	355.7	
				-6	309.1	
				-7	310.5	
				-8	310.5	
				-9	312.8	
				-10	305.7	
				-11	311.9	
				-12	310.5	
				-13	310.4	
				-14	320.1	
				-15	395.5	
		⑱	7,160.2	-1	375.0	
				-2	386.1	
				-3	353.9	
				-4	275.4	
				-5	290.3	
				-6	286.7	
				-7	296.0	
				-8	290.2	
				-9	310.8	
				-10	376.9	
				-11	309.0	
				-12	297.1	
				-13	324.2	
				-14	365.6	
				-15	422.9	
				-16	280.3	
				-17	301.7	
				-18	312.1	
				-19	484.6	
				-20	287.0	
				-21	284.9	
				-22	249.5	
		⑲	2,583.3	-1	374.1	
				-2	314.4	
				-3	351.1	
				-4	329.7	
				-5	265.9	
				-6	282.5	
				-7	370.5	
				-8	295.1	
		⑳	2,237.6	-1	304.9	
				-2	303.0	
				-3	303.7	
				-4	304.2	
				-5	341.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⑳	2,237.6	-6	341.7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7	338.9	
		㉑	3,871.5	-1	314.6	
				-2	282.4	
				-3	281.2	
				-4	281.2	
				-5	276.8	
				-6	344.7	
				-7	415.4	
				-8	288.7	
				-9	276.9	
				-10	277.0	
				-11	283.7	
				-12	277.6	
				-13	271.3	
		㉒	1,226.0	-1	600.6	
				-2	625.4	
		㉓	2,304.8	-1	580.7	
				-2	576.9	
				-3	575.7	
				-4	571.5	
		㉔	3,802.0	-1	337.1	
				-2	332.0	
				-3	332.1	
				-4	331.7	
				-5	330.4	
				-6	410.1	
				-7	379.7	
				-8	330.9	
				-9	333.2	
				-10	346.1	
				-11	338.7	
		㉕	5,350.6	-1	318.9	
				-2	318.7	
				-3	318.9	
				-4	320.4	
				-5	319.0	
				-6	320.0	
				-7	322.3	
				-8	320.4	
				-9	320.3	
				-10	319.5	
				-11	310.1	
				-12	422.0	
				-13	356.8	
				-14	354.9	
				-15	354.6	
				-16	353.8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㉖	4,484.2	-1	274.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80.6	
				-3	279.7	
				-4	280.2	
				-5	276.8	
				-6	279.8	
				-7	282.2	
				-8	262.4	
				-9	253.9	
				-10	281.1	
				-11	281.0	
				-12	282.0	
				-13	281.2	
				-14	283.2	
				-15	291.2	
				-16	314.7	
		㉗	1,664.8	-1	278.3	
				-2	277.9	
				-3	278.8	
				-4	277.2	
				-5	274.7	
				-6	277.9	
		㉘	4,547.7	-1	397.4	
				-2	394.4	
				-3	466.6	
				-4	321.8	
				-5	299.0	
				-6	297.9	
				-7	291.0	
				-8	282.2	
				-9	300.0	
				-10	524.7	
				-11	560.6	
				-12	412.1	
		㉙	3,205.0	-1	354.4	
				-2	325.4	
				-3	341.3	
				-4	341.0	
				-5	339.2	
				-6	298.2	
				-7	304.8	
				-8	297.9	
				-9	297.2	
				-10	305.6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7	㉚	5,198.8	-1	325.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22.6	
				-3	322.1	
				-4	317.4	
				-5	281.1	
				-6	320.0	
				-7	269.9	
				-8	427.0	
				-9	327.3	
				-10	402.8	
				-11	463.8	
				-12	480.2	
				-13	467.6	
				-14	472.0	
		㉛	4,003.2	-1	311.9	
				-2	311.8	
				-3	312.3	
				-4	311.0	
				-5	310.0	
				-6	310.0	
				-7	315.0	
				-8	305.0	
				-9	303.0	
				-10	304.0	
				-11	304.1	
				-12	303.9	
				-13	301.2	
	소계	-	152,182.6	-	-	
	H8	①	7,470.0	-1	304.6	
				-2	317.4	
				-3	317.2	
				-4	317.1	
				-5	272.0	
				-6	478.8	
				-7	248.0	
				-8	272.0	
				-9	285.3	
				-10	285.0	
				-11	285.3	
				-12	285.1	
				-13	283.7	
				-14	284.1	
				-15	304.0	
				-16	304.2	
				-17	302.4	
				-18	323.8	
				-19	551.7	
				-20	504.1	
				-21	351.0	
				-23	295.9	
				-24	297.3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8	②	7,616.9	-1	261.6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69.7	
				-3	269.8	
				-4	270.0	
				-5	269.9	
				-6	270.0	
				-7	270.1	
				-8	288.0	
				-9	287.3	
				-10	298.3	
				-11	356.3	
				-13	293.3	
				-14	294.6	
				-15	309.3	
				-16	303.7	
				-18	394.6	
				-19	299.2	
				-20	266.6	
				-21	288.6	
				-22	288.0	
				-23	270.0	
				-24	269.8	
				-25	269.9	
				-26	269.9	
				-27	324.1	
				-28	364.3	
		③	9,920.6	-1	280.6	
				-2	294.4	
				-3	294.7	
				-4	294.7	
				-5	294.6	
				-6	295.1	
				-7	295.0	
				-8	302.3	
				-9	423.9	
				-10	309.8	
				-11	314.0	
				-12	314.2	
				-13	311.1	
				-14	309.4	
				-15	313.0	
				-16	315.4	
				-17	301.5	
				-18	302.7	
				-19	302.8	
				-20	282.8	
				-21	372.8	
				-22	453.9	
				-23	456.2	
				-24	453.9	
				-25	452.6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8	③	9,920.6	-26	453.1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7	453.2	
				-28	334.8	
				-29	338.1	
		④	4,599.5	-1	344.1	
				-2	265.1	
				-3	318.7	
				-4	265.1	
				-5	264.9	
				-6	264.8	
				-7	264.3	
				-8	294.7	
				-9	273.9	
				-10	274.1	
				-11	273.7	
				-12	274.1	
				-13	273.8	
				-14	274.1	
				-15	388.2	
				-16	285.9	
		⑤	7,397.0	-1	467.1	
				-2	359.4	
				-3	398.9	
				-4	270.4	
				-5	284.7	
				-6	315.0	
				-7	471.2	
				-8	444.0	
				-9	337.9	
				-10	259.0	
				-11	253.6	
				-12	279.1	
				-13	273.1	
				-14	264.4	
				-15	437.4	
				-16	293.4	
				-17	274.9	
				-18	279.1	
				-19	272.3	
				-20	271.4	
				-21	265.5	
				-22	260.4	
				-23	364.8	
		⑥	9,010.7	-1	282.1	
				-2	278.9	
				-3	277.5	
				-4	280.1	
				-5	316.1	
				-6	321.5	
				-7	305.5	
				-8	370.3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8	⑥	9,010.7	-9	248.4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0	271.2	
				-11	281.4	
				-12	280.9	
				-13	272.3	
				-14	248.5	
				-15	323.3	
				-16	327.4	
				-17	282.7	
				-18	273.0	
				-19	280.6	
				-20	287.4	
				-21	281.1	
				-22	267.9	
				-23	352.6	
				-24	350.1	
				-25	259.6	
				-26	259.1	
				-27	281.0	
				-28	266.0	
				-29	227.2	
				-30	337.2	
				-31	319.8	
	소계	-	46,014.7	-	-	
	H9	①	4,037.2	-1	394.2	
				-2	397.3	
				-3	399.2	
				-4	404.1	
				-5	496.1	
				-6	473.0	
				-7	322.7	
				-8	363.2	
				-9	359.5	
				-10	427.9	
		②	2,110.7	-1	408.1	
				-2	405.8	
				-3	410.0	
				-4	295.6	
				-5	295.7	
				-6	295.5	
		③	8,345.7	-1	469.1	
				-2	462.0	
				-3	289.1	
				-4	289.9	
				-5	295.0	
				-6	266.8	
				-7	278.4	
				-8	271.2	
				-9	281.7	
				-10	280.8	
				-11	271.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9	③	8,345.7	-12	279.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3	266.8	
				-14	250.2	
				-15	254.9	
				-16	264.0	
				-17	263.2	
				-18	262.8	
				-19	253.1	
				-20	263.0	
				-21	252.3	
				-22	261.4	
				-23	251.3	
				-24	255.6	
				-25	248.1	
				-26	248.3	
				-27	248.9	
				-28	248.0	
				-29	247.5	
				-30	272.3	
		④	8,455.4	-1	375.7	
				-2	309.8	
				-3	310.0	
				-4	309.9	
				-5	264.9	
				-6	264.8	
				-7	265.1	
				-8	288.7	
				-9	254.6	
				-10	259.5	
				-11	260.9	
				-12	260.2	
				-13	260.2	
				-14	260.6	
				-15	259.8	
				-16	250.0	
				-17	244.8	
				-18	248.4	
				-19	249.2	
				-20	250.0	
				-21	250.0	
				-22	248.6	
				-23	251.0	
				-24	260.9	
				-25	245.6	
				-26	249.8	
				-27	250.1	
				-28	249.8	
				-29	249.9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9	④	8,455.4	-30	247.7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31	249.8	
				-32	255.1	
		⑤	7,649.1	-1	291.9	
				-2	308.9	
				-3	305.1	
				-4	304.9	
				-5	305.4	
				-6	305.3	
				-7	305.3	
				-8	305.3	
				-9	305.5	
				-10	332.0	
				-11	360.2	
				-12	309.5	
				-13	310.3	
				-14	310.2	
				-15	310.6	
				-16	279.9	
				-17	279.9	
				-18	280.2	
				-19	291.3	
				-20	306.1	
				-21	307.3	
				-22	307.1	
				-23	307.8	
				-24	308.6	
				-25	310.5	
	소계	-	30,598.1	-	-	
	H11	①	1,393.5	-1	462.8	
				-2	461.9	
				-3	468.8	
		②	1,349.5	-1	446.4	
				-2	452.7	
				-3	450.4	
		③	5,909.0	-1	516.1	
				-2	460.3	
				-3	456.4	
				-4	442.8	
				-5	440.8	
				-6	440.8	
				-7	428.7	
				-8	402.8	
				-9	440.8	
				-10	442.8	
				-11	456.3	
				-12	460.3	
				-13	520.1	
		④	1,361.6	-1	470.1	
				-2	462.0	
				-3	429.5	
	소계	-	10,013.6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2	①	16,328.4	-1	327.6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30.5	
				-3	330.6	
				-4	396.2	
				-5	395.4	
				-6	395.4	
				-7	342.0	
				-8	342.9	
				-9	340.7	
				-10	334.8	
				-11	335.7	
				-12	335.6	
				-13	334.2	
				-14	362.1	
				-15	362.1	
				-16	362.0	
				-17	362.0	
				-18	360.2	
				-19	394.2	
				-20	329.6	
				-21	345.5	
				-22	332.8	
				-23	331.4	
				-24	329.3	
				-25	361.4	
				-26	359.2	
				-27	359.4	
				-28	359.7	
				-29	359.9	
				-30	359.9	
				-31	342.3	
				-32	343.4	
				-33	343.4	
				-34	345.7	
				-35	342.9	
				-36	338.3	
				-37	397.0	
				-38	396.0	
				-39	396.4	
				-40	381.7	
				-41	381.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2	①	16,328.4	-42	381.3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43	341.0	
				-44	343.3	
				-45	341.2	
				-46	341.2	
		②	3,392.9	-1	371.0	
				-2	371.4	
				-3	370.9	
				-4	370.1	
				-5	371.8	
				-6	378.2	
				-7	386.5	
				-8	386.0	
				-9	387.0	
		③	1,897.5	-1	391.8	
				-2	396.7	
				-3	392.7	
				-4	356.7	
				-5	359.6	
		④	3,094.4	-1	380.2	
				-2	382.1	
				-3	384.9	
				-4	384.8	
				-5	387.7	
				-6	389.7	
				-7	391.6	
				-8	393.4	
		⑤	4,669.0	-1	378.8	
				-2	383.4	
				-3	338.8	
				-4	334.7	
				-5	333.2	
				-6	335.4	
				-7	343.2	
				-8	343.2	
				-9	344.0	
				-10	346.6	
				-11	401.0	
				-12	394.0	
				-13	392.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2	⑥	4,131.1	-1	333.9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32.6	
				-3	332.4	
				-4	331.8	
				-5	330.0	
				-6	329.1	
				-7	357.9	
				-8	357.1	
				-9	356.0	
				-10	356.0	
				-11	355.8	
				-12	358.5	
		⑦	3,010.3	-1	329.4	
				-2	330.9	
				-3	331.4	
				-4	331.9	
				-5	370.5	
				-6	329.7	
				-7	329.6	
				-8	329.4	
				-9	327.5	
		⑧	3,969.1	-1	369.3	
				-2	370.7	
				-3	370.9	
				-4	370.5	
				-5	370.0	
				-6	348.1	
				-7	351.2	
				-8	352.5	
				-9	356.6	
				-10	355.8	
				-11	353.5	
		⑨	4,717.3	-1	355.9	
				-2	354.5	
				-3	356.4	
				-4	354.8	
				-5	355.1	
				-6	359.0	
				-7	377.2	
				-8	375.2	
				-9	374.8	
				-10	375.0	
				-11	375.7	
				-12	373.6	
				-13	330.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2	⑩	7,490.1	-1	366.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62.5	
				-3	366.1	
				-4	370.1	
				-5	335.9	
				-6	330.4	
				-7	336.6	
				-8	345.1	
				-9	345.5	
				-10	330.2	
				-11	333.7	
				-12	382.4	
				-13	369.9	
				-14	368.8	
				-15	370.0	
				-16	394.6	
				-17	395.3	
				-18	394.4	
				-19	334.6	
				-20	329.9	
				-21	327.9	
		⑪	2,184.8	-1	395.1	
				-2	386.3	
				-3	367.0	
				-4	329.7	
				-5	328.1	
				-6	378.6	
		⑫	2,879.2	-1	349.1	
				-2	343.6	
				-3	331.9	
				-4	334.2	
				-5	335.5	
				-6	392.1	
				-7	394.8	
				-8	398.0	
		⑬	3,207.8	-1	360.4	
				-2	366.4	
				-3	361.9	
				-4	359.6	
				-5	351.9	
				-6	363.2	
				-7	353.0	
				-8	348.2	
				-9	343.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2	⑭	4,180.9	-1	393.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96.5	
				-3	394.6	
				-4	392.3	
				-5	396.5	
				-6	372.1	
				-7	372.3	
				-8	370.7	
				-9	371.1	
				-10	370.5	
				-11	351.1	
		⑮	3,151.5	-1	389.3	
				-2	394.9	
				-3	393.1	
				-4	393.8	
				-5	396.9	
				-6	396.3	
				-7	394.3	
				-8	392.9	
		⑯	4,967.9	-1	351.2	
				-2	347.1	
				-3	349.1	
				-4	347.5	
				-5	347.9	
				-6	340.9	
				-7	338.8	
				-8	340.0	
				-9	342.5	
				-10	367.6	
				-11	370.4	
				-12	368.9	
				-13	367.6	
				-14	388.4	
		⑰	18,120.7	-1	395.6	
				-2	391.7	
				-3	396.8	
				-4	353.2	
				-5	350.8	
				-6	350.4	
				-7	353.1	
				-8	353.1	
				-9	350.6	
				-10	351.2	
				-11	351.9	
				-12	356.8	
				-13	358.4	
				-14	389.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2	⑰	18,120.7	-15	392.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6	343.5	
				-17	339.9	
				-18	340.6	
				-19	392.2	
				-20	393.9	
				-21	330.5	
				-22	349.9	
				-23	337.1	
				-24	338.2	
				-25	367.6	
				-26	367.7	
				-27	372.1	
				-28	370.9	
				-29	369.0	
				-30	369.6	
				-31	366.0	
				-32	375.2	
				-33	399.0	
				-34	376.4	
				-35	377.3	
				-36	377.4	
				-37	377.3	
				-38	395.7	
				-39	365.6	
				-40	397.9	
				-41	384.7	
				-42	383.2	
				-43	382.9	
				-44	382.9	
				-45	393.4	
				-46	396.4	
				-47	391.8	
				-48	351.5	
				-49	368.6	
	소계	-	91,392.9	-	-	
	H13	①	8,798.9	-1	466.9	
				-2	491.9	
				-3	487.9	
				-4	494.8	
				-5	488.8	
				-6	469.6	
				-7	471.6	
				-8	471.6	
				-9	501.3	
				-10	501.3	
				-11	501.3	
				-12	505.2	
				-13	473.2	
				-14	418.1	
				-15	414.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3	①	8,798.9	-16	441.5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7	603.4	
				-18	596.4	
		②	3,299.0	-1	464.0	
				-2	449.0	
				-3	407.0	
				-4	428.0	
				-5	378.0	
				-6	520.7	
				-7	652.3	
		③	1,027.1	-1	473.1	
				-2	554.0	
		④	3,632.8	-1	592.3	
				-2	559.2	
				-3	642.3	
				-4	449.7	
				-5	493.7	
				-6	447.8	
				-7	447.8	
		⑤	3,456.4	-1	549.1	
				-2	603.2	
				-3	447.9	
				-4	436.3	
				-5	503.3	
				-6	483.3	
				-7	433.3	
		⑥	1,669.4	-1	584.1	
				-2	542.2	
				-3	543.1	
		⑦	1,719.2	-1	455.6	
				-2	456.9	
				-3	383.4	
				-4	423.3	
		⑧	4,039.5	-1	486.7	
				-2	507.7	
				-3	497.2	
				-4	507.1	
				-5	507.2	
				-6	502.2	
				-7	513.2	
				-8	518.2	
	소계	-	27,642.3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4	①	1,435.0	-1	279.3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77.8	
				-3	278.6	
				-4	278.5	
				-5	320.8	
		②	1,371.4	-1	278.1	
				-2	271.2	
				-3	271.1	
				-4	272.1	
				-5	278.9	
		③	1,589.6	-1	286.5	
				-2	293.3	
				-3	256.5	
				-4	250.0	
				-5	250.3	
				-6	253.0	
		④	1,592.5	-1	306.1	
				-2	319.0	
				-3	322.1	
				-4	324.2	
				-5	321.1	
		⑤	4,030.9	-1	293.2	
				-2	262.2	
				-3	262.2	
				-4	332.0	
				-5	340.1	
				-6	332.1	
				-7	307.1	
				-8	287.0	
				-9	282.4	
				-10	283.2	
				-11	288.3	
				-12	381.3	
				-13	379.8	
		⑥	4,706.1	-1	379.4	
				-2	340.2	
				-3	349.2	
				-4	340.2	
				-5	349.2	
				-6	288.9	
				-7	297.9	
				-8	284.9	
				-9	337.0	
				-10	297.9	
				-11	288.9	
				-12	285.1	
				-13	289.1	
				-14	289.1	
				-15	289.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4	⑦	3,066.2	-1	332.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54.1	
				-3	333.2	
				-4	313.2	
				-5	333.2	
				-6	309.2	
				-7	271.8	
				-8	268.8	
				-9	269.8	
				-10	280.7	
	소계	-	17,791.7	-	-	
	H15	①	3,843.0	-1	297.4	
				-2	301.0	
				-3	301.6	
				-4	305.4	
				-5	306.0	
				-6	306.7	
				-7	310.5	
				-8	314.9	
				-9	270.1	
				-10	276.9	
				-11	275.8	
				-12	270.2	
				-13	306.5	
		②	1,397.1	-1	280.9	
				-2	273.4	
				-3	278.5	
				-4	275.1	
				-5	289.2	
		③	8,966.9	-1	335.6	
				-2	476.9	
				-3	286.4	
				-4	272.1	
				-5	301.5	
				-6	303.0	
				-7	331.9	
				-8	315.4	
				-9	289.4	
				-10	290.7	
				-11	317.8	
				-12	276.1	
				-13	345.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5	③	8,966.9	-14	357.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5	326.6	
				-16	314.2	
				-17	295.2	
				-18	332.8	
				-19	350.3	
				-20	354.9	
				-21	350.7	
				-22	327.3	
				-23	298.1	
				-24	305.7	
				-25	323.2	
				-26	283.3	
				-27	303.2	
				-28	302.4	
		④	2,891.1	-1	342.9	
				-2	318.2	
				-3	319.4	
				-4	310.5	
				-5	322.0	
				-6	302.0	
				-7	301.0	
				-8	344.0	
				-9	331.1	
		⑤	2,499.1	-1	335.3	
				-2	306.1	
				-3	306.1	
				-4	336.3	
				-5	309.8	
				-6	306.1	
				-7	306.1	
				-8	293.3	
		⑥	3,585.6	-1	294.2	
				-2	290.2	
				-3	290.2	
				-4	290.2	
				-5	300.3	
				-6	300.3	
				-7	313.7	
				-8	299.7	
				-9	299.7	
				-10	299.7	
				-11	299.7	
				-12	307.7	
	소계	-	23,182.80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6	①	5,104.0	-1	265.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70.0	
				-3	269.7	
				-4	278.1	
				-5	276.2	
				-6	276.1	
				-7	282.6	
				-8	254.9	
				-9	260.4	
				-10	260.8	
				-11	255.0	
				-12	343.2	
				-13	342.0	
				-14	345.1	
				-15	309.7	
				-16	249.0	
				-17	249.6	
				-18	316.4	
	소계	-	5,104.0	-	-	
	H17	①	2,548.5	-1	300.3	
				-2	302.0	
				-3	304.7	
				-4	306.8	
				-5	367.1	
				-6	310.4	
				-7	310.0	
				-8	347.2	
		②	2,419.2	-1	263.6	
				-2	265.0	
				-3	263.8	
				-4	249.2	
				-5	292.7	
				-6	278.4	
				-7	262.2	
				-8	272.0	
				-9	272.3	
		③	3,107.3	-1	304.7	
				-2	311.6	
				-3	308.3	
				-4	310.3	
				-5	311.5	
				-6	318.6	
				-7	312.3	
				-8	312.1	
				-9	313.2	
				-10	304.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7	④	2,427.2	-1	265.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65.5	
				-3	268.1	
				-4	269.9	
				-5	288.3	
				-6	251.5	
				-7	272.2	
				-8	269.5	
				-9	277.2	
		⑤	1,038.8	-1	349.2	
				-2	352.9	
				-3	336.7	
		⑥	2,659.6	-1	307.0	
				-2	302.6	
				-3	302.6	
				-4	301.8	
				-5	339.8	
				-6	360.9	
				-7	351.5	
				-8	393.4	
		⑦	1,661.1	-1	321.6	
				-2	336.0	
				-3	332.7	
				-4	333.1	
				-5	337.7	
		⑧	2,211.2	-1	320.7	
				-2	318.2	
				-3	318.3	
				-4	317.8	
				-5	316.7	
				-6	300.5	
				-7	319.0	
	소계	-	18,072.9	-	-	
	H18	①	1,775.5	-1	600.2	
				-2	650.0	
				-3	525.3	
		②	3,132.5	-1	604.4	
				-2	520.3	
				-3	520.8	
				-4	450.9	
				-5	455.5	
				-6	580.6	
		③	2,650.1	-1	610.9	
				-2	523.1	
				-3	524.0	
				-4	488.5	
				-5	503.6	
		④	7,009.7	-1	802.3	
				-2	596.3	
				-3	576.4	
				-4	542.9	
				-5	551.2	
				-6	552.4	
				-7	535.2	
				-8	518.1	
				-9	476.4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8	④	7,009.7	-10	614.9	
				-11	416.9	
				-12	413.1	
				-13	413.6	
		⑤	4,352.2	-1	424.2	
				-2	440.2	
				-3	438.3	
				-4	429.3	
				-5	461.0	
				-6	376.4	
				-7	448.0	
				-8	444.1	
				-9	445.9	
				-10	444.8	
		⑥	2,602.5	-1	551.9	
				-2	481.6	
				-3	480.9	
				-4	483.6	
				-5	604.5	
	소계	-	21,522.5	-		
	H21	①	10,127.7	-1	542.7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538.9	
				-3	552.7	
				-4	424.0	
				-5	423.0	
				-6	493.2	
				-7	399.9	
				-8	468.7	
				-9	670.3	
				-10	645.3	
				-11	718.2	
				-12	726.1	
				-13	406.4	
				-14	408.6	
				-15	519.5	
				-16	418.2	
				-17	302.5	
				-18	514.2	
				-19	469.7	
				-20	485.6	
		②	4,358.0	-1	615.6	
				-2	590.5	
				-3	591.7	
				-4	582.8	
				-5	662.0	
				-6	672.2	
				-7	643.2	
		③	4,892.3	-1	584.7	
				-2	560.0	
				-3	545.5	
				-4	442.7	
				-5	413.5	
				-6	378.1	
				-7	455.6	
				-8	582.4	
				-9	460.8	
				-10	469.0	
		④	1,364.9	-1	309.9	
				-2	312.2	
				-3	369.3	
				-4	373.5	
	소계	-	20,742.9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2	①	4,490.5	-1	388.6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88.1	
				-3	389.7	
				-4	384.1	
				-5	387.5	
				-6	395.6	
				-7	421.3	
				-8	390.1	
				-9	388.3	
				-10	464.4	
				-11	492.8	
		②	835.3	-1	432.5	
				-2	402.8	
		③	3,375.8	-1	415.4	
				-2	445.0	
				-3	401.7	
				-4	464.3	
				-5	425.3	
				-6	401.3	
				-7	406.9	
				-8	415.9	
		④	1,546.6	-1	406.0	
				-2	365.3	
				-3	380.7	
				-4	394.6	
		⑤	4,228.2	-1	488.3	
				-2	456.6	
				-3	378.9	
				-4	379.8	
				-5	354.1	
				-6	402.9	
				-7	389.9	
				-8	419.8	
				-9	324.0	
				-10	321.6	
				-11	312.3	
		⑥	798.8	-1	394.2	
				-2	404.6	
		⑦	2,863.9	-1	369.5	
				-2	352.2	
				-3	355.7	
				-4	366.1	
				-5	365.6	
				-6	345.6	
				-7	350.6	
				-8	358.6	
		⑧	1,392.3	-1	354.1	
				-2	342.2	
				-3	336.6	
				-4	359.4	
	소계	-	19,531.4	-	-	
합계		-	626,383.0	-		

○ 점포겸용주택용지 - CH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	①	2,431.7	-1	385.2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29.8	
				-3	331.4	
				-4	330.1	
				-5	330.0	
				-6	330.1	
				-7	395.1	
		②	1,395.8	-1	314.1	
				-2	250.9	
				-3	302.0	
				-4	256.7	
				-5	272.1	
		③	2,957.9	-1	319.0	
				-2	318.8	
				-3	315.8	
				-4	319.4	
				-5	318.6	
				-6	341.0	
				-7	340.9	
				-8	346.4	
				-9	338.0	
		④	1,768.5	-1	351.4	
				-2	331.0	
				-3	331.2	
				-4	381.9	
				-5	373.0	
		⑤	3,067.2	-1	307.1	
				-2	306.5	
				-3	307.1	
				-4	307.2	
				-5	307.8	
				-6	306.3	
				-7	306.4	
				-8	306.2	
				-9	306.7	
				-10	305.9	
		⑥	3,147.0	-1	314.1	
				-2	314.7	
				-3	314.3	
				-4	314.6	
				-5	315.0	
				-6	315.2	
				-7	314.7	
				-8	314.6	
				-9	314.8	
				-10	315.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	⑦	3,109.2	-1	310.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09.0	
				-3	310.1	
				-4	309.1	
				-5	307.0	
				-6	314.1	
				-7	314.5	
				-8	313.7	
				-9	310.9	
				-10	310.8	
		⑧	3,064.9	-1	306.0	
				-2	305.0	
				-3	303.6	
				-4	303.7	
				-5	303.4	
				-6	310.8	
				-7	309.3	
				-8	307.8	
				-9	308.1	
				-10	307.2	
		⑨	2,139.7	-1	364.3	
				-2	364.0	
				-3	369.9	
				-4	352.0	
				-5	343.5	
				-6	346.0	
		⑩	3,106.5	-1	309.9	
				-2	309.0	
				-3	309.6	
				-4	307.3	
				-5	307.1	
				-6	313.9	
				-7	313.0	
				-8	313.9	
				-9	311.8	
				-10	311.0	
		⑪	3,101.1	-1	310.6	
				-2	310.2	
				-3	308.5	
				-4	307.9	
				-5	306.5	
				-6	311.6	
				-7	311.7	
				-8	311.3	
				-9	311.8	
				-10	311.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	⑫	3,142.9	-1	314.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16.5	
				-3	312.0	
				-4	315.7	
				-5	315.0	
				-6	313.5	
				-7	315.0	
				-8	311.4	
				-9	315.0	
				-10	314.8	
		⑬	3,511.8	-1	334.4	
				-2	335.2	
				-3	332.5	
				-4	338.4	
				-5	380.8	
				-6	375.0	
				-7	372.7	
				-8	371.9	
				-9	335.4	
				-10	335.5	
		⑭	2,522.1	-1	358.2	
				-2	351.2	
				-3	348.0	
				-4	347.9	
				-5	371.4	
				-6	372.7	
				-7	372.7	
		⑮	1,021.5	-1	354.2	
				-2	337.1	
				-3	330.2	
		⑯	3,553.1	-1	341.6	
				-2	344.7	
				-3	344.7	
				-4	343.9	
				-5	344.1	
				-6	348.2	
				-7	371.3	
				-8	370.9	
				-9	372.5	
				-10	371.2	
		⑰	8,643.9	-1	353.0	
				-2	351.4	
				-3	350.7	
				-4	351.1	
				-5	350.8	
				-6	351.0	
				-7	351.1	
				-8	351.0	
				-9	351.0	
				-10	418.6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	⑰	8,643.9	-11	358.5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2	334.0	
				-13	333.9	
				-14	331.9	
				-15	334.0	
				-16	334.1	
				-17	332.4	
				-18	330.0	
				-19	344.6	
				-20	344.3	
				-21	336.8	
				-22	336.8	
				-23	336.9	
				-24	342.5	
				-25	333.5	
		⑱	3,825.7	-1	315.0	
				-2	319.0	
				-3	317.9	
				-4	319.4	
				-5	319.2	
				-6	322.5	
				-7	321.7	
				-8	318.8	
				-9	318.9	
				-10	318.6	
				-11	319.0	
				-12	315.7	
		⑲	2,489.6	-1	309.8	
				-2	308.9	
				-3	311.3	
				-4	314.0	
				-5	313.8	
				-6	310.6	
				-7	309.7	
				-8	311.5	
		⑳	3,845.9	-1	318.9	
				-2	326.7	
				-3	315.8	
				-4	322.7	
				-5	323.7	
				-6	326.1	
				-7	321.0	
				-8	318.9	
				-9	318.8	
				-10	312.3	
				-11	320.9	
				-12	320.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	㉑	3,716.4	-1	293.9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04.7	
				-3	303.3	
				-4	302.4	
				-5	302.0	
				-6	303.3	
				-7	324.0	
				-8	320.4	
				-9	319.2	
				-10	318.2	
				-11	318.2	
				-12	306.8	
		㉒	3,739.6	-1	300.0	
				-2	319.0	
				-3	319.4	
				-4	321.6	
				-5	319.0	
				-6	322.3	
				-7	313.4	
				-8	309.9	
				-9	311.2	
				-10	308.0	
				-11	306.7	
				-12	289.1	
	소계	-	69,302.0	-	-	
	H3	①	5,927.5	-1	279.6	
				-2	278.3	
				-3	278.8	
				-4	278.1	
				-5	306.0	
				-6	306.0	
				-7	306.0	
				-8	334.1	
				-9	329.8	
				-10	330.1	
				-11	330.1	
				-12	330.1	
				-13	301.5	
				-14	333.6	
				-15	331.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3	①	5,927.5	-16	330.5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7	334.1	
				-18	310.2	
				-19	298.9	
				-1	315.0	
				-2	321.1	
				-3	298.1	
				-4	316.8	
				-5	329.2	
		②	6,326.3	-6	326.6	
				-7	337.3	
				-8	329.2	
				-9	276.7	
				-10	323.1	
				-11	299.7	
				-12	278.0	
				-13	313.5	
				-14	301.1	
		③	2,956.5	-15	322.6	
				-16	333.7	
				-17	327.2	
				-18	306.6	
				-19	331.4	
				-20	339.4	
				-1	288.0	
				-2	297.4	
				-3	285.9	
		④	1,635.2	-4	290.7	
				-5	282.9	
				-6	316.6	
				-7	318.6	
				-8	289.2	
				-9	299.0	
				-10	288.2	
				-1	328.5	
				-2	325.4	
		⑤	1,903.4	-3	327.7	
				-4	326.2	
				-5	327.4	
				-1	309.7	
				-2	318.7	
				-3	312.6	
				-4	313.9	
				-5	320.0	
				-6	328.5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3	⑥	1,799.7	-1	299.3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00.9	
				-3	299.9	
				-4	299.8	
				-5	299.8	
				-6	300.0	
		⑦	1,841.3	-1	304.7	
				-2	310.4	
				-3	304.1	
				-4	305.7	
				-5	311.5	
				-6	304.9	
		⑧	939.9	-1	309.3	
				-2	321.4	
				-3	309.2	
		⑨	1,176.6	-1	294.0	
				-2	295.4	
				-3	294.5	
				-4	292.7	
		⑩	7,155.8	-1	311.0	
				-2	319.3	
				-3	318.5	
				-4	327.2	
				-5	305.9	
				-6	306.0	
				-7	305.9	
				-8	305.9	
				-9	266.1	
				-10	266.2	
				-11	266.3	
				-12	266.1	
				-13	266.2	
				-14	266.1	
				-15	274.0	
				-16	274.0	
				-17	274.0	
				-18	274.1	
				-19	275.5	
				-20	261.2	
				-21	261.3	
				-22	261.0	
				-23	261.4	
				-24	324.4	
				-25	318.2	
		⑪	1,747.3	-1	286.8	
				-2	293.0	
				-3	293.0	
				-4	293.5	
				-5	293.6	
				-6	287.4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3	⑫	2,845.8	-1	287.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 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93.3	
				-3	292.8	
				-4	277.9	
				-5	272.0	
				-6	272.4	
				-7	277.8	
				-8	292.8	
				-9	293.1	
				-10	286.7	
		⑬	1,425.9	-1	283.4	
				-2	296.1	
				-3	295.8	
				-4	280.2	
				-5	270.4	
		⑭	2,974.5	-1	310.5	
				-2	287.6	
				-3	287.5	
				-4	287.7	
				-5	314.6	
				-6	314.6	
				-7	287.7	
				-8	287.5	
				-9	287.4	
				-10	309.4	
		⑮	2,973.2	-1	309.3	
				-2	288.3	
				-3	288.4	
				-4	287.3	
				-5	314.9	
				-6	314.7	
				-7	287.0	
				-8	286.8	
				-9	287.9	
				-10	308.6	
		⑯	1,490.7	-1	304.0	
				-2	292.3	
				-3	289.8	
				-4	290.2	
				-5	314.4	
		⑰	2,440.1	-1	306.1	
				-2	305.9	
				-3	307.2	
				-4	301.4	
				-5	299.9	
				-6	306.5	
				-7	306.3	
				-8	306.8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3	⑲	1,915.6	-1	306.9	
				-2	310.8	
				-3	325.0	
				-4	322.9	
				-5	321.9	
				-6	328.1	
	소계	-	49,475.3	-	-	
	H5	①	9,663.9	-1	342.8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29.8	
				-3	328.5	
				-4	280.4	
				-5	280.3	
				-6	280.4	
				-7	281.2	
				-8	281.0	
				-9	312.2	
				-10	319.8	
				-11	323.0	
				-12	310.8	
				-13	308.9	
				-14	309.8	
				-15	310.5	
				-16	311.4	
				-17	310.8	
				-18	310.3	
				-19	263.3	
				-20	271.2	
				-21	249.3	
				-22	235.9	
				-23	321.0	
				-24	320.6	
				-25	320.5	
				-26	318.5	
				-27	327.5	
				-28	330.5	
				-29	346.3	
				-30	315.8	
				-31	261.9	
				-32	249.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5	②	3,513.9	-1	260.3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250.7	
				-3	258.5	
				-4	262.2	
				-5	284.5	
				-6	273.9	
				-7	238.3	
				-8	262.4	
				-9	349.2	
				-10	349.9	
				-11	359.2	
				-12	364.8	
		③	2,141.2	-1	293.9	
				-2	282.7	
				-3	256.8	
				-4	234.3	
				-5	264.6	
				-6	271.0	
				-7	272.0	
				-8	265.9	
		④	3,871.7	-1	285.0	
				-2	278.9	
				-3	278.3	
				-4	359.8	
				-5	273.2	
				-6	319.2	
				-7	298.6	
				-8	341.0	
				-9	310.6	
				-10	329.2	
				-11	308.4	
				-12	243.4	
				-13	246.1	
		⑤	2,567.2	-1	316.3	
				-2	325.4	
				-3	324.2	
				-4	316.9	
				-5	317.2	
				-6	325.0	
				-7	325.4	
				-8	316.8	
		⑥	3,558.7	-1	289.5	
				-2	279.2	
				-3	280.7	
				-4	360.2	
				-5	290.6	
				-6	286.5	
				-7	288.0	
				-8	288.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5	⑥	3,558.7	-9	360.1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10	276.2	
				-11	278.9	
				-12	280.1	
		⑦	2,548.5	-1	309.0	
				-2	309.2	
				-3	306.7	
				-4	359.9	
				-5	289.3	
				-6	285.6	
				-7	332.1	
				-8	356.7	
		⑧	1,242.4	-1	407.2	
				-2	399.6	
				-3	435.6	
		⑨	2,662.9	-1	378.8	
				-2	371.1	
				-3	368.0	
				-4	317.3	
				-5	311.8	
				-6	311.6	
				-7	309.4	
				-8	294.9	
		⑩	1,421.2	-1	275.1	
				-2	261.6	
				-3	289.8	
				-4	296.7	
				-5	298.0	
		⑪	5,693.2	-1	275.1	
				-2	298.8	
				-3	304.0	
				-4	304.2	
				-5	283.7	
				-6	318.8	
				-7	304.1	
				-8	340.3	
				-9	288.6	
				-10	272.4	
				-11	270.4	
				-12	261.9	
				-13	298.1	
				-14	301.4	
				-15	301.2	
				-16	301.2	
				-17	304.4	
				-18	328.7	
				-19	335.9	
	소계	-	38,884.8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0	①	1,787.2	-1	447.1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444.7	
				-3	446.3	
				-4	449.1	
		②	884.6	-1	445.9	
				-2	438.7	
		③	7,417.1	-1	488.6	
				-2	490.1	
				-3	489.9	
				-4	491.6	
				-5	499.5	
				-6	503.8	
				-7	503.8	
				-8	503.9	
				-9	473.6	
				-10	589.8	
				-11	363.3	
				-12	504.1	
				-13	551.8	
				-14	492.0	
				-15	471.3	
		④	1,932.2	-1	483.1	
				-2	480.9	
				-3	482.5	
				-4	485.7	
		⑤	1,844.7	-1	470.5	
				-2	416.8	
				-3	447.5	
				-4	509.9	
		⑥	2,219.5	-1	600.4	
				-2	587.4	
				-3	554.2	
				-4	477.5	
	소계	-	16,085.3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9	①	2,878.9	-1	431.9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416.7	
				-3	407.5	
				-4	407.8	
				-5	407.7	
				-6	408.2	
				-7	399.1	
		②	3,220.1	-1	402.0	
				-2	417.6	
				-3	399.9	
				-4	399.8	
				-5	397.9	
				-6	401.8	
				-7	399.9	
				-8	401.2	
		③	3,218.7	-1	389.0	
				-2	420.0	
				-3	430.5	
				-4	394.5	
				-5	394.6	
				-6	394.1	
				-7	394.1	
				-8	401.9	
		④	4,226.5	-1	404.8	
				-2	391.8	
				-3	391.8	
				-4	392.9	
				-5	393.0	
				-6	395.0	
				-7	457.4	
				-8	463.6	
				-9	465.1	
				-10	471.1	
		⑤	3,850.8	-1	313.2	
				-2	308.2	
				-3	412.1	
				-4	404.0	
				-5	404.0	
				-6	404.2	
				-7	403.6	
				-8	397.3	
				-9	403.5	
				-10	400.7	
		⑥	2,561.3	-1	387.5	
				-2	400.1	
				-3	394.3	
				-4	431.1	
				-5	464.2	
				-6	484.1	
		⑦	8,038.2	-1	404.0	
				-2	405.5	
				-3	406.6	
				-4	401.7	
				-5	400.9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9	⑦	8,038.2	-6	400.9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7	400.0	
				-8	400.7	
				-9	401.1	
				-10	400.1	
				-11	406.4	
				-12	404.7	
				-13	405.6	
				-14	475.5	
				-15	368.2	
				-16	367.8	
				-17	367.9	
				-18	407	
				-19	406.8	
				-20	406.8	
		⑧	4,970.5	-1	421.9	
				-2	399.9	
				-3	400.2	
				-4	430.0	
				-5	437.8	
				-6	437.9	
				-7	437.5	
				-8	435.4	
				-9	382.1	
				-10	382.9	
				-11	383.0	
				-12	421.9	
		⑨	7,021.3	-1	440.9	
				-2	411.3	
				-3	411.4	
				-4	413.6	
				-5	420.0	
				-6	380.7	
				-7	380.3	
				-8	379.0	
				-9	380.1	
				-10	381.0	
				-11	378.9	
				-12	379.8	
				-13	380.0	
				-14	382.6	
				-15	377.1	
				-16	374.3	
				-17	374.2	
				-18	376.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9	⑩	3,630.2	-1	411.0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412.2	
				-3	432.5	
				-4	426.9	
				-5	430.6	
				-6	385.0	
				-7	385.2	
				-8	381.9	
				-9	364.9	
		⑪	2,894.6	-1	363.0	
				-2	361.5	
				-3	363.0	
				-4	361.5	
				-5	361.1	
				-6	361.2	
				-7	360.3	
				-8	363.0	
		⑫	2,420.0	-1	422.2	
				-2	458.9	
				-3	557.8	
				-4	515.0	
				-5	466.1	
		⑬	4,537.3	-1	393.9	
				-2	425.5	
				-3	429.9	
				-4	409.9	
				-5	410.8	
				-6	410.7	
				-7	412.7	
				-8	412.4	
				-9	410.7	
				-10	410.6	
				-11	410.2	
		⑭	2,894.5	-1	417.7	
				-2	416.7	
				-3	417.0	
				-4	410.4	
				-5	410.6	
				-6	410.4	
				-7	411.7	
		⑮	2,586.2	-1	412.1	
				-2	412.1	
				-3	412.2	
				-4	411.8	
				-5	411.9	
				-6	526.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19	⑯	1,108.3	-1	392.3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358.5	
				-3	357.5	
		⑰	3,082.3	-1	371.8	
				-2	364.5	
				-3	363.6	
				-4	357.4	
				-5	402.9	
				-6	409.4	
				-7	409.7	
				-8	403.0	
		⑱	1,389.3	-1	336.2	
				-2	346.4	
				-3	351.1	
				-4	355.6	
		⑲	1,525.0	-1	364.1	
				-2	377.4	
				-3	398.0	
				-4	385.5	
		⑳	1,680.1	-1	429.3	
				-2	421.5	
				-3	420.8	
				-4	408.5	
		㉑	3,103.2	-1	363.8	
				-2	365.5	
				-3	365.5	
				-4	336.1	
				-5	335.4	
				-6	335.1	
				-7	335.0	
				-8	334.8	
				-9	332.0	
	소계	-	70,837.3	-	-	
합계		-	244,584.7	-	-	-

○ 휴양형 단독주택용지 - RH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0	①	7,002.5	-1	493.9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490.6	
				-3	491.0	
				-4	492.0	
				-5	491.9	
				-6	492.6	
				-7	501.0	
				-8	501.3	
				-9	517.7	
				-10	503.5	
				-11	503.3	
				-12	514.0	
				-13	501.5	
				-14	508.2	
		②	1,845.8	-1	455.9	
				-2	463.0	
				-3	463.0	
				-4	463.9	
		③	3,704.0	-1	456.0	
				-2	462.5	
				-3	462.4	
				-4	462.7	
				-5	463.1	
				-6	462.9	
				-7	462.9	
				-8	471.5	
		④	5,926.0	-1	380.1	
				-2	381.8	
				-3	500.5	
				-4	500.3	
				-5	521.0	
				-6	520.0	
				-7	500.4	
				-8	486.6	
				-9	643.4	
				-10	501.7	
				-11	496.0	
				-12	494.2	
		⑤	1,022.1	-1	511.0	
				-2	511.1	
		⑥	3,042.1	-1	427.9	
				-2	427.9	
				-3	426.2	
				-4	425.4	
				-5	447.1	
				-6	446.9	
				-7	440.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0	⑦	1,345.2	-1	842.1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503.1	
		⑧	502.3	-	502.3	
		⑨	8,246.9	-1	420.6	
				-2	430.2	
				-3	425.8	
				-4	417.6	
				-5	433.9	
				-6	433.8	
				-7	440.6	
				-8	469.7	
				-9	469.5	
				-10	472.1	
				-11	472.6	
				-12	469.9	
				-13	481.4	
				-14	481.4	
				-15	481.3	
				-16	481.9	
				-17	482.3	
				-18	482.3	
		⑩	8,375.3	-1	431.0	
				-2	450.3	
				-3	458.8	
				-4	493.1	
				-5	450.9	
				-6	450.7	
				-7	450.3	
				-8	471.4	
				-9	471.8	
				-10	471.3	
				-11	477.9	
				-12	476.4	
				-13	476.4	
				-14	481.2	
				-15	472.2	
				-16	467.0	
				-17	466.7	
				-18	457.9	
		⑪	4,973.6	-1	490.5	
				-2	480.7	
				-3	501.4	
				-4	501.2	
				-5	520.8	
				-6	519.2	
				-7	499.5	
				-8	499.8	
				-9	479.6	
				-10	480.9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H20	⑫	3,317.2	-1	441.4	모든 필지의 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함.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고 세대수는 변경이 없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2	448.6	
				-3	448.1	
				-4	448.1	
				-5	504.0	
				-6	503.5	
				-7	523.5	
		⑬	2,871.5	-1	454.5	
				-2	466.1	
				-3	465.6	
				-4	465.2	
				-5	461.0	
				-6	559.1	
		⑭	2,952.4	-1	483.0	
				-2	509.1	
				-3	512.5	
				-4	486.0	
				-5	482.7	
				-6	479.1	
		⑮	2,642.0	-1	461.7	
				-2	453.3	
				-3	449.1	
				-4	421.3	
				-5	421.5	
				-6	435.1	
		⑯	8,230.0	-1	604.3	
				-2	604.0	
				-3	407.2	
				-4	434.6	
				-5	435.2	
				-6	431.3	
				-7	410.0	
				-8	413.7	
				-9	413.2	
				-10	411.1	
				-11	597.1	
				-12	595.2	
				-13	420.0	
				-14	420.0	
				-15	432.1	
				-16	600.8	
				-17	600.2	
		소계	65,998.9	-	-	
합계		기정	65,998.9	-	-	

○ 블럭형 단독주택용지 - BH(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H1	BH1	27,239.0	BH1	27,239.0	필지의 합병은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한하여 허용.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계획세대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계획세대수 20% 이내의 증감은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음~~(삭제조치) (공유수면에 저촉되어 분할된 BH25-1, BH26-1, BH27-1은 종전 블록 BH25, BH26, BH27블록과 각각 필지 합병 권장) 필지 분할 가능(블록을 개별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계획세대수 20% 이내의 증감은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음. 개별 필지 면적은 400-660㎡에 한함)~~(삭제조치) 블록단위 수용세대수가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세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함.
BH2	BH2	21,448.0	BH2	21,448.0	
BH3	BH3	21,548.0	BH3	21,548.0	
BH4	BH4	31,642.0	BH4	31,642.0	
BH5	BH5	10,226.0	BH5	10,226.0	
BH6	BH6	15,230.0	BH6	15,230.0	
BH8	BH8	21,168.0	BH8	21,168.0	
BH9	BH9	17,600.0	BH9	17,600.0	
BH10	BH10	16,653.0	BH10	16,653.0	
BH11	BH11	16,639.0	BH11	16,639.0	
BH14	BH14	30,810.0	BH14	30,810.0	
BH15	BH15	22,327.0	BH15	22,327.0	
BH16	BH16	16,278.0	BH16	16,278.0	
BH17	BH17	17,540.0	BH17	17,540.0	
BH18	BH18	17,844.0	BH18	17,844.0	
BH19	BH19	21,404.0	BH19	21,404.0	
BH20	BH20	15,056.0	BH20	15,056.0	
BH21	BH21	20,052.0	BH21	20,052.0	
BH22	BH22	24,386.0	BH22	24,386.0	
BH23	BH23	26,173.0	BH23	26,173.0	
BH24	BH24	10,984.0	BH24	10,984.0	
BH25	BH25	8,433.5	BH25	8,433.5	
BH25-1	BH25-1	708.4	BH25-1	708.4	
BH26	BH26	9,926.9	BH26	9,926.9	
BH26-1	BH26-1	50.1	BH26-1	50.1	
BH27	BH27	9,545.5	BH27	9,545.5	
BH27-1	BH27-1	3.0	BH27-1	3.0	
BH28	BH28	7,170.5	BH28	7,170.5	
BH31	BH31	19,294.3	BH31	19,294.3	
합계	-	477,379.2	-	-	

② 공동주택용지 - A【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A1	A1	24,048.0	A1	24,048.0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기정	A2	A2	23,581.0	A2	23,581.0	
기정	A3	A3	25,774.3	A3	25,774.3	
기정	A4	A4	19,528.1	A4	19,528.1	
기정	A5	A5	31,660.0	A5	31,660.0	
기정	A6	A6	21,575.9	A6	21,575.9	
기정	A7	A7	53,393.3	A7	53,393.3	
기정	A8	A8	66,765.3	A8	66,765.3	
기정	A9	A9	44,568.1	A9	44,568.1	
기정	A10	A10	43,962.0	A10	43,962.0	
기정	A11	A11	17,656.8	A11	17,656.8	
기정	A12	A12	75,681.9	A12	75,681.9	
기정	A13	A13	60,493.3	A13	60,493.3	
기정	A14	A14	23,290.2	A14	23,290.2	
기정	A15	A15	35,104.0	A15	35,104.0	
기정	A16	A16	90,808.0	A16	90,808.0	
기정	A18	A18	32,047.9	A18	32,047.9	
기정	A19	A19	27,771.1	A19	27,771.1	
기정	A20	A20	37,772.7	A20	37,772.7	
기정	A21	A21	56,078.9	A21	56,078.9	
기정	A22	A22	56,945.0	A22	56,945.0	
기정	A23	A23	41,017.5	A23	41,017.5	
기정	A24	A24	46,628.9	A24	46,628.9	
기정	A25	A25	72,300.5	A25	72,300.5	
기정	A26	A26	42,347.0	A26	42,347.0	
기정	A27	A27	90,174.2	A27	90,174.2	
기정	A28	A28	89,548.0	A28	89,548.0	
기정	A29	A29	41,481.1	A29	41,481.1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A30	A30	66,614.0	A30	66,614.0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기정	A31	A31	30,710.1	A31	30,710.1	
기정	A32	A32	36,106.2	A32	36,106.2	
기정	A33	A33	33,467.0	A33	33,467.0	
기정	A34	A34	29,506.0	A34	29,506.0	
기정	A35	A35	54,205.6	A35	54,205.6	
기정	A36	A36	53,175.3	A36	53,175.3	
기정	A37	A37	37,696.8	A37	37,696.8	
기정	A38	A38	68,540.2	A38	68,540.2	
기정	A39	A39	54,141.0	A39	54,141.0	
변경	A39	A39	53,690.4	A39	53,690.4	
기정	A40	A40	63,272.6	A40	63,272.6	
기정	A41	A41	32,987.5	A41	32,987.5	
기정	A42	A42	50,701.2	A42	50,701.2	
기정	A43	A43	31,218.3	A43	31,218.3	
기정	A44	A44	74,389.7	A44	74,389.7	
기정	A45	A45	72,518.5	A45	72,518.5	
기정	A46	A46	84,025.3	A46	84,025.3	
기정	A47	A47	32,335.9	A47	32,335.9	
기정	A48	A48	57,345.0	A48	57,345.0	
기정	A49	A49	13,469.6	A49	13,469.6	
기정	A50	A50	18,489.3	A50	18,489.3	
기정	A51	A51	28,040.0	A51	28,040.0	
변경	A51	A51	26,840.0	A51	26,840.0	
기정	A53	A53	21,095.6	A53	21,095.6	
기정	A54	A54	49,870.3	A54	49,870.3	
기정	A56	A56	35,921.1	A56	35,921.1	
기정	A57	A57	20,389.5	A57	20,389.5	
기정	A58	A58	31,106.0	A58	31,106.0	
기정	A59	A59	25,406.4	A59	25,406.4	
기정	A60	A60	41,624.9	A60	41,624.9	
기정	A61	A61	34,540.6	A61	34,540.6	
기정	.A62	A62	58,335.6	A62	58,335.6	
기정	A63	A63	21,986.1	A63	21,986.1	
기정	A64	A64	21,095.4	A64	21,095.4	
기정	A65	A65	25,033.4	A65	25,033.4	
기정	A66	A66	35,110.5	A66	35,110.5	
기정	A67	A67	22,888.0	A67	22,888.0	
합계	기정	-	2,759,361.5	-	2,759,361.5	
	변경		2,757,710.9		2,757,710.9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 N【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N1	①	544.8	①	544.8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 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②	1,684.9	-1	329.7	
				-2	337.8	
				-3	337.2	
				-4	336.9	
				-5	343.3	
	소계	-	2,229.7	-	-	
	N2	①	1,430.3	-1	537.6	
				-2	467.2	
				-3	425.5	
		②	2,762.4	-1	449.8	
				-2	451.5	
				-3	448.9	
				-4	445.7	
				-5	441.4	
				-6	525.1	
		③	1,578.5	-1	466.7	
				-2	377.7	
				-3	369.9	
				-4	364.2	
	소계	-	5,771.2	-	-	
	N3	①	885.3	-1	474.2	
				-2	411.1	
		②	2,428.0	-1	346.6	
				-2	346.5	
				-3	346.6	
				-4	346.7	
				-5	347.0	
				-6	346.7	
				-7	347.9	
		③	1,640.4	-1	547.5	
				-2	547.0	
				-3	545.9	
		④	1,203.1	-1	300.3	
				-2	299.9	
				-3	300.9	
				-4	302.0	
	소계	-	6,156.8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N4	①	724.6	-1	358.0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366.6	
		②	1,298.6	-1	429.2	
				-2	430.9	
				-3	438.5	
		③	1,346.5	-1	467.3	
				-2	439.9	
				-3	439.3	
		④	564.8	④	564.8	
		⑤	1,570.1	-1	388.1	
				-2	390.1	
				-3	390.0	
				-4	401.9	
		⑥	1,728.4	-1	427.3	
				-2	428.3	
				-3	429.5	
				-4	443.3	
	소계	-	7,233.0	-	-	
	N5	①	3,994.6	-1	835.1	
				-2	789.3	
				-3	789.4	
				-4	790.1	
				-5	790.7	
		②	3,566.1	-1	919.7	
				-2	881.6	
				-3	882.2	
				-4	882.6	
		③	1,906.5	-1	729.1	
				-2	599.3	
				-3	578.1	
		④	2,260.4	-1	835.1	
				-2	656.2	
				-3	769.1	
		⑤	3,612.9	-1	903.9	
				-2	903.4	
				-3	903.3	
				-4	902.3	
		⑥	3,912.5	-1	986.3	
				-2	953.5	
				-3	1003.7	
				-4	969.0	
		⑦	1,572.0	-1	814.0	
				-2	758.0	
		⑧	2,592.6	-1	666.9	
				-2	596.4	
				-3	528.4	
				-4	800.9	
	소계	-	23,417.6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N6	①	3,313.1	-1	663.6	
				-2	659.4	
				-3	659.7	
				-4	659.7	
				-5	670.7	
		②	3,312.9	-1	663.7	
				-2	660.4	
				-3	660.3	
				-4	659.9	
				-5	668.6	
	소계	-	6,626.0	-	-	
	N7	①	2,387.8	①	2,387.8	
		②	580.1	②	580.1	
		③	2,716.8	-1	676.1	
				-2	676.0	
				-3	1364.7	
기정		④	1,302.7	-1	441.4	
				-2	428.5	
				-3	432.8	
기정	소계	-	6,987.4	-	-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N8	①	2,614.5	-1	721.0	
				-2	978.0	
				-3	915.5	
		②	656.3	②	656.3	
		③	1,474.6	-1	735.0	
				-2	739.6	
		④	3,691.7	-1	690.9	
				-2	691.0	
				-3	695.3	
				-4	923.2	
				-5	691.3	
	소계	-	8,437.1			
	N9	①	1,740.1	-1	557.7	
				-2	560.2	
				-3	622.2	
		②	1,652.3	-1	406.6	
				-2	409.9	
				-3	409.5	
				-4	426.3	
		③	2,575.9	-1	532.8	
				-2	510.6	
				-3	510.8	
				-4	510.8	
				-5	510.9	
		④	1,773.6	-1	459.9	
				-2	448.2	
				-3	447.9	
				-4	417.6	
	소계	-	7,741.9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N10	①	2,400.8	-1	446.6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348.7	
				-3	395.1	
				-4	395.3	
				-5	395.2	
				-6	419.9	
		②	2,407.8	-1	328.9	
				-2	410.5	
				-3	410.8	
				-4	410.7	
				-5	410.6	
				-6	436.3	
		③	1,447.1	-1	399.9	
				-2	400.2	
				-3	647.0	
		④	2,288.0	-1	449.6	
				-2	449.9	
				-3	449.9	
				-4	449.5	
				-5	489.1	
		⑤	2,267.8	-1	559.5	
				-2	558.6	
				-3	559.3	
				-4	590.4	
	소계	-	10,811.5	-	-	
	N11	①	1,977.2	-1	448.1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627.0	
				-4	451.0	
				-5	451.1	
		②	993.3	-1	505.2	
				-2	488.1	
		③	1,873.6	-1	519.7	
				-2	450.7	
				-3	451.7	
				-4	451.5	
		④	2,968.1	-1	524.8	
				-2	518.4	
				-3	525.6	
				-4	521.6	
				-5	877.7	
	소계	-	7,812.2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N12	①	984.4	①	984.4	필지의 분할은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 전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나 3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 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필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는 필지간의 합병과 쿨데삭도로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단위군간의 합병은 불허하며,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②	1,918.0	-1	640.2	
				-2	642.3	
				-3	642.5	
		③	1,818.9	-1	655.0	
				-2	656.4	
				-3	507.5	
	소계	-	4,728.3	-	-	
기정	N13	①	2,807.4	-1	710.8	
				-2	713.1	
				-3	713.7	
				-4	669.8	
		②	2,681.3	-1	658.3	
				-2	719.7	
				-3	716.9	
				-4	586.4	
	소계	-	5,488.7	-	-	
기정	N14	①	1,767.6	-1	883.8	
				-2	883.8	
		②	1,949.0	-1	973.5	
				-2	975.5	
	소계	-	3,716.6	-	-	
기정	N15	①	2,565.5	-1	840.7	
				-2	840.7	
				-3	884.1	
	소계	-	2,565.5	-	-	
기정	N16	①	2,212.0	-1	459.0	
				-2	499.5	
				-3	420.4	
				-4	415.8	
				-5	417.3	
		②	1,990.7	-1	540.5	
				-2	569.8	
				-3	468.0	
				-4	412.4	
	소계	-	4,202.7	-	-	
합계	기정	-	113,926.2	-	-	

※ 필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함

④ 산업(물류)시설용지 - I【변경】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획 지 면적(㎡)	비 고
기정	I1	①		125,297.7	①-1	63,082.0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용지
					①-2	31,249.6	
					①-3	30,966.1	
		②		101,819.9	②-1	65,922.5	
					②-2	32,614.5	
					②-3	3,282.9	
		③	기정	23,258.0	③-1	13,214.0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용지
					③-2	10,044.0	
			변경	23,258.0	③-1	7,899.0	
					③-2	5,986.0	
					③-3	9,373.0	
		④		9,175.0	④	9,175.0	
		⑤	기정	34,783.0	⑤-1	6,691.0	
					⑤-2	6,983.0	
					⑤-3	8,439.0	
					⑤-4	5,547.0	
					⑤-5	7,123.0	
			변경	34,783.0	⑤-1	5,612.0	
					⑤-2	5,466.0	
					⑤-3	11,442.0	
					⑤-4	6,118.0	
					⑤-5	6,145.0	
		⑥		15,909.0	⑥	15,909.0	
	소계	-		310,242.6	-	-	
	I2	①		18,925.0	①-1	4,883.0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용지
					①-2	6,873.0	
					①-3	7,169.0	
		②		3,515.7	②	3,515.7	
		③		4,357.9	③-1	1,828.4	
					③-2	2,529.5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용지
		④		3,184.3	④	3,184.3	
		⑤		13,568.0	⑤-1	6,859.0	
					⑤-2	6,709.0	
		⑥		28,183.0	⑥-1	12,795.0	
					⑥-2	15,388.0	
		⑦		27,808.0	⑦-1	11,899.0	
					⑦-2	15,909.0	
		⑧		12,486.0	⑧	12,486.0	
		⑨		7,860.0	⑨	7,860.0	
		⑩	기정	6,994.0	⑩	6,994.0	
			변경	3,501.0	⑩	3,501.0	
		⑪		4,194.0	⑪	4,194.0	
		⑫		3,704.0	⑫	3,704.0	
		⑬		4,684.0	⑬	4,684.0	
		⑭		5,749.0	⑭	5,749.0	
		⑮		3,294.0	⑮	3,294.0	
		⑯		9,605.0	⑯-1	5,201.0	
					⑯-2	4,404.0	
		⑰	기정	22,526.0	⑰-1	4,237.0	
					⑰-2	5,561.0	
					⑰-3	7,450.0	
					⑰-4	5,278.0	
			변경	22,526.0	⑰-1	5,709.0	
					⑰-2	3,233.0	
					⑰-3	7,429.0	
					⑰-4	6,155.0	
		⑱		2,326.5	⑱	2,326.5	
	소계 기정	-		182,964.4	-	182,964.4	
	소계 변경	-		179,471.4		179,471.4	
합계	기정	-		493,207.0			공통사항 :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은 허용),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획지 합병 가능
	변경			489,714.0			

⑤ 상업용지 - C【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1	①	2,675.0	①	2,675.0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②	1,644.0	②	1,644.0	
	소계	-	4,319.0	-	-	
	C2	①	1,804.2	①	1,804.2	필지분할 불허
		②	7,176.1	-1	2,965.0	
				-2	2,093.0	
				-3	2,118.1	
		③	7,427.4	-1	3,069.3	
				-2	2,192.8	
				-3	2,165.3	
		④	4,153.2	-1	1,726.6	
				-2	1,232.5	
				-3	1,194.1	
		⑤	2,869.2	-1	1,438.9	
				-2	1,430.3	
		⑥	2,558.0	⑥	2,558.0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⑦	2,684.2	-1	920.0	필지분할 불허
				-2	882.7	
				-3	881.5	
		⑧	2,763.6	-1	916.3	
				-2	920.2	
				-3	927.1	
		⑨	1,915.1	⑨	1,915.1	
		⑩	3,281.4	-1	1,657.5	
				-2	1,623.9	
		⑪	2,570.8	⑪	2,570.8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⑫	2,679.8	-1	917.3	필지분할 불허
				-2	880.9	
				-3	881.6	
		⑬	2,757.7	-1	919.9	
				-2	920.5	
				-3	917.3	
		⑭	1,922.1	⑭	1,922.1	
		⑮	3,283.1	-1	1,653.2	
				-2	1,629.9	
		⑯	2,264.8	⑯	2,264.8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⑰	7,081.3	-1	1,758.1	필지분할 불허
				-2	1,757.8	
				-3	1,782.7	
				-4	1,782.7	
		⑱	7,332.6	-1	1,846.2	
				-2	1,844.9	
				-3	1,820.3	
				-4	1,821.2	
		⑲	4,176.4	-1	2,038.2	
				-2	2,138.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2	⑳	3,869.5	-1	1,774.2	필지분할 불허
				-2	2,095.3	
	소계	-	74,570.5	-	-	
	C3	①	4,137.3	-1	2,093.1	필지분할 불허
				-2	2,044.2	
		②	2,426.7	②	2,426.7	
		③	2,608.0	-1	1,289.5	
				-2	1,318.5	
		④	3,172.2	-1	1,057.4	
				-2	1,057.5	
				-3	1,057.3	
		⑤	2,179.8	⑤	2,179.8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⑥	2,192.1	⑥	2,192.1	
		⑦	1,222.8	⑦	1,222.8	필지분할 불허
		⑧	3,601.6	-1	1,264.6	
				-2	2,337.0	
		⑨	1,239.0	⑨	1,239.0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⑩	1,885.1	⑩	1,885.1	
		⑪	1,890.4	⑪	1,890.4	
		⑫	3,525.5	-1	2,291.5	
				-2	1,234.0	
		⑬	1,915.6	-1	953.7	필지분할 불허
				-2	961.9	
	소계	-	31,996.1	-	-	
	C4	①	5,863.0	-1	1,365.0	필지분할 불허
				-2	1,500.0	
				-3	1,500.0	
				-4	1,498.0	
		②	4,888.0	-1	1,625.0	
				-2	1,624.0	
				-3	1,639.0	
		③	1,855.0	③	1,855.0	
		④	8,617.0	-1	1,876.0	
				-2	3,320.0	
				-3	1,710.0	
				-4	1,711.0	
		⑤	3,511.0	-1	1,189.0	
				-2	1,160.0	
				-3	1,162.0	
		⑥	3,511.0	-1	1,194.0	
				-2	1,160.0	
				-3	1,157.0	
		⑦	2,535.0	-1	1,270.0	
				-2	1,265.0	
		⑧	2,535.0	-1	1,275.0	
				-2	1,260.0	
		⑨	1,714.0	⑨	1,714.0	
		⑩	2,229.0	⑩	2,229.0	
	소계	-	37,258.0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5	①	3,576.4	-1	635.4	필지분할 불허
				-2	841.5	
				-3	671.5	
				-4	673.0	
				-5	755.0	
		③	2,593.6	③	2,593.6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④	1,172.4	④	1,172.4	
		⑥	1,030.0	⑥	1,030.0	필지분할 불허
		⑦	2,170.7	-1	674.1	
				-2	748.7	
				-3	747.9	
		⑧	3,879.9	-1	775.0	
				-2	785.0	
				-3	775.1	
				-4	774.9	
				-5	769.9	
		⑩	3,097.3	-1	723.2	
				-2	744.5	
				-3	742.5	
				-4	887.1	
		⑪	1,313.9	⑪	1,313.9	
	소계	-	18,834.2	-	-	
	C6	①	3,170.9	-1	867.6	필지분할 불허
				-2	763.3	
				-3	769.1	
				-4	770.9	
		②	1,325.0	②	1,325.0	
		③	1,141.3	③	1,141.3	
		④	3,703.3	-1	737.9	
				-2	739.2	
				-3	740.3	
				-4	741.0	
				-5	744.9	
		⑤	974.2	⑤	974.2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⑥	1,152.1	⑥	1,152.1	
		⑦	947.5	⑦	947.5	
		⑧	3,461.9	-1	643.7	필지분할 불허
				-2	647.0	
				-3	838.3	
				-4	621.7	
				-5	711.2	
		⑨	2,124.1	-1	730.5	
				-2	733.6	
				-3	660.0	
	소계	-	18,000.3	-	-	
	C7	①	6,581.2	-1	1,848.9	
				-2	1,890.1	
				-3	2,842.2	
		②	6,680.3	-1	1,848.1	
				-2	1,890.2	
				-3	2,942.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7	③	5,394.5	-1	1,105.5	필지분할 불허
				-2	795.7	
				-3	795.6	
				-4	795.7	
				-5	915.6	
				-6	986.4	
		④	10,117.7	-1	818.1	
				-2	816.7	
				-3	828.7	
				-4	828.2	
				-5	828.7	
				-6	828.2	
				-7	828.6	
				-8	828.2	
				-9	828.7	
				-10	828.2	
				-11	928.0	
				-12	927.4	
		⑤	5,075.0	-1	805.0	
				-2	805.1	
				-3	805.0	
				-4	805.0	
				-5	928.0	
				-6	926.9	
		⑥	5,665.2	-1	1,445.3	
				-2	1,387.7	
				-3	1,387.0	
				-4	1,445.2	
		⑦	2,143.4	-1	1,092.1	
				-2	1,051.3	
		⑧	12,113.6	-1	1,213.7	필지분할 불허
				-2	1,253.7	
				-3	2,777.1	
				-4	1,712.7	
				-5	1,700.7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6	1,700.9	
				-7	1,754.8	필지분할 불허
		⑨	10,787.8	-1	917.6	필지분할 불허
				-2	917.4	
				-3	889.7	
				-4	889.6	
				-5	889.6	필지분할 불허, 5·7, 6·8간 필지합병 불허
				-6	889.8	
				-7	889.7	
				-8	889.7	
				-9	889.5	필지분할 불허
				-10	889.7	
				-11	917.8	
				-12	917.7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7	⑩	7,876.1	-1	1,443.7	필지분할 불허
				-2	1,403.7	
				-3	1,404.8	
				-4	1,406.6	
				-5	2,217.3	
	소계	-	72,434.8	-	-	
	C8	①	6,682.1	-1	1,848.7	필지분할 불허
				-2	1,890.5	
				-3	2,942.9	
		②	6,601.7	-1	1,855.1	
				-2	1,895.8	
				-3	2,850.8	
		③	5,657.4	-1	1,443.0	
				-2	1,385.1	
				-3	1,386.2	
				-4	1,443.1	
		④	5,076.9	-1	804.3	
				-2	805.3	
				-3	805.3	
				-4	805.1	
				-5	928.5	
				-6	928.4	
		⑤	10,103.2	-1	815.4	
				-2	815.4	
				-3	827.2	
				-4	827.3	
				-5	827.5	
				-6	827.2	
				-7	827.2	
				-8	827.2	
				-9	827.3	
				-10	827.2	
				-11	927.2	
				-12	927.1	
		⑥	5,403.3	-1	1,106.9	
				-2	796.9	
				-3	797.0	
				-4	797.1	
				-5	917.2	
				-6	988.2	
		⑦	2,144.9	-1	1,093.0	
				-2	1,051.9	
		⑧	7,876.7	-1	1,443.9	
				-2	1,404.8	
				-3	1,404.8	
				-4	1,406.9	
				-5	2,216.3	
		⑨	10,774.3	-1	916.5	
				-2	916.2	
				-3	888.5	
				-4	888.4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8	⑨	10,774.3	-5	888.4	5-7, 6-8간 필지합병 불허
				-6	888.4	
				-7	888.4	
				-8	888.4	
				-9	888.4	필지분할 불허
				-10	888.4	
				-11	917.0	
				-12	917.3	
		⑩	12,115.6	-1	1,211.9	필지분할 불허
				-2	1,253.0	
				-3	2,777.9	
				-4	1,714.4	
				-5	1,701.5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6	1,701.4	
				-7	1,755.5	필지분할 불허
	소계	-	72,436.1	-	-	
	C9	①	3,470.0	①	3,470.0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②	7,959.7	②	7,959.7	
		③	23,091.0	③	23,091.0	
	소계	-	34,520.7	-	-	
	C10	①	7,959.8	①	7,959.8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②	3,471.7	②	3,471.7	
		③	23,095.8	③	23,095.8	
	소계	-	34,527.3	-	-	
	C11	③	2,242.0	③	2,242.0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④	5,803.0	-1	2,611.0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2	3,192.0	
		⑤	4,842.0	-1	1,026.0	필지분할 불허
				-2	1,040.0	
				-3	1,391.0	
				-4	1,385.0	
		⑥	1,262.0	-1	581.0	
				-2	681.0	
		⑦	2,792.0	-1	782.0	
				-2	635.0	
				-3	635.0	
				-4	740.0	
		⑧	4,287.0	-1	1,456.0	
				-2	1,440.0	
				-3	1,391.0	
		③	2,270.8	③	2,270.8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④	5,762.8	-1	2,593.2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필지합병 불허
				-2	3,169.6	
		⑤	4,841.4	-1	1,025.7	필지분할 불허
				-2	1,040.0	
				-3	1,390.7	
				-4	1,385.0	
		⑥	1,262.5	-1	581.3	
				-2	681.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11	⑦	2,798.7	-1	783.8	필지분할 불허
				-2	636.6	
				-3	636.6	
				-4	741.7	
		⑧	4,291.3	-1	1,457.4	
				-2	1,441.6	
				-3	1,392.3	
		⑨	2,101.7	-1	1,063.4	
				-2	1,038.3	
		⑩	4,075.3	-1	1,751.4	
				-2	1,166.4	
				-3	1,157.5	
		⑪	2,138.9	-1	1,078.2	
				-2	1,060.7	
		⑫	5,152.9	-1	3,636.8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2	1,516.1	
		⑮	1,181.0	-1	508.8	필지분할 불허
				-2	672.2	
		⑯	2,631.5	-1	780.0	
				-2	632.6	
				-3	631.5	
				-4	587.4	
		⑰	909.3	⑰	909.3	
	소계	-	39,418.1	-	-	
	C12	①	5,750.1	-1	1,001.6	필지분할 불허
				-2	954.8	
				-3	1,756.6	
				-4	1,087.0	
				-5	950.1	
		②	2,201.7	-1	1,168.7	
				-2	1,033.0	
		③	2,138.0	-1	1,077.9	
				-2	1,060.1	
		④	2,856.3	④	2,856.3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⑤	4,206.8	⑤	4,206.8	
		⑥	2,840.3	⑥	2,840.3	
		⑦	2,756.0	-1	1,376.5	필지분할 불허
				-2	1,379.5	
		⑧	1,726.4	-1	852.5	
				-2	873.9	
		⑨	4,116.4	-1	1,228.5	
				-2	1,104.5	
				-3	964.7	
				-4	818.7	
		⑩	1,142.8	⑩	1,142.8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12	⑪	3,624.8	-1	912.7	필지분할 불허
				-2	913.2	
				-3	907.0	
				-4	891.9	
		⑫	1,134.0	⑫	1,134.0	필지분할 불허
		⑬	6,806.2	-1	4,339.4	필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2	2,466.8	
	소계	-	41,299.8	-	-	
합계		기정	479,614.9			

※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내에서 주요 통경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용지(C)만 허용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변경 없음】

⑦ 업무시설용지 - B【변경 없음】

⑧ 주상복합용지 - RC【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변경	RC2	①	20,365.8	①	20,365.8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RC3-1 및 RC3-2, RC4-1 및 RC4-2는 가구 내 모든 획지를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획지합병계획을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합병 가능
	RC3	①	65,081.8	-1	32,471.7	
				-2	32,610.1	
	RC4	①	51,286.2	-1	29,283.1	
				-2	22,003.1	
합 계		-	136,733.8	-	-	

⑨ 특화거리 조성용지(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 S【변경 없음】

⑩ 특별계획구역 - Rv, CB, T【변경】

ㅇ 유보지 - Rv(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Rv1	①	13,816.0	①	13,816.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②	35,658.0	②	35,658.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③	18,511.0	③	18,511.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④	18,500.0	④	18,500.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⑤	45,850.0	⑤	45,850.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⑥	132,568.0	⑥	132,568.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소계		-	264,903.0	-	-	
Rv2		①	18,182.0	①	18,18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②	11,084.0	②	11,084.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③	18,830.0	③	18,830.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④	15,389.0	④	15,389.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⑤	29,033.0	⑤	29,033.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⑥	26,029.0	⑥	26,029.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⑦	23,097.0	⑦	23,097.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⑧	57,634.0	⑧	57,634.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⑨	52,450.0	⑨	52,450.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⑩	41,792.0	⑩	41,79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⑪	46,172.0	⑪	46,17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소계		-	339,692.0	-	-	
Rv3		①	34,341.0	①	34,341.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②	33,971.0	②	33,971.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③	31,171.0	③	31,171.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④	25,996.0	④	25,996.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⑤	23,992.0	⑤	23,99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소계		-	149,471.0	-	-	
Rv4		①	49,267.0	①	49,267.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②	36,962.0	②	36,96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③	37,065.0	③	37,065.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④	24,565.0	④	24,565.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⑤	44,534.0	⑤	44,534.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⑥	38,986.0	⑥	38,986.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⑦	73,173.0	⑦	73,173.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⑧	55,703.0	⑧	55,703.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⑨	104,670.0	⑨	104,670.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소계		-	464,925.0	-	-	
Rv5		①	88,053.0	①	88,053.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②	86,285.0	②	86,285.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③	615,292.0	③	615,29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④	60,501.0	④	60,501.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⑤	116,722.0	⑤	116,72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⑥	65,623.0	⑥	65,623.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소계		-	1,032,476.0	-	-	
Rv6	기정	Rv6	140,246.0	Rv6	140,246.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변경	Rv6	136,362.0	Rv6	136,362.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Rv7		Rv7	65,160.0	Rv7	65,160.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Rv8	기정	Rv8	75,214.0	Rv8	75,214.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변경	Rv8	79,098.0	Rv8	79,098.0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특별계획구역
합계		-	2,532,087.0	-	2,532,087.0	

○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T(변경 없음)

○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 - CB(변경 없음)

⑪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ㅇ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주【신설】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주1	주1	2,853.1	주1	2,853.1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다만, 대지분할가능선이 있는 경우와 별도의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음 대지분할 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또는 허가)을 받아야 함
	주2	주2	1,989.4	주2	1,989.4	
	주3	주3	6,409.2	-1	3,007.2	
				-2	3,402.0	
	주4	주4	1,487.0	주4	1,487.0	
	주5	주5	2,813.1	주5	2,813.1	
	주6	주6	2,077.7	주6	2,077.7	
	주7	주7	1,452.9	주7	1,452.9	
	주8	주8	4,276.2	주8	4,276.2	
	주9	주9	4,774.0	주9	4,774.0	
	주10	주10	2,068.5	주10	2,068.5	
	주11	주11	3,226.3	주11	3,226.3	
	주12	주12	3,304.6	주12	3,304.6	
	주13	주13	2,140.6	주13	2,140.6	
	주14	주14	5,254.0	주14	5,254.0	
	주15	주15	1,495.1	주15	1,495.1	
	주16	주16	2,442.6	주16	2,442.6	
	주17	주17	1,079.2	주17	1,079.2	
	주18	주18	3,278.9	주18	3,278.9	
	주19	주19	3,393.7	주19	3,393.7	
	주20	주20	2,195.5	주20	2,195.5	
	주21	주21	2,196.9	주21	2,196.9	
	주22	주22	2,999.7	주22	2,999.7	
	주23	주23	1,840.4	주23	1,840.4	
	주24	주24	1,497.1	주24	1,497.1	
	주25	주25	1,537.8	주25	1,537.8	
	주26	주26	1,575.3	주26	1,575.3	
	주27	주27	1,748.4	주27	1,748.4	
	주28	주28	1,120.3	주28	1,120.3	
	주29	주29	1,394.5	주29	1,394.5	
	주30	주30	4,099.2	주30	4,099.2	
	주31	주31	3,444.8	주31	3,444.8	
	주32	주32	5,027.4	주32	5,027.4	
	주33	주33	5,038.3	주33	5,038.3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주34	주34	4,059.0	주34	4,059.0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다만, 대지분할가능선이 있는 경우와 별도의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음 대지분할 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또는 허가)을 받아야 함
	주35	주35	4,066.0	주35	4,066.0	
	주36	주36	4,610.1	주36	4,610.1	
	주37	주37	4,441.0	주37	4,441.0	
	주38	주38	3,267.2	주38	3,267.2	
	주39	주39	3,268.7	주39	3,268.7	
	주40	주40	3,876.7	주40	3,876.7	
	주41	주41	2,140.1	주41	2,140.1	
	주42	주42	2,339.5	주42	2,339.5	
	주43	주43	1,208.2	주43	1,208.2	
	주44	주44	1,227.1	주44	1,227.1	
	주45	주45	1266.5	주45	1266.5	
	주46	주46	980.1	주46	980.1	
	주47	주47	840.1	주47	840.1	
	주48	주48	561.4	주48	561.4	
	주49	주49	2,458.1	주49	2,458.1	
신설	주50	주50	3,493.0	주50	3,493.0	
	주51	주51	2,487.8	주51	2,487.8	
합계		기정	132,141.5			
		변경	138,122.3			

※주30은 3,157㎡, 942.2㎡로 분할 권장

○ 문화시설 - CU【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 복【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 - 체【변경 없음】
○ 교육시설(유치원) - 유【변경 없음】
○ 교육시설(초등학교) - 초【변경 없음】
○ 교육시설(중학교) - 중【변경 없음】
○ 교육시설(고등학교) -고【변경 없음】
○ 교육시설(외국인학교) - 외【변경 없음】
○ 변전소 - 변【변경 없음】
○ 복합환승센터(복합터미널) - MT【변경 없음】
○ 여객자동차차고지 - 차고【변경 없음】
○ 종교시설 - 종【변경 없음】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 폐【변경 없음】
○ 하수종말처리장 - 하【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 - PB【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PB1	PB1	26,213.6	PB1	26,213.6	필지분할 불허
	PB2	PB2	39,752.4	PB2	39,752.4	
	PB3	PB3	46,961.8	PB3	46,961.8	
	PB5	①	2,644.1	-1	1,008.6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2	620.7	
				-3	1,014.8	
	PB6	PB6	974.9	PB6	974.9	필지분할 불허
	PB7	PB7	16,372.0	PB7	16,372.0	
	PB8	PB8	24,438.0	PB8	24,438.0	
	PB9	①	51,147.7	-1	3,007.3	원칙적으로 필지 분할 및 합병 불허(다만, 별도의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음)
				-2	5,484.7	
				-3	33,978.0	
				-4	2,455.6	
				-5	2,268.9	
				-6	3,953.2	
변경	PB9	①	51,147.7	-1	3,007.3	원칙적으로 필지 분할 및 합병 불허 다만, PB9-①-4, 5, 6, 7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5,484.7	
				-3	31,978.0	
				-4	2,455.6	
				-5	2,268.9	
				-6	3,953.2	
				-7	2,000.0	
기정	PB10	PB10	910.5	PB10	910.5	필지분할 불허
	PB11	PB11	662.0	PB11	662.0	
	PB12	①	1,200.0	-1	600.0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2	600.0	
	PB14	PB14	605.9	PB14	605.9	필지분할 불허
	PB15	PB15	2,487.8	PB15	2,487.8	
변경	PB15	PB15	1,200.0	PB15	1,200.0	
기정	PB16	PB16	564.1	PB16	564.1	
합계	기정	-	214,934.8	-	-	
	변경	-	213,647.0	-	-	

○ 교육지원시설 - ER【변경 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주유【변경 없음】

○ 배수지 - 배【변경 없음】

○ 통신시설 - 통신【변경 없음】

○ 오수중계펌프장 - 오【변경 없음】

○ 빗물펌프장 - 빗물【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 - ME【변경 없음】

○ 정압기 - 정【변경 없음】

○ 시장용지 - 시장【변경 없음】

○ 창고시설용지 - 창고【변경 없음】

○ 지하차도 관리사업소 - 도관【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 - 군【변경 없음】

○ 송유시설용지 - 송【변경 없음】

○ 가압장 - 가【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건축선 ·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건축선 ·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① 단독주택용지 - H, BH【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H1~H22, BH1~BH6, BH8~BH11, BH14~BH28, BH31	H1~H22, BH1~BH6, BH8~BH11, BH14~BH28, BH31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 및 교육용도(점포겸용주택용지에 한함)로 사용할 수 없음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1필지당 세대수	·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2〉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계획세대수 20% 이내의 증감은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음~~(삭제조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 1m 건축한계선 지정 - 보행자도로에 면한 일반형, 휴양형 단독주택용지 내 획지 - 공원에 면한 일반형, 휴양형 단독주택용지 내 획지 - 연결녹지에 면한 일반형, 휴양형 단독주택용지 내 획지 - 주차장에 면한 일반형, 휴양형 단독주택용지 내 획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포함)에 면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공원에 면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연결녹지에 면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단독주택의 외벽면은 자연경관자원이 풍부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함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어야 함 ·1층 층고 - 건축물의 통일성 및 경관향상과 임의구조변경방지등을 위하여 1층 층고를 4.5m이하로 한다. (점포겸용주택용지에 한함) · 지붕 및 옥탑 등 - 단독주택의 지붕은 개성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지붕이 설치되도록 자유로운 형태로 계획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 10분의 7 이하로 계획 -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거나 차폐되어야 함 -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음 · 담장,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내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함 - 단독주택용지 내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설치해야 함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보고서'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경관계획(경관특화계획)의 운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외관 및 색채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특화계획)을 따름

<별표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 (변경)

구 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표시			H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CH (점포겸용주택용지)	BH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RH(휴양형 단독주택)
	권장용도	기정					· 1층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점(1,000㎡미만)으로서 24시간 편의점과 휴게음식점 (300㎡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기정	·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에 한함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겸용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것)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3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도록 함) -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3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도록 함) -주택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겸용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것)
	불허용도		· 권장/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권장/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50%	60%	50%	60%	50%
용적률			100%	150%	120%	120%	120%
최고 층수			3층	3층	3층	3층	3층
1필지당 가구수		기정	3가구	3가구	세대당 2가구		3가구
해당가구		기정	H1, H4, H6~H9, H11~H18, H21, H22	H2, H3, H5, H10, H19	BH1~BH6, BH8~BH11, BH14~BH16, BH24~28, BH31	BH17~BH23	H20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 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점포겸용주택 및 휴양형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는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2층 이하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지하층 포함)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가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도 동일층이 4호를 초과하여 연립할 수 있음

<별표2> 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변경)

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변경)

도면번호		블록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세대당평균면적(㎡)	비고
H1	기정	45,236.4	108	275	360	
	변경	45,236.4	108	272	360	
H4	기정	35,099.9	106	270	360	
	변경	35,099.9	106	267	360	
H6	기정	62,254.3	193	492	360	
	변경	62,254.3	193	486	360	
H7	기정	152,182.6	451	1,152	360	
	변경	152,182.6	451	1,137	360	
H8	기정	46,014.7	148	377	360	
	변경	46,014.7	148	373	360	
H9	기정	30,598.1	103	263	360	
	변경	30,598.1	103	260	360	
H11	기정	10,013.6	22	56	360	
	변경	10,013.6	22	55	360	
H12	기정	91,392.9	252	643	360	
	변경	91,392.9	252	635	360	
H13	기정	27,642.3	56	143	360	
	변경	27,642.3	56	141	360	
H14	기정	17,791.7	59	150	360	
	변경	17,791.7	59	149	360	
H15	기정	23,182.80	75	191	360	
	변경	23,182.80	75	189	360	
H16	기정	5,104.0	18	46	360	
	변경	5,104.0	18	45	360	
H17	기정	18,072.9	59	150	360	
	변경	18,072.9	59	149	360	
H18	기정	21,522.5	42	107	360	
	변경	21,522.5	42	106	360	
H21	기정	20,742.9	41	105	360	
	변경	20,742.9	41	103	360	
H22	기정	19,531.4	50	128	360	
	변경	19,531.4	50	126	360	
계	기정	626,383.0	1,783	4,548	-	
	변경	626,383.0	1,783	4,493	-	

2.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변경)

도면번호		블록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세대당평균면적(㎡)	비고
H2	기정	69,302.0	213	543	360	
	변경	69,302.0	213	537	360	
H3	기정	49,475.3	164	418	360	
	변경	49,475.3	164	413	360	
H5	기정	38,884.8	128	326	360	
	변경	38,884.8	128	323	360	
H10	기정	16,085.3	33	83	360	
	변경	16,085.3	33	83	360	
H19	기정	70,837.3	177	451	360	
	변경	70,837.3	177	446	360	
계	기정	244,584.7	715	1,821	-	
	변경	244,584.7	715	1,802	-	

3. 휴양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변경)

도면번호		블록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세대당평균면적(㎡)	비고
H20	기정	65,998.9	138	352	500	
	변경	65,998.9	138	348	500	

4. 블럭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변경)

도면번호		블록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평균면적(㎡)	비고
BH1	기정	27,239.0	41	105	500	
	변경	27,239.0	41	103	500	
BH2	기정	21,448.0	32	82	500	
	변경	21,448.0	32	81	500	
BH3	기정	21,548.0	33	84	500	
	변경	21,548.0	33	83	500	
BH4	기정	31,642.0	48	122	500	
	변경	31,642.0	48	121	500	
BH5	기정	10,226.0	15	38	500	
	변경	10,226.0	15	38	500	
BH6	기정	15,230.0	23	59	500	
	변경	15,230.0	23	58	500	
BH8	기정	21,168.0	32	82	500	
	변경	21,168.0	107	270	150	
BH9	기정	17,600.0	27	69	500	
	변경	17,600.0	89	224	150	
BH10	기정	16,653.0	25	64	500	
	변경	16,653.0	84	212	150	
BH11	기정	16,639.0	25	64	500	
	변경	16,639.0	84	212	150	
BH14	기정	30,810.0	47	120	500	
	변경	30,810.0	156	393	150	
BH15	기정	22,327.0	34	87	500	
	변경	22,327.0	113	285	150	
BH16	기정	16,278.0	25	64	500	
	변경	16,278.0	82	207	150	
BH17	기정	17,540.0	27	69	500	
	변경	17,540.0	89	224	150	
BH18	기정	17,844.0	27	69	500	
	변경	17,844.0	90	227	150	
BH19	기정	21,404.0	32	82	500	
	변경	21,404.0	108	272	150	
BH20	기정	15,056.0	23	59	500	
	변경	15,056.0	76	192	150	
BH21	기정	20,052.0	30	77	500	
	변경	20,052.0	101	255	150	
BH22	기정	24,386.0	37	94	500	
	변경	24,386.0	123	310	150	
BH23	기정	26,173.0	40	102	500	
	변경	26,173.0	132	333	150	
BH24	기정	10,984.0	17	43	500	
	변경	10,984.0	55	139	150	
BH25	기정	8,433.5	14	36	500	
	변경	8,433.5	14	35	500	
BH25-1	기정	708.4	-	-	-	
	변경	708.4	-	-	-	
BH26	기정	9,926.9	15	38	500	
	변경	9,926.9	15	38	500	
BH26-1	기정	50.1	-	-	-	
BH27	기정	9,545.5	14	36	500	
	변경	9,545.5	14	35	500	
BH27-1	기정	3.0	-	-	-	
BH28	기정	7,170.5	11	28	500	
	변경	7,170.5	11	28	500	
BH31	기정	19,294.3	29	74	500	
	변경	19,294.3	29	73	500	
계	기정	477,379.2	723	1,847	-	
	변경	477,379.2	1,764	4,448	-	

※ 블록 단위 수용세대수는 허용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계획세대수 20% 이내의 증감은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음~~(삭제조치)

※ BH25-1, BH26-1, BH27-1 블록은 공유수면 저촉에 의한 변경블록으로 별도의 허용세대수는 없으며, 종전 블록 BH25, BH26, BH27블록과 필지합병 권장.

② 공동주택용지 - A【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A1~A16, A18~A51, A53~A67	A1~A16, A18~A51, A53~A67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7에 해당하는 주민편의시설 기준에 의하며,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 내 상가, 분산상가 등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하도록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 버스베이(Bus Bay)의 설치, 자전거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경계선 변경시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공동주택용지 내 최고층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며, 최고층수가 지정되지 않은 블록의 경우 최고층수 산정은 고도지구 등에 의한 '최고높이제한'과 계획지반 조성고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함 - 산식 : 최고높이제한 - 계획지반 조성고 > 아파트 높이(옥탑부 포함)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높이제한'을 따름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서측 대부분의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해발 0~52m이하의 수평표면 또는 52~107m의 1/20경사원추표면 높이제한,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2-57호, 2012.06.11)을 적용받으므로, 당해 지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최고 높이는 구역별로 별도의 최고높이를 설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설정된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단, 고래알산 및 백운산 차폐 적용구간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완화되는 고도제한(52~257.7m)을 적용 · 영종도-수리산송신소 간 전파경로에 저촉되는 A48, A52, A53, A59 블록은 해발 112.06m ~ 113.90m의 최고높이제한을 별도로 따라야 함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 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 4,5,6〉에 규정된 규모(주택유형)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5,6〉에 의한 <u>정해진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u>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주택유형이 혼합된 경우에는 각 주택유형의 계획세대수 비율별로 조정할 수 있음) - 주택유형 85㎡초과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 - 주택유형 85㎡이하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3% 범위 내
		배치 및 건축선	· 최고층 배치구간 -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최고층 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연면적이 구간 내 주거동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 최고층 배치구간은 '최고층수에서 3개층 이하' 범위 내의 층수를 가진 아파트를 구간 내 배치되는 가구수 중 50%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 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A1~A16, A18~A51, A53~A67	A18~A51, A53~A67	배치 및 건축선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치된 가장 높은 층수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함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을 중심으로 다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의 주거동 또는 단변과 장변의 비가 1:1.5이하인 주거동 형태를 말함. 다만, '5호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코어도 가능함 - '혼합형 아파트'라 함은 하나의 연결된 주거동 내에 판상형 · 탑상형 등 아파트 형태중 2개를 조합하는 형태를 말하며 혼합형 아파트 1개 주거동은 6호조합 이내로 한정함 · 중층(15층~9층) 배치구간 - 중층(15층 ~ 9층)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중층(15층～9층) 배치구간에는 15층～9층 사이의 지정된 층수이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으로서 구간 내에서 도로측에 면하여 배치되는 최초 주동수가 4개동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지정된 층수를 가진 주동수 비율은 80%이하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 주동은 2개 층 이상 낮은 층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복도식아파트인 경우 도로측에 면한 최초 2호까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층수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코아의 측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중층(15층～9층) 배치구간에서 별도로 지정된 층수가 없는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저층(8층 이하) 배치구간 - 저층(8층 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저층(8층 이하) 배치구간에는 8층 이하의 지정된 층수 이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함 - 저층(8층 이하) 배치구간에서 별도로 지정된 층수가 없는 경우에는 8층 이하로 배치하여야 함 · 연도형 배치구간 (권장)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연도형 아파트"라 함은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또는 3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2.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주거동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접속되는 부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는 '필로티구조'를 설치하여야 함 4. 연도형 아파트의 배치 시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건축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동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A1~A16, A18~A51, A53~A67	A1~A16, A18~A51, A53~A67	배치 및 건축선	·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함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함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함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다고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통경구간(시각통로) - 경관계획상 주요 경관축 선상에서 바다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시각통로 확보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통경구간 내에는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긴의자 및 휴게시설의 설치 및 지하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한 캐노피 등은 예외로 함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 때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함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원, 기타 공공공지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1층 벽면지정선 - 도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1층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연도형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름 - 다만, 가·감속차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A1~A16, A18~A51, A53~A67	A1~A16, A18~A51, A53~A67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권장하되, 판상형·혼합형 등을 입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적정배치 - 10층 이하 : 100m 이하 - 11~15층 아파트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행복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예외로 하며, 시각적 폐쇄감 등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도형 아파트에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 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이 때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의 길이가 80m를 초과할 경우, 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등을 해소하고 단지 내 옥외공간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동일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 같은 층수의 길이가 50m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 : 해당 없음 2. 11층 이상 : 2개층 이상 ·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 : 해당 없음 2. 11층 이상 : 2개층 이상 · 주거동의 입면적 및 형태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단,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 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조합 이내, 탑상형은 4호 조합 이내, 혼합형은 6호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되, 고층공동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수 있음. 단, 행복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예외로 하며, 본 지침의 이행이 어렵다고 당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입면구성 및 층수의 변화 - 주거동은 최상층부, 중층부, 기단부의 3단계로 분할하며, 각 부분에 재료,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입면 변화를 이루어야 함. 이 때 최상층부는 재료, 색채, 입면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되어야 함(단, 저층 아파트는 제외) · 융통형 구조 - 향후의 생활여건 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 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도입을 권장함 - 기본 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 인접 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 지붕의 형태, 옥탑 등 - 지붕은 2방향 이상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단,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지붕의 형태가 경사가 아닌 부분은 옥상 면적의 8분의 1 이하여야 함(탑상형 제외).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지붕은 온전한 경사지붕이 되도록 함.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함. 단, 개성이 독특한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탑상형 및 여건상 부득이하여 경사지붕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탑상형 경관특화계획 포함)에는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허가)을 받아 경사지붕이 아닌 지붕을 설치할 수 있음 - 경사지붕 설치 시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 1:3~1:5 범위를 원칙으로 함 -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A1~A16, A18~A51, A53~A67	A1~A16, A18~A51, A53~A67	형태 및 외관	· 필로티 - 주거동의 전용면적이 60㎡이상이고, 호수가 6호이상인 경우는 4호마다 1개소씩 '필로티구조'를 설치하여야 함(단, 4호 이내의 주거동에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필로티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이어야 함) - 통경 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를 권장(탑상형 아파트 제외) · 담장, 계단 등 - 주택단지 및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함(연도형 배치구간에는 담장설치를 불허함) - 학교 및 공원에 면한 담장은 화목류 생울타리로 하되 높이는 1m 이하로 함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함 - 방음벽 설치 시,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료와 형태를 결정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A16, A19, A21 블록은 대로 3-515에 면한 경계부에 2.5m 이상, A22, A23, A24, A251 블록은 대로 3-516에 면한 경계부에 2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 단, 방음벽이 생활가로에 면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높이 1.2m 이하구간은 자연재료의 사용 및 벽면녹화를 권장하며, 1.2m 초과구간은 투시 가능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함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해야 함
A1~A16, A18~A51, A53~A67	A1~A16, A18~A51, A53~A67	색채 및 야간경관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경관계획 (경관특화계획) 의 운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외관 및 색채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특화계획)을 따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범위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4조)을 따른다**

<별표3>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없음)

<별표4> 저층 공동주택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최고 층수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262,430.2	-	-	-	-	1,212	3,092	-	-
	변경	262,430.2	-	-	-	-	1,212	3,873		
A21	기정	56,078.9	50%	80%	85㎡초과 60~85㎡	200㎡ 110㎡	287	732	5층	
	변경	56,078.9	50%	80%	85㎡초과	150	298	751	5층	
A22	기정	56,945.0	50%	80%	85㎡초과 60~85㎡	200㎡ 110㎡	287	732	5층	
	변경	56,945.0	50%	80%	85㎡초과	150	302	761	5층	
A48	기정	57,345.0	50%	80%	85㎡초과	400㎡	116	296	4층	
	변경	57,345.0	50%	80%	85㎡초과	150	298	751	4층	
A53	기정	21,095.6	50%	100%	60~85㎡	100㎡	211	538	5층	
	변경	21,095.6	50%	100%	60～85㎡	112	187	471	5층	
A54	기정	49,870.3	50%	80%	85㎡초과	400㎡	100	255	4층	
	변경	49,870.3	50%	80%	85㎡초과	150	265	668	4층	
A64	기정	21,095.4	50%	100%	60~85㎡	100㎡	211	539	5층	
	변경	21,095.4	50%	100%	60～85㎡	112	187	471	5층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별표5> 중층 공동주택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평균 층수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709,614.6	-	-	-	-	9,976	25,439	-	
	변경	708,414.6	-	-	-	-	10,003	25,205		
A10	기정	43,962.0	50%	150%	60～85㎡	110	604	1,540	18층	
	변경	43,962.0	50%	150%	60～85㎡	110	604	1,522	18층	
A11	기정	17,656.8	50%	150%	85㎡초과	159	167	426	18층	
	변경	17,656.8	50%	150%	60～85㎡	112	236	595	18층	
A13	기정	60,493.3	50%	150%	60～85㎡	110	832	2,122	18층	
	변경	60,493.3	50%	150%	60～85㎡	112	808	2,036	18층	외국인임대
A14	기정	23,290.2	50%	150%	60～85㎡	110	320	816	18층	
	변경	23,290.2	50%	150%	60～85㎡	112	311	784	18층	
A23	기정	41,017.5	50%	150%	60～85㎡	110	564	1,438	18층	
	변경	41,017.5	50%	150%	60～85㎡	112	547	1,378	18층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평균 층수	비고
					전용	분양				
A24	기정	46,628.9	50%	150%	60～85㎡	110	641	1,635	18층	
	변경	46,628.9	50%	150%	60～85㎡	110	641	1,615	18층	
A29	기정	41,481.1	50%	150%	60㎡이하	80	784	1,999	15층	국민임대
	변경	41,481.1	50%	150%	60㎡이하	80	784	1,976	15층	국민임대
A31	기정	30,710.1	50%	150%	60～85㎡	110	422	1,076	18층	
	변경	30,710.1	50%	150%	60～85㎡	110	422	1,063	18층	
A33	기정	33,467.0	50%	150%	85㎡초과 60~85㎡	145 110	400	1,020	15층	
	변경	33,467.0	50%	150%	60～85㎡	112	447	1,126	15층	
A35	기정	54,205.6	50%	150%	60～85㎡	110	752	1,918	18층	
	변경	54,205.6	50%	150%	60～85㎡	110	752	1,985	18층	
A37	기정	37,696.8	50%	150%	60～85㎡	110	514	1,311	18층	
	변경	37,696.8	50%	150%	60～85㎡	110	514	1,295	18층	
A40	기정	63,272.6	50%	150%	60～85㎡	110	870	2,219	18층	
	변경	63,272.6	50%	150%	60～85㎡	110	870	2,192	18층	
A41	기정	32,987.5	50%	150%	60～85㎡	110	453	1,155	18층	
	변경	32,987.5	50%	150%	60～85㎡	112	440	1,109	18층	
A51	기정	28,040.0	50%	120%	60～85㎡	110	308	785	18층	
	변경	26,840.0	50%	120%	60～85㎡	107	299	753	18층	
A57	기정	20,389.5	50%	150%	60～85㎡	110	280	714	18층	
	변경	20,389.5	50%	150%	60～85㎡	112	272	685	18층	
A58	기정	31,106.0	50%	150%	60～85㎡	93	504	1,285	18층	
	변경	31,106.0	50%	150%	60～85㎡	93	504	1,270	18층	
A62	기정	58,335.6	50%	150%	60～85㎡	110	802	2,045	18층	
	변경	58,335.6	50%	150%	60～85㎡	110	802	2,021	18층	
A63	기정	21,986.1	50%	150%	60～85㎡	110	302	770	18층	
	변경	21,986.1	50%	150%	60～85㎡	112	293	747	18층	
A67	기정	22,888.0	50%	120%	60㎡이하	60	457	1,165	18층	국민임대
	변경	22,888.0	50%	120%	60㎡이하	60	457	1,152	18층	국민임대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별표6> 고층 공동주택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 인구	최고 층수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1,787,316.7	-				33,991	85,313	-	
	변경	1,786,866.1					33,887	84,070	-	
A1	기정	24,048.0	50%	190%	60～85㎡	110	422	1,076	20층	
	변경	24,048.0	50%	190%	60～85㎡	110	422	1,063	20층	
A2	기정	23,581.0	50%	190%	60㎡이하	45	990	1,584	20층	행복주택
A3	기정	25,774.3	50%	190%	60㎡이하	80	617	1,573	20층	공공임대
	변경	25,774.3	50%	190%	60～85㎡	112	435	1,096	20층	공공임대
A4	기정	19,528.1	50%	190%	60～85㎡	110	340	867	20층	
	변경	19,528.1	50%	190%	60～85㎡	110	340	857	20층	
A5	기정	31,660.0	50%	190%	60㎡이하	80	770	1,964	20층	국민임대
	변경	31,660.0	50%	190%	60㎡이하	80	770	1,940	20층	국민임대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최고층수	비고
					전용	분양				
A6	기정	21,575.9	50%	190%	60～85㎡	110	376	959	20층	
	변경	21,575.9	50%	190%	60～85㎡	110	376	948	20층	
A7	기정	53,393.3	50%	190%	60～85㎡	111	909	2,318	20층	
	변경	53,393.3	50%	190%	60～85㎡	111	909	2,291	20층	
A8	기정	66,765.3	50%	190%	85㎡초과 60~85㎡	126 110	1,153	2,940	20층	
	변경	66,765.3	50%	190%	85㎡초과 60~85㎡	126 110	1,153	2,906	20층	
A9	기정	44,568.1	50%	190%	85㎡초과 60~85㎡	126 100	847	2,160	25층	
	변경	44,568.1	50%	190%	60~85㎡	100	847	2,134	25층	
A12	기정	75,681.9	50%	200%	60~85㎡	105	1,445	3,685	25층	
	변경	75,681.9	50%	200%	60~85㎡	105	1,445	3,641	25층	
A15	기정	35,104.0	50%	180%	85㎡초과 60～85㎡ 60㎡이하	138 93 78	569	1,451	21층	환지
	변경	35,104.0	50%	180%	85㎡초과 60～85㎡ 60㎡이하	138 93 78	569	1,434	21층	환지
A16	기정	90,808.0	50%	180%	85㎡초과 60~85㎡	126 110	1,185	3,022	21층	
	변경	90,808.0	50%	180%	60～85㎡	112	1,457	3,672	21층	
A18	기정	32,047.9	50%	160%	60㎡이하	80	612	1,561	20층	외국인분양
	변경	32,047.9	50%	160%	85㎡초과 60~85㎡	150 112	438	1,104	20층	외국인분양
A19	기정	27,771.1	50%	180%	60～85㎡	110	444	1,132	23층	외국인분양
	변경	27,771.1	50%	180%	60～85㎡	112	444	1,119	23층	외국인분양
A20	기정	37,772.7	50%	160%	85㎡초과	140	412	1,051	20층	외국인분양
	변경	37,772.7	50%	160%	85㎡초과 60~85㎡	150 112	516	1,300	20층	외국인분양
A25	기정	72,300.5	50%	190%	60～85㎡	110	1,260	3,213	25층	
	변경	72,300.5	50%	190%	60～85㎡	112	1,224	3,084	25층	
A26	기정	42,347.0	50%	190%	60~85㎡ 60㎡이하	110 80	731	1,864	25층	
	변경	42,347.0	50%	190%	85㎡초과 60~85㎡	150 112	687	1,731	25층	
A27	기정	90,174.2	50%	178%	60～85㎡	100	1,604	4,091	25층	
	변경	90,174.2	50%	178%	60～85㎡	100	1,604	4,042	25층	
A28	기정	89,548.0	50%	200%	85㎡초과 60~85㎡	145 110	1,426	3,636	-	
	변경	89,548.0	50%	200%	85㎡초과 60~85㎡	145 110	1,426	3,594	-	
A30	기정	66,614.0	50%	217%	60～85㎡	110	1,327	3,384	-	
	변경	66,614.0	50%	217%	60～85㎡	110	1,327	3,344	-	
A32	기정	36,106.2	50%	223%	60㎡이하	80	1,018	2,596	-	
	변경	36,106.2	50%	223%	60㎡이하	80	1,018	2,565	-	
A34	기정	29,506.0	50%	220%	60～85㎡	110	596	1,520	-	
	변경	29,506.0	50%	220%	60～85㎡	110	596	1,502	-	
A36	기정	53,175.3	50%	200%	60㎡이하	80	1,343	3,425	-	
	변경	53,175.3	50%	200%	60㎡이하	80	1,343	3,384	-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최고층수	비고
					전용	분양				
A38	기정	68,540.2	50%	200%	60㎡이하	80	1,731	4,414	-	
	변경	68,540.2	50%	200%	60㎡이하	80	1,731	4,362	-	
A39	기정	54,141.0	50%	240%	85㎡초과	126	1,034	2,637	-	
	변경	53,690.4	50%	240%	85㎡초과	126	1,034	2,606	-	
A42	기정	50,701.2	50%	200%	60~85㎡	110	930	2,372	-	
	변경	50,701.2	50%	200%	60~85㎡	110	930	2,344	-	
A43	기정	31,218.3	50%	230%	60~85㎡	110	658	1,678	-	
	변경	31,218.3	50%	230%	60~85㎡	110	658	1,658	-	
A44	기정	74,389.7	50%	250%	85㎡초과	140	1,341	3,420	-	
	변경	74,389.7	50%	250%	85㎡초과	140	1,341	3,379	-	
A45	기정	72,518.5	50%	250%	60~85㎡	110	1,663	4,241	-	
	변경	72,518.5	50%	250%	60~85㎡	110	1,663	4,191	-	
A46	기정	84,025.3	50%	200%	60~85㎡	110	1,540	3,927	-	
	변경	84,025.3	50%	200%	60~85㎡	110	1,540	3,881	-	
A47	기정	32,335.9	50%	181%	60~85㎡	110	537	1,369	25층	
	변경	32,335.9	50%	181%	60~85㎡	110	537	1,353	25층	
A49	기정	13,469.6	50%	182%	60㎡이하	47	450	720	25층	행복주택
A50	기정	18,489.3	50%	182%	60~85㎡	100	339	864	-	
	변경	18,489.3	50%	182%	60~85㎡	112	299	753	-	
A56	기정	35,921.1	50%	180%	85㎡초과 60~85㎡	174 93	583	1,487	21층	환지
	변경	35,921.1	50%	180%	85㎡초과 60~85㎡	174 93	583	1,469	21층	환지
A59	기정	25,406.4	50%	182%	60㎡이하	80	580	1,479	-	
	변경	25,406.4	50%	182%	60㎡이하	80	580	1,462	-	
A60	기정	41,624.9	50%	182%	60~85㎡	110	694	1,770	25층	
	변경	41,624.9	50%	182%	60~85㎡	112	675	1,701	25층	
A61	기정	34,540.6	50%	190%	60~85㎡	110	602	1,535	25층	외국인임대
	변경	34,540.6	50%	190%	85㎡초과 60~85㎡	150 112	560	1,411	25층	
A65	기정	25,033.4	50%	180%	60~85㎡	110	344	877	21층	
	변경	25,033.4	50%	180%	60~85㎡	112	401	1,011	21층	
A66	기정	35,110.5	50%	180%	85㎡초과 60~85㎡	131 93	569	1,451	21층	환지
	변경	35,110.5	50%	180%	85㎡초과 60~85㎡	131 93	569	1,434	21층	환지

주) 평균규모별 세대수 구분이 없는 혼합 블록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 가능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 N【변경 없음】

④ 산업(물류)시설용지 - I【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I1 ~ I2	I1 ~ I2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산업(물류)시설용지에는 인천국제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서측에는 수평표면 제한에 따라 52m 이하, 동측에는 원추표면 제한에 따른 52m~107m까지의 고도제한이 적용됨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서측 대부분의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해발 0~52m이하의 수평표면 또는 52~107m의 1/20경사원추표면 높이제한,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2-57호, 2012.06.11)을 적용받으므로, 당해 지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최고 높이는 구역별로 별도의 최고높이를 설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항시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설정된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단, 고래알산 및 백운산 차폐 적용구간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완화되는 고도제한(52~257.7m)을 적용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대로(25m도로)이상 도로변에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함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삭제)~~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변 · 산업시설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내부 선형 변경이 가능함 · 산업시설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수목, 초화류 등의 식재를 조성하여 주변 자연환경과의 녹지체계를 연계토록 유도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별표35>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형태 및 색채	· 창고 및 공장의 외벽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혼합 또는 색채 변화 및 개성있는 외관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제한함 (단, 보안, 손상 및 테러 등 사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담장의 높이를 1.2m이상 설치가능)
		경관계획(경관특화계획)의 운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외관 및 색채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특화계획)을 따름

〈별표8〉 산업(물류)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없음)

⑤ 상업용지 - CC, GC【변경 없음】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변경 없음】

⑦ 업무시설용지 - B【변경 없음】

⑧ 주상복합용지 - RC【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RC2 ~ RC4	RC2 ~ RC4	용 도	기정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때에는 가로활성화, 주거 및 상업기능 간 완충역할이라는 주상복합용지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에 의한 허용용도(비주거용도 포함)를 건축할 수 있고,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거용도(준주택 포함)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80%미만으로 함 ·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함 · 건축물 용도표시는 권장용도에 따라 RC-C, RC-I로 구분하며,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함 ·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도(공동주택)와 비주거용도를 수직적으로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상은 2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함(부설주차장 제외). 단, 허용세대수 및 용적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 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다만,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기정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15>에 규정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유형을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음. 단, 혼합되는 주택유형은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균규모의 구분 없이 계획이 가능하며, 총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RC2 ~ RC4	RC2 ~ RC4	배치 및 건축선	·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함. 단,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RC3, RC4 용지 내에서는 획지선을 중심으로 폭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되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건축물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경우, 유효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함
		형태 및 외관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탑상형'에 대한 정의는 본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되,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코어도 가능함 · 주거동은 최상층부, 중층부, 기단부의 3단계로 분할하며, 각 부분에 재료,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함. 이 때 최상층부는 재료, 색채, 입면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되어야 함 ·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함 · 주거동의 지붕형태는 주거동의 형태와 조화롭게 함. 단, 옥상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 비율을 1 : 2.5 범위 내로 함 · 주거동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 1층 상업시설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되, 간선가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굴뚝, 환기설비, 급수설비 등의 건축설비 및 구조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여야 함
		경관계획 (경관특화계획) 의 운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외관 및 색채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특화계획)을 따름

〈별표 15〉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변경)

<table>
<tr><td colspan="4" rowspan="2">구 분</td><td colspan="2">주상복합용지</td></tr>
<tr><td>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td><td>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td></tr>
<tr><td colspan="4">도면표시</td><td>RC-C</td><td>RC-I</td></tr>
<tr><td rowspan="4">건축물용도</td><td rowspan="3">허용용도</td><td colspan="2">2층 이하</td><td colspan="2">·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부설주차장 제외)</td></tr>
<tr><td>3층 (2층) 이상</td><td>기정</td><td colspan="2">[주용도]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건축물 연면적의 80%미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제외)</td></tr>
<tr><td colspan="2">권장용도 (2층)</td><td>변경</td><td>· 권장용도(2층) 해당사항 없음</td><td>· 권장용도(2층)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3">불허용도</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해당 가구</td><td>기정</td><td colspan="2">RC2~RC4</td></tr>
</table>

주1)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에서는 전층에 대하여 〈표 4-37〉 상의 허용용도(비주거용도 포함)를 허용함. 즉, 3층 이상에서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용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주2) 허용세대수 및 용적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 2층 이상에 주용도(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를 설치할 수 있음

주3) 부대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경비실 등 지상층(1층)에 설치하는 것이 거주자의 생활복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지상층(1층)에 설치할 수 있음

~~주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사무용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삭제)~~

<별표16> 주상복합용지의 주택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변경)

도면 번호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비고
RC2	기정	60~85㎡	20,365.8	450	1,147	112㎡	60%	310%(주거:247%)	-	
	변경	60~85㎡	20,365.8	450	1,134	112㎡	60%	310%(주거:247%)	-	
RC3	기정	60~85㎡	65,081.8	1,434	3,657	112㎡	60%	310%(주거:247%)		
	변경	85㎡초과 60~85㎡	65,081.8	1,296	3,266	150㎡ 112㎡	60%	310%(주거:247%)		
-1	기정	60~85㎡	32,471.7	715	1,824	112㎡	60%	310%(주거:247%)	-	
	변경	85㎡초과 60~85㎡	32,471.7	647	1,630	150㎡ 112㎡	60%	310%(주거:247%)		
-2	기정	60~85㎡	32,610.1	719	1,833	112㎡	60%	310%(주거:247%)	-	
	변경	85㎡초과 60~85㎡	32,610.1	649	1,636	150㎡ 112㎡	60%	310%(주거:247%)		
RC4	기정	60~85㎡	51,286.2	1,131	2,885	112㎡	60%	310%(주거:247%)		
	변경	85㎡초과 60~85㎡	51,286.2	1,021	2,573	150㎡ 112㎡	60%	310%(주거:247%)		
-1	기정	60~85㎡	29,283.1	646	1,647	112㎡	60%	310%(주거:247%)	-	
	변경	85㎡초과 60~85㎡	29,283.1	583	1,469	150㎡ 112㎡	60%	310%(주거:247%)		
-2	기정	60~85㎡	22,003.1	485	1,238	112㎡	60%	310%(주거:247%)	-	
	변경	85㎡초과 60~85㎡	22,003.1	438	1,104	150㎡ 112㎡	60%	310%(주거:247%)		
계	기정	-	136,733.8	3,015	7,689	-	-	-	-	
	변경		136,733.8	2,767	6,973			-		

주) 최고층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나,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⑨ 공공청사용지 - PB【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PB1~PB3 PB5~PB12 PB14~PB16	PB1~PB3 PB5~PB12 PB14~PB16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공공청사(PB1, PB2, PB3)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함 · 공공청사용지 중 PB4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함 · 공공청사용지 중 PB7, PB8은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함 · 공공청사용지 중 PB9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함. 이 때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는 곳에는 공공조경을 아니할 수 있음 · 근린공공청사용지는 인접한 획지의 배치를 따르도록 하되, 공공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통경구간의 설정 - 통경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다만,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위치의 변화없이 10m 범위 내에서 폭을 변경할 수 있음 - 통경구간 내에는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긴의자 및 휴게시설의 설치 및 지하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한 캐노피 등은 예외로 함 - 통경구간 내에는 지정된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 때 공공보행통로는 가능한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함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제4장의 제6절(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름
		경관계획(경관특화계획)의 운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외관 및 색채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특화계획)을 따름

〈별표 17〉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변경)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8">공공청사용지</td></tr>
<tr><td colspan="2" rowspan="2">도면표시</td><td colspan="2" rowspan="2">PB-D
(공공청사)</td><td rowspan="2">PB-R
(공공청사용지)</td><td colspan="5">NPB (근린공공청사용지)</td></tr>
<tr><td>NPB-C</td><td>NPB-RC</td><td>NPB-R1</td><td>NPB-R2</td><td>NPB-R3</td></tr>
<tr><td rowspan="3">건축물용도</td><td>주용도</td><td colspan="2">· 지정용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따름</td><td colspan="6">※ 주용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 경찰관파출소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td></tr>
<tr><td>허용용도</td><td colspan="2">[지정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름</td><td>·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td><td>·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td><td colspan="2">·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노유자시설</td><td>·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td></tr>
<tr><td>불허용도</td><td colspan="8">· 허용/권장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2">60%이하</td><td>60%이하</td><td>60%이하</td><td>60%이하</td><td>50%이하</td><td>60%이하</td><td>60%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200%
이하</td><td>250%
이하</td><td>500%이하</td><td>600%이하</td><td>500%이하</td><td>250%이하</td><td>200%이하</td><td>150%이하</td></tr>
<tr><td colspan="2">최고층수</td><td>4층
이하</td><td>5층
이하</td><td>10층 이하</td><td>10층 이하</td><td>10층
이하</td><td>5층이하</td><td>4층 이하</td><td>3층 이하</td></tr>
<tr><td colspan="2">최저층수</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해당 가구</td><td>PB1,
PB2,
PB3</td><td>PB15</td><td>PB7, PB8, PB9</td><td>PB6</td><td>PB5, PB10</td><td>PB12</td><td>PB11, PB14</td><td>PB16</td></tr>
</table>

⑩ 특화거리조성용지 - S【변경 없음】

⑪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자동자관련시설(주차장)(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주1~주49	기정	주1~주49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주차장용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등에 계획되었으며, 이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의 완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차전용건축물 외에 부속용도는 불허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설치 및 설치위치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변경	주1~주51	변경	주1~주51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별표20〉 자동차관련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

구 분		자동차관련시설용지								
도면표시	기정	-	주-CC		주-GC		주-RC	주-GR	주-GR2	주-OR2
	변경	주-SI	주-CC		주-GC		주-RC	주-GR	주-GR2	주-OR2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외) ·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부속용도 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80%	80%	60%	60%	60%	60%	60%	50%
용적률	기정	400%	600%	1,000%	600%	400%	500%	200%	180%	100%
최고층수		-	-	-	10층	-	10층	4층	3층	2층
해당가구	기정	-	주32~주35	주36~주39	주6,주8~14,주22~25,주27	주42	주26	주2~5,주7,주16,주18,주19,주30,주31,주40,주41,주43,주44	주45,주46,주47,주48,주49	주1,주15,주17,주20,주21,주28,주29
	변경	주50	주32~주35	주36~주39	주6,주8~14,주22~25,주27,주51	주42	주26	주2~5,주7,주16,주18,주19,주30,주31,주40,주41,주43,주44	주45,주46,주47,주48,주49	주1,주15,주17,주20,주21,주28,주29

2. 문화시설(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4. 체육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체1	체1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결정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 3m 건축한계선 지정 : 20m 이상 도로변 체육시설용지.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함
		형태 및 외관	-

〈별표 23〉 체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

구 분			체육시설용지
도면표시			체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기정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탁구장, 체육도장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운동시설 [부수용도] - 주용도를 제외한 제1 ·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주용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층수			10층 이하
해당가구			체1

5. 교육시설(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유1 ~ 유6	유1 ~ 유6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은 주거환경을 위해 복합용도를 불허함 · 유치원을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 및 학원에 한하며,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이때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 유치원을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유치원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함. 또한, 유치원 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실 등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함
		형태 및 외관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함. 단,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초1 ~ 초7	초1 ~ 초7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함
		형태 및 외관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함. 단,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중1 ~ 중4	중1 ~ 중4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함
		형태 및 외관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함. 단,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고1 ~ 고6	고1 ~ 고6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함
		형태 및 외관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함. 단,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외1	외1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함
		형태 및 외관	· 외국인학교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담장 및 출입구의 형태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음

〈별표 24〉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6. 복합환승센터(복합터미널)(변경없음)
7. 여객차동차차고지(변경없음)
8. 종교시설(변경없음)
9.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변경없음)
11. 시장(변경없음)
12. 창고시설용지(변경없음)
13.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⑫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①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②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③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④ 산업(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⑤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C1~C12 B1~B13	C1~C12 B1~B13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35>의 기준을 따르며, 1층벽면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봄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35>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공조경	· 공공조경은 <별표35>의 기준을 따름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함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상업·공공업무시설용지 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음
			대지 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대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단, 승인권자(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포함)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C1~C12 B1 ~ B13	C1~C12 B1 ~ B13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C3~C4, C6, C9~C10 용지 내 주차장은 자주식을 원칙으로 함. 자주식 주차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함.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국제업무단지에 해당하는 B6~B9, C9, C10 용지 내 주차장은 그 전부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전체 주차대수의 5%범위 내에서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상부차장을 보조로 설치할 수 있음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됨.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함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유비쿼터스 관련사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지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변경없음】

⑦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⑧ 특화거리조성용지 - S【변경없음】

⑨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공통	공통	공공조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2m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대지 안의 조경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대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하며,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부설 주차장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에서는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함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3.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4. 상기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유비쿼터스 관련사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유1~유6, 초1~초7, 중1~중4, 고1~고6	유1~유6, 초1~초7, 중1~중4, 고1~고6	차량출입 및 주차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함
			대지 안의 조경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하도록 함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함
			보행자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유비쿼터스 관련사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 35>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변경)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 나.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3.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와 경관상세계획에서 별도의 포장계획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30㎡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나.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라.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긴의자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함 마.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함

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함. 이 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 · ‘공공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2.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설이라 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3. 식재는 교목은 1㎡당 0.3본, 관목은 1㎡당 0.5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다만, 앉음벽, 벤치 등 휴게시설은 보행에 필요한 최소 유효폭을 확보한 경우 그 이외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함.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통경구간	· 공동주택용지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 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

구역번호	토지이용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특 1	전시 및 산업시설용지 유보지, 상업용지	3,622,565.0	3,622,565.0	Rv1 ~ Rv5, C4 등
특 2	일반상업용지 유보지 1	140,246.0	136,362.0	Rv6
특 3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	135,335.0	135,335.0	CB1
특 4	관광 · 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187,551.0	187,551.0	T1
특 5	일반상업용지 유보지 2	65,160.0	65,160.0	Rv7
특 6	일반상업용지 유보지 3	75,214.0	79,098.0	Rv8
계	-	4,226,071.0	4,226,071.0	-

2)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붙임 3>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 운북IC 실시계획(변경)

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운북IC 공사시행(변경)허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공원조성계획 변경

○ 제1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63-1공, 1960-6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송산공원 (제15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63-1공, 1960-6공	48,505.20	48,505.2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8,505.20	48,505.20	18,861.24	18,968.69	1	2	48.00	96.00	48.00	96.00	156	156	시설면적 증)107.45㎡ 건축물 2동 증) 1동
도로 및 광장	소계	15,992.33	16,051.78	15,992.33	16,051.78	-	-	-	-	-	-	-	-	시설면적 증) 59.45㎡
	도로	7,878.35	7,924.80	7,878.35	7,924.80	-	-	-	-	-	-	-	-	시설면적 증) 46.45㎡
	광장	8,113.98	8,126.98	8,113.98	8,126.98	-	-	-	-	-	-	-	-	시설면적 증) 13.00㎡
조경시설		2,820.91	2,820.91	2,820.91	2,820.91	-	-	-	-	-	-	29	29	-
휴양시설		-	-	-	-	-	-	-	-	-	-	106	106	-
관리시설		48.00	96.00	48.00	96.00	1	2	48.00	96.00	48.00	96.00	21	21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2동 증) 1동
녹지및기타		29,643.96	29,536.51	-	-	-	-	-	-	-	-	-	-	녹지면적 감) 107.45㎡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중산동	48,505.20	48,505.20	18,861.24	18,968.69	지상 1층	96.00	96.00	156	156	시설면적 증) 107.45㎡ 건축물 2동 증) 1동
도로 및 광장	소 계			15,992.33	16,051.78	15,992.33	16,051.78	-	-	-	-	-	시설면적 증) 59.45㎡
	도로	-	중구 중산동	7,878.35	7,924.80	7,878.35	7,924.80	-	-	-	-	-	시설면적 증) 46.45㎡
	광장	-	〃	8,113.98	8,113.98	8,113.98	8,126.98	-	-	-	-	-	시설면적 증) 13.00㎡
	광장1	-	〃	267.22	267.22	267.22	267.22	-	-	-	-	-	-
	광장2	-	〃	1,064.84	1,064.84	1,064.84	1,064.84	-	-	-	-	-	-
	광장3	-	〃	146.84	146.84	146.84	146.84	-	-	-	-	-	-
	광장4	-	〃	266.99	266.99	266.99	266.99	-	-	-	-	-	-
	광장5	-	〃	45.93	45.93	45.93	45.93	-	-	-	-	-	-
	광장6	-	〃	481.28	481.28	481.28	481.28	-	-	-	-	-	-
	광장7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8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9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10	-	〃	218.95	218.95	218.95	218.95	-	-	-	-	-	-
	광장11	-	〃	311.73	311.73	311.73	311.73	-	-	-	-	-	-
	광장12	-	〃	333.56	333.56	333.56	333.56	-	-	-	-	-	-
	광장13	-	〃	44.04	44.04	44.04	44.04	-	-	-	-	-	-
	광장14	-	〃	41.89	41.89	41.89	41.89	-	-	-	-	-	-
	광장15	-	〃	929.95	929.95	929.95	929.95	-	-	-	-	-	-
	광장16	-	〃	812.84	812.84	812.84	812.84	-	-	-	-	-	-
	광장17	-	〃	571.18	571.18	571.18	571.18	-	-	-	-	-	-
	광장18	-	〃	196.41	196.41	196.41	196.41	-	-	-	-	-	-
	광장19	-	〃	323.12	323.12	323.12	323.12	-	-	-	-	-	-
	광장20	-	〃	681.82	694.82	681.82	694.82	-	-	-	-	-	시설면적 증) 13.00㎡
	광장21	-	〃	892.55	892.55	892.55	892.55	-	-	-	-	-	-
	광장22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23	-	〃	71.47	71.47	71.47	71.47	-	-	-	-	-	-
	광장24	-	〃	54.02	54.02	54.02	54.02	-	-	-	-	-	-
	광장25	-	〃	71.47	71.47	71.47	71.47	-	-	-	-	-	-
조경 시설	소 계			2,820.91	2,820.91	2,820.91	2,820.91	-	-	-	29	29	-
	실개천	A	중구 중산동	2,645.71	2,645.71	2,645.71	2,645.71	-	-	-	-	-	-
	스탠드C	B	〃	175.20	175.20	175.20	175.20	-	-	-	1	1	-
	장식가벽A	C	〃	-	-	-	-	-	-	-	1	1	-
	장식가벽B	D	〃	-	-	-	-	-	-	-	1	1	-
	장식가벽C	E	〃	-	-	-	-	-	-	-	1	1	-
	전통열주	-	〃	-	-	-	-	-	-	-	23	23	-
	사 계	-	〃	-	-	-	-	-	-	-	2	2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휴양시설	소 계			-	-	-	-	-	-	-	106	106	-
	한글조형파고라A	G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한글조형파고라B	H	〃	-	-	-	-	-	-	-	1	1	-
	연결형파고라A	I	〃	-	-	-	-	-	-	-	2	2	-
	전통형파고라	J	〃	-	-	-	-	-	-	-	3	3	-
휴양시설	운동시설	J	〃	-	-	-	-	-	-	-	10	10	-
	평의자B	L	〃	-	-	-	-	-	-	-	40	40	-
	등의자B	M	〃	-	-	-	-	-	-	-	46	46	-
	탁구대	N	〃	-	-	-	-	-	-	-	3	3	-
관리시설	소 계			48.00	96.00	48.00	96.00	지상 1층 (2동)	96.00	96.00	21	21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2동 증) 1동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S	중구 중산동	48.00	96.00	48.00	96.00	지상 1층 (2동)	96.00	96.00	-	-	시설면적 증) 48.00㎡ 건축물 2동 증) 1동
	공원명칭안내판	T	〃	-	-	-	-	-	-	-	1	1	-
	수목보호틀	O	〃	-	-	-	-	-	-	-	18	18	-
	목교A	P	〃	-	-	-	-	-	-	-	1	1	-
	목교B	Q	〃	-	-	-	-	-	-	-	1	1	-
녹지및 기타	소 계			29,643.96	29,536.51	-	-	-	-	-	-	-	녹지면적 감) 107.45㎡
	녹지	-	전지역	29,643.96	29,536.51	-	-	-	-	-	-	-	녹지면적 감) 107.45㎡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 계		-	-	3,310.44	7,878.35	-	-	-	증) 46.45㎡
변경					3,310.44	7,924.80	-	-	-	
기정	소로	3	진1	5.0	79.6	397.64	진입로	광장3	광장1	
기정	소로	3	진2	2.0	18.87	38.39	진입로	서측경계	실개천	
기정	소로	3	진3	3.0	23.5	70.81	진입로	서측경계	실개천	
기정	소로	3	진4	4.5	97.5	438.76	진입로	광장13	자1	
기정	소로	3	진5	1.2	38.48	46.17	진입로	북동측경계	자1	
기정	소로	3	진6	4.0	23.46	93.85	진입로	서측경계	실개천	
기정	소로	3	진7	4.0	110.2	440.76	진입로	동측경계	스탠드	
기정	소로	3	진8	8.0	63.79	511.61	진입로	광장21	자2	
기정	소로	3	진9	2.0	14.4	28.64	산책로	동측경계	자1	
기정	소로	3	진10	1.2	46.95	93.89	산책로	동측경계	자2	
기정	소로	3	연1	3.0	46.27	138.80	연결로	광장3	광장10	
기정	소로	3	연2	3.0	13.7	41.13	연결로	광장10	진2	
기정	소로	3	연3	1.5	7.24	10.86	연결로	산9	광장8	
기정	소로	3	연4	2.0	42.3	84.59	연결로	광장12	진4	
기정	소로	3	연5	1.5	14.41	21.61	연결로	산9	광장9	
기정	소로	3	연6	1.2	31.84	38.21	연결로	진4	자1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연7	1.5	10.25	15.37	연결로	산11	광장18	
기정	소로	3	연8	1.5	4.93	7.40	연결로	자1	광장7	
기정	소로	3	연9	1.5	9.6	14.31	연결로	자2	광장22	
기정	소로	3	연10	1.5	9.06	13.59	연결로	광장21	광장23	
기정	소로	3	연11	1.5	7.76	11.64	연결로	자2	광장25	
기정	소로	3	연12	1.2	45.39	54.47	연결로	광장6	자1	
변경	소로	3	연12	1.2	45.39	100.92	연결로	광장6	자1	증) 46.45㎡
기정	소로	3	산1	1.2	173.4	208.13	산책로	광장1	광장10	
기정	소로	3	산2	1.2	59.7	71.67	산책로	산3	광장10	
기정	소로	3	산3	2.0	50.5	100.99	산책로	광장10	자1	
기정	소로	3	산4	1.2	49.3	59.13	산책로	진9	광장4	
기정	소로	3	산5	2.0	33.4	66.76	산책로	자1	광장4	
기정	소로	3	산6	1.2	99.9	119.82	산책로	광장4	광장6	
기정	소로	3	산7	2.0	101.4	202.72	산책로	광장4	광장6	
기정	소로	3	산8	1.2	58.56	175.67	산책로	산9	자1	
기정	소로	3	산9	1.2	137.3	411.85	산책로	광장10	연4	
기정	소로	3	산10	1.2	165.6	198.70	산책로	광장12	진4	
기정	소로	3	산11	3.0	189.0	567.00	산책로	광장16	광장21	
기정	소로	3	산12	1.5	43.7	65.51	산책로	광장18	자2	
기정	소로	3	산13	1.2	67.3	80.80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6	
기정	소로	3	산14	1.2	26.1	31.35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6	
기정	소로	3	산15	1.2	26.2	31.47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6,진6	
기정	소로	3	산16	3.0	51.3	153.87	산책로	산11	자2	
기정	소로	3	산17	1.2	42.3	50.81	산책로	진10	광장19	
기정	소로	3	산18	1.2	76.8	92.12	산책로	광장19	진7	
기정	소로	3	산19	1.2	267.2	320.59	산책로	광장19	자2	
기정	소로	3	산20	3.0	145.4	436.29	산책로	진6	광장21	
기정	소로	3	산21	1.2	52.3	62.70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17	
기정	소로	3	산22	1.2	57.3	68.71	산책로	서측경계	산20	
기정	소로	3	산23	2.0	35.5	66.93	산책로	산11	자2	
기정	소로	3	자1	3.0	253.0	759.01	자전거도로	공공공지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자2	3.0	287.8	863.25	자전거도로	남측경계	남측경계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29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66-3,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중촌공원 (제29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66-3, 공	20,126.90	20,126.9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126.90	20,126.90	6,935.10	6,930.33	1	-	48.00	-	48.00	-	78	78	녹지면적 증) 4.77㎡ 건축물 감) 1동
도로 및 광장	소계	5.185.90	5,229.13	5,185.90	5,229.13	-	-	-	-	-	-	-	-	시설면적 증) 43.23㎡
	도로	4,022.83	4,022.83	4,022.83	4,022.83	-	-	-	-	-	-	-	-	-
	광장	1,163.07	1,206.30	1,163.07	1,206.30	-	-	-	-	-	-	-	-	시설면적 증) 43.23㎡
조경시설		302.20	302.20	302.20	302.20	-	-	-	-	-	-	10	10	-
휴양시설		-	-	-	-	-	-	-	-	-	-	53	53	-
유희시설		648.60	648.60	648.60	648.60	-	-	-	-	-	-	8	8	-
운동시설		750.40	750.40	750.40	750.40	-	-	-	-	-	-	-	-	-
관리시설		48.00	-	48.00	-	1	-	48.00	-	48.00	-	7	7	시설면적 감) 48.00㎡ 건축물 감) 1동
녹지및기타		13,191.80	13,196.57	-	-	-	-	-	-	-	-	-	-	녹지면적 증) 4.77㎡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20,126.90	20,126.90	6,935.10	6,930.33	-	-	-	78	78	녹지면적 증)4.77 ㎡ 건축물 감) 1동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소 계			5,185.90	5,229.13	5,185.90	5,229.13	-	-	-	-	-	시설면적 증) 43.23㎡
	도로	-	중구 운남동	4,022.83	4,022.83	4,022.83	4,022.83	-	-	-	-	-	-
	광장	-	〃	1,163.07	1,206.3	1,163.07	1,206.3	-	-	-	-	-	시설면적 증) 43.23㎡
	광장1	-	〃	597.27	640.50	597.27	640.50	-	-	-	-	-	시설면적 증) 43.23㎡
	광장2	-	〃	461.00	461.00	461.00	461.00	-	-	-	-	-	-
	광장3	-	〃	104.80	104.80	104.80	104.80	-	-	-	-	-	-
조경 시설	소 계			302.20	302.20	302.20	302.20	-	-	-	10	10	-
	스탠드	A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조형마운딩 '가-1'	B	〃	152.40	152.40	152.40	152.40	-	-	-	1	1	-
	조형마운딩 '나-1'	C	〃	149.80	149.80	149.80	149.80	-	-	-	1	1	-
	바람개비조형물	D	〃	-	-	-	-	-	-	-	6	6	-
	안전난간	E	〃	-	-	-	-	-	-	-	1	1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53	53	-
	막구조파고라	F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파고라D	G	〃	-	-	-	-	-	-	-	2	2	-
	파고라O	H	〃	-	-	-	-	-	-	-	4	4	-
	등의자A	I	〃	-	-	-	-	-	-	-	24	24	-
	평의자A	J	〃	-	-	-	-	-	-	-	22	22	-
	앉음벽	K	〃	-	-	-	-	-	-	-	-	-	-
유희 시설	소 계			648.60	648.60	648.60	648.60	-	-	-	8	8	-
	어린이놀이터	L	중구 운남동	648.60	648.60	648.60	648.60	-	-	-	-	-	-
	금광조합놀이대	M	〃	-	-	-	-	-	-	-	1	1	-
	스피드레이서	N	〃	-	-	-	-	-	-	-	1	1	-
	신호등게임	O	〃	-	-	-	-	-	-	-	1	1	-
	파크레이싱 (아동용)	P	〃	-	-	-	-	-	-	-	2	2	-
	그네	Q	〃	-	-	-	-	-	-	-	1	1	-
	흔들놀이	R	〃	-	-	-	-	-	-	-	2	2	-
운동 시설	소 계			750.40	750.40	750.40	750.40	-	-	-	-	-	-
	멀티코트	S	중구 운남동	470.30	470.30	470.30	470.30	-	-	-	-	-	-
	배드민턴장	T	〃	280.10	280.10	280.10	280.10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관리시설	소 계			48.00	-	48.00	-	-	-	-	7	7	시설면적 감) 48.00㎡ 건축물 감) 1동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X	중구 운남동	48.00	-	48.00	-	-	-	-	-	-	시설면적 감) 48.00㎡ 건축물 감) 1동
	공원명칭안내판	Y	〃	-		-	-	-	-	-	1	1	-
	공원안내판B	U	〃	-		-	-	-	-	-	2	2	-
	공원안내판C	V	〃	-		-	-	-	-	-	2	2	-
	자전거보관대	W	〃	-		-	-	-	-	-	2	2	-
녹지및 기타	소 계			13,191.80	13,196.57	-	-	-	-	-	-	-	녹지면적 증)4.77 ㎡
	녹지	-	전지역	13,191.80	13,196.57	-	-	-	-	-	-	-	녹지면적 증)4.77 ㎡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	-	1,224.74	4,022.83	-	-	-	-
기정	소로	3류	진 1	6.0	84.1	510.46	진입로	광장1	광장2	
기정	소로	3류	진 2	5.0	38.4	191.96	진입로	광로	녹지	
기정	소로	3류	연 1	4.0	46.2	184.92	연결로	진1	자4	
기정	소로	3류	연 2	3.0	5.0	16.13	연결로	진1	배드민턴장	
기정	소로	3류	연 3	3.0	5.0	15.99	연결로	진1	멀티코트	
기정	소로	3류	연 4	4.0	28.9	112.61	연결로	산3	자1	
기정	소로	3류	연 5	4.4	89.3	440.59	연결로	진1	자1	
기정	소로	3류	연 6	2.0	5.1	10.27	연결로	자4	공동주택	
기정	소로	3류	연 7	4.0	5.7	23.87	연결로	자4	공동주택	
기정	소로	3류	산 1	4.0	96.4	285.63	산책로	광로	진2	
기정	소로	3류	산 2	5.0	71.6	241.19	산책로	광로	진2	
기정	소로	3류	산 3	4.0	233.75	884.75	산책로	진2	진2	
기정	소로	3류	자1	2.0	195.53	419.91	자전거도로	완충녹지54	광장1	
기정	소로	3류	자2	2.0	58.39	121.69	자전거도로	자1	진2	
기정	소로	3류	자3	2.0	54.81	125.71	자전거도로	완충녹지54	진2	
기정	소로	3류	자4	2.0	206.56	437.15	자전거도로	자3	광장1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1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54-3,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말우물공원 (제1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54-3, 공	97,629.00	97,629.0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7,629.00	97,629.00	20,081.63	32,274.41	1	1	48.00	5,000	48.00	11,999.7	100	102	시설면적 증) 12,192.78㎡ 공작물 증) 2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13,496.23	20,009.05	13,496.23	20,009.05	-	-	-	-	-	-	-	-	시설면적 증) 6,512.82㎡
	도로	7,127.85	6,271.96	7,127.85	6,271.96	-	-	-	-	-	-	-	-	시설면적 감) 855.89㎡
	광장	6,368.38	13,737.09	6,368.38	13,737.09	-	-	-	-	-	-	-	-	시설면적 증) 7,368.71㎡
조경시설		407.04	-	407.04	-	-	-	-	-	-	-	3	5	시설면적 감) 407.04㎡ 공작물 증) 2개소
휴양시설		33.00	815.00	33.00	815.00	-	-	-	-	-	-	75	75	시설면적 증) 782.0㎡
운동시설		1,073.36	1,217.36	1,073.36	1,217.36	-	-	-	-	-	-	13	13	시설면적 증) 144.0㎡
교양시설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1	-	5,000	-	11,999.7	-	-	건축물 증) 1동
편익시설		-	5,233.00		5,233.00		-		-		-		-	시설면적 증) 5,233.0㎡
관리시설		72.00	-	72.00	-	1	-	48.00	-	48.00	-	9	9	시설면적 감)72.0㎡ 건축물 감) 1동
녹지및기타		77,547.37	65,354.59	-	-	-	-	-	-	-	-	-	-	녹지면적 감) 12,192.78㎡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97,629.00	97,629.00	20,081.63	32,274.41	1동	5,000	11,999.7	100	102	시설면적 증) 12,192.78㎡ 공작물 증) 2개소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소 계			13,496.23	20,009.05	13,496.23	20,009.05	-	-	-	-	-	시설면적 증) 6,512.82㎡
	도로	-	중구 운남동	7,127.85	6,271.96	7,127.85	6,271.96	-	-	-	-	-	시설면적 감) 855.89㎡
	광장	가	〃	6,368.38	13,737.09	6,368.38	13,737.09	-	-	-	-	-	시설면적 증) 7,368.71㎡
	광장1	가-1	〃	456.01	2,641.0	456.01	2,641.0	-	-	-	-	-	시설면적 증) 2,184.99㎡
	광장2	가-2	〃	188.65	197.0	188.65	197.0	-	-	-	-	-	시설면적 증) 8.35㎡
	광장3	가-3	〃	70.58	70.58	70.58	70.58	-	-	-	-	-	-
	광장4	가-4	〃	433.06	451.3	433.06	451.3	-	-	-	-	-	시설면적 증) 18.24㎡
	광장5	가-5	〃	96.71	96.71	96.71	96.71	-	-	-	-	-	-
	광장6	가-6	〃	311.33	1,480.6	311.33	1,480.6	-	-	-	-	-	시설면적 증) 1,169.27㎡
	광장7	-	〃	168.00	-	168.00	-						시설면적 감) 168.0㎡
	광장8	-	〃	62.96	-	62.96	-						시설면적 감) 62.96㎡
	광장9/광장7	가-7	〃	3,270.48	3,812.2	3,270.48	3,812.2	-	-	-	-	-	시설면적 증) 541.72㎡
	광장10/광장8	가-8	〃	427.85	427.85	427.85	427.85	-	-	-	-	-	-
	광장11/광장9	가-9	〃	323.45	323.45	323.45	323.45	-	-	-	-	-	-
	광장12/광장10	가-10	〃	517.30	517.30	517.30	517.30	-	-	-	-	-	-
	광장13/광장11	가-11	〃	42.00	42.00	42.00	42.00	-	-	-	-	-	-
	광장14/광장12	가-12	〃	-	1,450.7	-	1,450.7	-	-	-	-	-	시설면적 증) 1,450.7㎡
	-/광장13	가-13	〃	-	1,014.0	-	1,014.0	-	-	-	-	-	시설면적 증) 1,014.0㎡
	-/광장14	가-14	〃	-	1,212.4	-	1,212.4	-	-	-	-	-	시설면적 증) 1,212.4㎡
조경 시설	소 계			407.04	-	407.04	-	-	-	-	3	5	시설면적 감) 407.04㎡ 공작물 증) 2개소
	벽천	①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장식가벽	②	〃	38.40	-	38.40	-	-	-	-	1	1	시설면적 감) 38.4㎡
	목재데크	③	〃	368.64	-	368.64	-	-	-	-	-	2	시설면적 감) 368.64㎡ 공작물 증) 2개소
	계단	④	〃	-	-	-	-	-	-	-	1	1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휴양시설	소 계			33.00	815.0	33.00	815.0	-	-	-	75	75	시설면적 증) 782.0㎡
	휴게공간	나	중구 운남동	-	815.0	-	815.0	-	-	-	-	-	시설면적 증) 815.0㎡
	휴게공간1	나-1	〃	-	390.0	-	390.0	-	-	-	-	-	시설면적 증) 390.0㎡
	휴게공간2	나-2	〃	-	425.0	-	425.0	-	-	-	-	-	시설면적 증) 425.0㎡
	원두막	⑤	〃	-	-	-	-	-	-	-	1	1	-
	통돌의자	⑥	〃	33.00	-	33.00	-	-	-	-	1	1	시설면적 감) 33.0㎡
	파고라E-1	⑦	〃	-	-	-	-	-	-	-	4	4	-
	파고라F	⑧	〃	-	-	-	-	-	-	-	5	5	-
	등의자E	⑨	〃	-	-	-	-	-	-	-	30	30	-
	평의자E	⑩	〃	-	-	-	-	-	-	-	32	32	-
	앉음벽	⑪	〃	-	-	-	-	-	-	-	1	1	-
	원형플랜터	⑫	〃	-	-	-	-	-	-	-	1	1	-
운동시설	소 계			1,073.36	1,217.36	1,073.36	1,217.36	-	-	-	13	13	시설면적 증) 144.0㎡
	농구장	다	중구 운남동	713.36	713.36	713.36	713.36	-	-	-	-	-	-
	배드민턴장	-	〃	360.00	-	360.00	-	-	-	-	-	-	시설면적 감) 360.0㎡
	풋살장	라	〃	-	504.0	-	504.0	-	-	-	-	-	시설면적 증) 504.0㎡
	어깨유연성	⑬	〃	-	-	-	-	-	-	-	2	2	-
	등허리지압기	⑭	〃	-	-	-	-	-	-	-	2	2	-
	공중걷기	⑮	〃	-	-	-	-	-	-	-	1	1	-
	달리기	⑯	〃	-	-	-	-	-	-	-	2	2	-
	허리돌리기	⑰	〃	-	-	-	-	-	-	-	1	1	-
	역기내리기	⑱	〃	-	-	-		-	-	-	2	2	-
	오금펴기운동	⑲	〃	-	-	-		-	-	-	1	1	-
	파도타기	⑳	〃	-	-	-		-	-	-	2	2	-
교양시설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동	5,000.0	11,999.7	-	-	건축물 증) 1동
	복합공공시설	1	중구 운남동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동	5,000.0	11,999.7	-	-	건축물 증) 1동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편익시설	소 계			-	5,233.0	-	5,233.0	-	-	-	-	-	시설면적 증) 5,233.0㎡
	주차장	마	중구 운남동	-	5,233.0	-	5,233.0	-	-	-	-	-	시설면적 증) 5,233.0㎡
관리시설	소 계			72.00	-	72.00	-	-	-	-	9	9	시설면적 감) 72.00㎡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	중구 운남동	72.00	-	72.00	-	-	-	-	-	-	시설면적 감) 72.00㎡
	공원안내판	㉑	〃	-	-	-	-	-	-	-	2	2	-
	시설이용안내판	㉒	〃	-	-	-	-	-	-	-	1	1	-
	방향안내판	㉓	〃	-	-	-	-	-	-	-	3	3	-
	위험안내판	㉔	〃	-	-	-	-	-	-	-	1	1	-
	공원명칭안내판	㉕	〃	-	-	-	-	-	-	-	1	1	-
	수경시설안내판	㉖	〃	-	-	-	-	-	-	-	1	1	-
녹지및기타	소 계			77,547.37	65,354.59	-	-	-	-	-	-	-	녹지면적 감) 12,192.78㎡
	녹지	-	전지역	77,547.37	65,354.59	-	-	-	-	-	-	-	녹지면적 감) 12,192.78㎡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 계		-	-	2,377.21	7,127.85	-	-	-	도로연장 감) 143.68m 도로면적 감) 855.89㎡
변경					2,233.53	6,271.96				
기정	소로	3	진 1	5.0	212.17	1,060.85	진입로	광장1	광장2	
변경	소로	3	진 1	5.0	224.12	1,120.6	진입로	부지경계	가-2. 광장2	
기정	소로	3	진 2	4.0	64.85	259.40	진입로	동측경계	진3	
변경	소로	3	진 2	4.0	64.0	256.0	진입로	동측경계	진3	
기정	소로	3	진 3	4.0	88.75	355.00	진입로	동측경계	진1	
변경	소로	3	진 3	4.0	90.5	362.0	진입로	동측경계	진1	
기정	소로	3	진 4	5.5	40.2	221.10	진입로	광장3	농구장	
변경	소로	3	진 4	5.5	40.2	221.10	진입로	가-3. 광장3	다. 농구장	
기정	소로	3	진 5	4.0	74.95	299.80	진입로	서측경계	진1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1	2.0	17.24	34.48	연결로	동측경계	진1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2	2.0	26.3	52.60	연결로	동측경계	진1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3	2.0	34.55	69.10	연결로	진2	진1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4	2.0	26.74	53.48	연결로	진2	진1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5	9.5	14.1	134.00	연결로	진2	산1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6	4.0	33.24	132.96	연결로	진1	연7	
변경	소로	3	연 1	4.0	33.24	132.96	연결로	진1	연2	
기정	소로	3	연 7	4.0	86.48	345.92	연결로	광장4	진1	
변경	소로	3	연 2	4.0	86.48	345.92	연결로	가-4. 광장4	진1	
기정	소로	3	연 8	2.0	2.0	4.00	연결로	연7	농구장	
변경	소로	3	연 3	2.0	2.0	4.00	연결로	연2	다. 농구장	
기정	소로	3	연 9	2.0	2.0	4.00	연결로	연7	농구장	
변경	소로	3	연 4	2.0	2.0	4.00	연결로	연2	다. 농구장	
기정	소로	3	연 10	2.0	2.0	4.00	연결로	연7	배드민턴장	
변경	소로	3	연 5	2.0	2.0	4.0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기정	소로	3	연 11	2.0	2.0	4.00	연결로	연7	배드민턴장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12	2.0	2.0	4.00	연결록	광장5	배드민턴장	
변경	소로	3	연 6	2.0	2.0	4.00	연결록	가-5. 광장5	라. 풋살장	
기정	소로	3	연 13	6.0	65.10	390.60	연결로	진1	연14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14	6.6	57.8	381.48	연결로	진5	도서실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15	4.0	19.45	77.80	연결로	진1	도서실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연 16	3.0	17.8	53.40	연결로	광장9	광장10	
변경	소로	3	연 7	3.0	17.8	53.40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기정	소로	3	연 17	4.5	6.9	31.05	연결로	광장9	광장10	
변경	소로	3	연 8	4.5	6.9	31.05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기정	소로	3	연 18	2.5	12.5	31.25	연결로	광장10	광장11	
변경	소로	3	연 9	2.5	12.5	31.25	연결로	가-8. 광장8	가-9. 광장9	
기정	소로	3	연 19	1.4	56.0	84.00	연결로	광장10	광장11	
변경	소로	3	연 10	1.4	56.0	84.00	연결로	가-8. 광장8	산2	
기정	소로	3	연 20	2.4	43.3	103.92	연결로	광장9	광장10	
변경	소로	3	연 11	2.4	43.3	103.92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신설	소로	3	연 12	2.0	2.0	4.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신설	소로	3	연 13	2.0	2.0	4.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신설	소로	3	연 14	3.0	45.0	135.0	연결로	가-1. 광장1	녹지	
신설	소로	3	연 15	6.0	90.5	543.0	연결로	부지경계	마. 주차장	
신설	소로	3	연 16	1.5	85.0	127.5	연결로	가-1. 광장1	가-6. 광장6	
기정	소로	3	산 1	2.74	55.2	152.77	산책로	진1	진1	
기정	소로	3	산 2	5.5	42.8	235.40	산책로	진1	연13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선 3	2.0	62.33	130.66	산책로	광장10	산4	
변경	소로	3	산 2	2.0	62.33	130.66	산책로	가-8. 광장8	산3	
기정	소로3	3	산 4	2.0	305.75	611.50	산책로	광장10	광장12	
변경	소로3	3	산 3	2.0	305.75	611.50	산책로	가-8. 광장8	가-10. 광장10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산 6	2.0	140.7	281.31	산책로	보행자도로	광장14	
변경	소로	3	산 4	2.0	140.7	281.31	산책로	보행자도로	산5	
기정	소로	3	산 7	2.0	273.7	547.40	산책로	산4	광장12	
변경	소로	3	산 5	2.0	273.7	547.40	산책로	산3	가-10. 광장10	
기정	소로	3	산 8	2.0	176.3	352.60	산책로	산4	광장12	
변경	소로	3	산 6	2.0	176.3	352.60	산책로	산3	가-10. 광장10	
기정	소로	3	산 9	2.0	24.0	48.00	산책로	광장13	산8	
변경	소로	3	산 7	2.0	24.0	48.00	산책로	가-11. 광장11	산6	
기정	소로	3	산15	2.0	24.2	48.40	산책로	근린공원38호	산8	
변경	소로	3	산8	2.0	24.2	48.40	산책로	근린공원38호	산 6	
기정	소로	3	자1	2.0	88.16	176.32	자전거도로	동축경계	광장3	
변경	소로	3	자1	2.0	88.16	176.32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가-3. 광장3	
기정	소로	3	자2	2.0	175.65	351.30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완충녹지54호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1호 체육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8-3,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제1호 체육공원	체육공원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8, 공	60,631.8	60,631.8	

2.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계			60,631.8	29,788.02	1	110.42	110.42	211	60,631.8	30,241.46	3	1,171.06	1,171.06	257	증) 453.44㎡
공원시설	시 설 계		29,788.02	29,788.02	1	110.42	110.42	211	30,241.46	30,241.46	3	1,171.06	1,171.06	257	
	기반시설	소계	9,587.30	9,587.30	-	-	-	-	7,975.7	7,975.7	-	-	-	-	감) 1,611.6㎡
		도로	(8,488.70)	(8,488.70)	-	-	-	-	(7,611.7)	(7,611.7)	-	-	-	-	감) (877.0㎡)
		광장	(1,098.60)	(1,098.60)	-	-	-	-	(364.0)	(364.0)	-	-	-	-	감) (734.6㎡)
	조경시설		1,740.20	1,740.20	-	-	-	34	1,055.9	1,055.9	-	-	-	13	감) 684.3㎡
	휴양시설		-	-	-	-	-	44	60.0	60.0	-	-	-	42	증) 60.0㎡
	운동시설		15,613.70	15,613.70	-	-	-	-	18,357.9	18,357.9	1	995.0	995.0	-	증) 2,744.2㎡
	편익시설		-	-	-	-	-	-	2,615.9	2,615.9	-	-	-	196	증) 2,615.9㎡
	관리시설		2,846.82	2,846.82	1	110.4	110.4	133	176.06	176.06	2	176.06	176.06	6	감) 2,670.76㎡
녹지 및 기타			30,843.78	-	-	-	-	-	30,390.34	-	-	-	-	-	감) 453.44㎡
시설율(%) (법정 50% 이하)			시설율 : 49.13% · 녹지율 : 50.87% · 건폐율 : 0.18%						시설율 : 49.88% · 녹지율 : 50.12% · 건폐율 : 1.93%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건축물 동수(동)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건축물 동수(동)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합 계		-	60,631.8	29,788.02	1	110.42	110.42	211		60,631.8	30,241.46	3	1,171.06	1,171.06	257	증) 453.44㎡
기반시설	소 계	-	9,587.30	9,587.30	-	-	-	-	-	7,975.7	7,975.7	-	-	-	-	
	도 로	-	8,488.7	8,488.7	-	-	-	-	-	7,611.7	7,611.7	-	-	-	-	
	광 장	가	1,098.60	1,098.60	-	-	-	-	가	364.0	364.0	-	-	-	-	
	광 장1	가-1	(59.9)	(59.9)	-	-	-	-	-	-	-	-	-	-	-	
	광 장2	가-2	(363.90)	(363.90)	-	-	-	-	-	-	-	-	-	-	-	
	광 장3	가-3	(339.90)	(339.90)	-	-	-	-	-	-	-	-	-	-	-	
	광 장4	가-4	(334.90)	(334.90)	-	-	-	-	-	-	-	-	-	-	-	
조경시설	소 계	-	1,740.2	1,740.2	-	-	-	34	-	1,055.9	1,055.9	-	-	-	13	
	실개천	A	944.6	944.6		-	-	1	-	-	-	-	-	-	-	
	조형마운딩	B	138.0	138.0	-	-	-	-	나	354.2	354.2	-	-	-	-	부호변경
	관람석	C	-	-	-	-	-	-	-	-	-	-	-	-	-	시설변경 (조경시설 → 휴양시설)
	목재데크1	D	657.6	657.6	-	-	-	-	다-1	569.8	569.8	-	-	-	-	부호변경
	목재데크2	-	-	-	-	-	-	-	다-2	18.0	18.0	-	-	-	-	
	목재데크3	-	-	-	-	-	-	-	다-3	18.0	18.0	-	-	-	-	
	목재데크4	-	-	-	-	-	-	-	다-4	71.9	71.9	-	-	-	-	
	목교	E	-	-	-	-	-	2	라	24.0	24.0	-	-	-	-	부호변경
	화강석통석	F	-	-	-	-	-	3	-	-	-	-	-	-	-	
	자연석	G	-	-	-	-	-	21	-	-	-	-	-	-	-	
	음수전	H-1	-	-	-	-	-	4	-	-	-	-	-	-	-	시설변경 (조경시설 → 편익시설)
	새집조형물	H-2	-	-	-	-	-	2	①	-	-	-	-	-	2	부호변경
	구조형물	H-3	-	-	-	-	-	1	②	-	-	-	-	-	1	부호변경
	통석의자	-	-	-	-	-	-	-	③	-	-	-	-	-	10	부호변경
휴양시설	소 계	-	-	-	-	-	-	44	-	60.0	60.0	-	-	-	42	
	운동시설 휴게공간	-	-	-	-	-	-	-	마	60.0	60.0	-	-	-	-	
	파고라1	I	-	-	-	-	-	2	④	-	-	-	-	-	1	부호변경
	파고라2	J-1	-	-	-	-	-	4	⑤	-	-	-	-	-	3	부호변경
	스텐드막구조	J-2	-	-	-	-	-	2	⑥	-	-	-	-	-	2	부호변경
	앉음벽	K	-	-	-	-	-	-	⑦	-	-	-	-	-	2	부호변경
	등의자	L	-	-	-	-	-	14	⑧	-	-	-	-	-	10	부호변경
	평의자	M	-	-	-	-	-	22	⑨	-	-	-	-	-	21	부호변경
	관람석	-	-	-	-	-	-	-	⑩	-	-	-	-	-	2	
	본부석	-	-	-	-	-	-	-	⑪	-	-	-	-	-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소 계	-	15,613.7	15,613.7	-	-	-	-	-	18,357.9	18,357.9	1	995.0	995.0	-	
	게이트볼장	-	-	-	-	-	-	-	1	995.0	995.0	1	995.0	995.0		
	인라인 스케이트장	-	-	-	-	-	-	-	바	1,433.5	1,433.5	-	-	-	-	
	풋살장	O	1,011.4	1,011.4	-	-	-	-	사	1,011.5	1,011.5	-	-	-	-	부호변경
	농구장	P	764.5	764.5	-	-	-	-	아	813.5	813.5	-	-	-	-	부호변경
	배드민턴장	Q	719.3	719.3	-	-	-	-	자	903.0	903.0	-	-	-	-	부호변경
	종합운동장	N	13,118.5	13,118.5	-	-	-	-	차	13,201.4	13,201.4	-	-	-	-	부호변경
편익시설	소 계	-	-	-	-	-	-	-	-	2,615.9	2,615.9	-	-	-	196	
	주차장1	-	-	-	-	-	-	-	카-1	778.8	778.8	-	-	-	-	
	주차장2	-	-	-	-	-	-	-	카-2	1,813.0	1,813.0	-	-	-	-	
	카스토퍼	-	-	-	-	-	-	-	⑫	-	-	-	-	-	190	
	음수전	-	-	-	-	-	-	-	⑬	24.1	24.1	-	-	-	2	
	자전거보관대	-	-	-	-	-	-	-	⑭	-	-	-	-	-	2	
	공기주입기	-	-	-	-	-	-	-	⑮	-	-	-	-	-	2	
관리시설	소 계	-	2,846.82	2,846.82	1	110.42	110.42	133	-	176.06	176.06	2	176.06	176.06	6	
	관리사무소	R	110.42	110.42	1	110.42	110.42	-	2	110.42	110.42	1	110.42	110.42	-	부호변경
	화장실	-	-	-	-	-	-	-	3	65.64	65.64	1	65.64	65.64	-	
	주차장	S	2,736.40	2,736.40	-	-	-	-	-	-	-	-	-	-	-	시설변경 (관리시설 → 편익시설)
	자전거보관대	T	-	-	-	-	-	4	-	-	-	-	-	-	-	시설변경 (관리시설 → 편익시설)
	공기주입기	U	-	-	-	-	-	2	-	-	-	-	-	-	-	시설변경 (관리시설 → 편익시설)
	공원안내판	V	-	-	-	-	-	2	⑯	-	-	-	-	-	2	부호변경
	시설이용 안내판	W	-	-	-	-	-	1	⑰	-	-	-	-	-	1	부호변경
	방향안내판	X	-	-	-	-	-	4	⑱	-	-	-	-	-	3	부호변경
	카스토퍼	Z	-	-	-	-	-	120	-	-	-	-	-	-	-	시설변경 (관리시설 → 편익시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	30,843.78	-	-	-	-	-	-	30,390.34	-	-	-	-	-	감) 453.44㎡
	녹 지	-	30,843.78	-	-	-	-	-	-	30,390.34	-	-	-	-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	2,072.78	8,488.7	-	-	-	감) 877.0㎡
변경				-	2,271.7	7,611.7	-	-	-	
기정	소 로 소 계			-	2,072.78	8,488.7	-	-	-	
변경				-	2,271.7	7,611.7	-	-	-	
기정	소로	3	진 1	4.0	59.1	236.41	진입로	대로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	4.0	43.5	160.9	연결로	소 3-22	소 3-17	
기정	소로	3	진 2	4.0	50.0	199.97	진입로	대로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2	4.0	36.7	154.4	연결로	소 3-16	소 3-16	
기정	소로	3	진 3	3.0	13.1	39.15	진입로	주차장	산 1	번호변경
변경		3	3	3.0	23.7	72.2	연결로	주차장	소 3-16	
기정	소로	3	진 4	3.0	13.1	39.15	진입로	주차장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4	3.0	23.7	72.2	연결로	주차장	소 3-16	
기정	소로	3	진 5	5.0	61.2	317.14	진입로	대로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5	5.0	61.3	316.8	연결로	부지경계	소 3-16	
기정	소로	3	진 6	3.0	61.2	183.53	진입로	대로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6	3.0	34.5	124.1	연결로	소 3-16	소 3-16	
기정	소로	3	진 7	4.0	37.58	150.33	진입로	대로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7	4.0	40.1	150.1	연결로	소 3-22	소 3-16	
기정	소로	3	진 8	3.0	1.0	3.0	진입로	대로	자 3	
변경		3	8	3.0	1.0	3.0	진입로	대로	자 3	
기정	소로	3	진 9	3.0	3.0	3.0	진입로	대로	자 3	
변경		3	9	3.0	1.0	3.0	진입로	대로	자 3	
기정	소로	3	진 10	4.5	3.0	13.5	진입로	북측경계	목교	
변경		3	10	4.5	3.0	13.5	진입로	북측경계	목교	
기정	소로	3	연 1	3.0	24.1	72.21	연결로	자 3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1	3.0	26.5	72.7	연결로	소 3-8	소 3-16	
기정	소로	3	연 2	3.0	24.2	72.72	연결로	자 3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2	3.0	26.5	72.7	연결로	소 3-8	소 3-16	
기정	소로	3	연 3	2.0	15.2	30.37	연결로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폐지
변경		3	-	-	-	-	-	-	-	
기정	소로	3	연 4	1.5	30.9	46.39	연결로	목재데크	자 3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3	1.5	25.8	39.2	연결로	다-4 목재데크4	소 3-20	
기정	소로	3	연 5	4.5	3.0	13.5	연결로	목교	자 3	
변경		3	14	4.5	3.0	13.5	연결로	목교	자 3	
기정	소로	3	연 6	3.7	13.3	49.12	연결로	산 1	농구장	폐지
변경		3	-	-	-	-	-	-	-	
기정	소로	3	연 7	5.0	41.7	208.74	연결로	진 5	진 6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5	5.0	46.0	208.6	연결로	소 3-5	소 3-23	
기정	소로	3	산 1	4.0	699.7	2,798.8	산책로	진 3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6	4.0	622.4	2,462.7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산 2	4.7	180.4	847.65	산책로	산 1	산 1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7	4.0	175.8	650.9	산책로	소 3-16	소 3-16	
기정	소로	3	산 3	10.3	60.3	620.61	산책로	산 1	광장 2	소 3-18, 소3-21로 분리
변경		3	18	3.0	59.9	180.4	산책로	소 3-16	광장	
기정	소로	3	자 1	2.2	48.4	106.58	자전거도로	주차장	광장3	폐지
변경		3	-	-	-	-	-	-	-	
기정	소로	3	자 2	2.2	62.6	137.61	자전거도로	진 5	진 6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19	2.2	46.0	101.5	자전거도로	소 3-5	소 3-23	
기정	소로	3	자 3	2.2	566.7	1,246.79	자전거도로	진 6	대로	번호변경 및 오기정정
변경		3	20	2.2	566.9	1,238.5	자전거도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21	3.0	59.9	180.4	연결로	소 3-16	광장	
신설	소로	3	22	4.7	175.8	808.4	연결로	소 3-16	소 3-17	
신설	소로	3	23	3.0	61.1	183.5	연결로	부지경계	소 3-16	
신설	소로	3	24	3~7	67.9	178.2	연결로	주차장	소 3-16	
신설	소로	3	25	4.0	39.7	150.3	진입로	부지경계	소 3-16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50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0-1외 5필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씨사이드파크 (제506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0-1외 5필지, 공	1,770,719.2	1,770,719.2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70,719.20	1,770,719.20	349,281.07	349,281.07	39	40	3,790.24	5,915.89	5,542.75	10,960.58	2,640	2,640	건축물 증) 1동
도로 및 광장	소계	193,153.85	193,153.85	193,153.85	193,153.85	-	-	-	-	-	-	-	-	-
	도로	139,441.33	139,441.33	139,441.33	139,441.33	-	-	-	-	-	-	-	-	-
	광장	53,712.52	53,712.52	53,712.52	53,712.52	-	-	-	-	-	-	-	-	-
조경시설		604.00	604.00	604.00	604.00	-	-	-	-	-	-	375	375	-
휴양시설		7,439.18	7,439.18	7,439.18	7,439.18	-	-	-	-	-	-	665	665	-
유희시설		5,487.65	5,487.65	5,487.65	5,487.65	-	-	-	-	-	-	35	35	-
운동시설		5,297.18	5,297.18	5,297.18	5,297.18	-	-	-	-	-	-	38	38	-
교양시설		98,362.02	98,362.02	98,362.02	98,362.02	1	2	1,735.99	3,861.64	2,936.12	8,353.95	11	11	건축물 증) 1동
관리시설		13,578.84	13,578.84	13,578.84	13,578.84	21	21	829.17	829.17	989.89	989.89	1,355	1,355	-
편익시설		25,358.35	25,358.35	25,358.35	25,358.35	17	17	1,225.08	1,225.08	1,616.74	1,616.74	161	161	-
녹지및기타		1,421,438.13	1,421,438.13	-	-	-	-	-	-	-	-	-	-	-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1,770,719.20	1,770,719.20	349,281.07	349,281.07	지하 1층 지상 3층	5915.89	10,960.58	2,640	2,640	건축물 증) 1동
도로 및 광장	소 계			193,153.85	193,153.85	193,153.85	193,153.85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139,441.33	139,441.33	139,441.33	139,441.33	-	-	-	-	-	-
	광장	-	〃	53,712.52	53,712.52	53,712.52	53,712.52	-	-	-	-	-	-
	광장1	-	〃	4,441.07	4,441.07	4,441.07	4,441.07	-	-	-	-	-	-
	광장2	-	〃	448.60	448.60	448.60	448.60	-	-	-	-	-	-
	광장3	-	〃	43.33	43.33	43.33	43.33	-	-	-	-	-	-
	광장4	-	〃	1,043.59	1,043.59	1,043.59	1,043.59	-	-	-	-	-	-
	광장5	-	〃	149.13	149.13	149.13	149.13	-	-	-	-	-	-
	광장6	-	〃	1,853.77	1,853.77	1,853.77	1,853.77	-	-	-	-	-	-
	광장7	-	〃	143.42	143.42	143.42	143.42	-	-	-	-	-	-
	광장8	-	〃	1,416.64	1,416.64	1,416.64	1,416.64	-	-	-	-	-	-
	광장9	-	〃	590.87	590.87	590.87	590.87	-	-	-	-	-	-
	광장10	-	〃	220.37	220.37	220.37	220.37	-	-	-	-	-	-
	광장11	-	〃	231.68	231.68	231.68	231.68	-	-	-	-	-	-
	광장12	-	〃	40.90	40.90	40.90	40.90	-	-	-	-	-	-
	광장13	-	〃	2,776.90	2,776.90	2,776.90	2,776.90	-	-	-	-	-	-
	광장14	-	〃	167.15	167.15	167.15	167.15	-	-	-	-	-	-
	광장15	-	〃	2,072.25	2,072.25	2,072.25	2,072.25	-	-	-	-	-	-
	광장16	-	〃	466.65	466.65	466.65	466.65	-	-	-	-	-	-
	광장17	-	〃	106.46	106.46	106.46	106.46	-	-	-	-	-	-
	광장18	-	〃	105.82	105.82	105.82	105.82	-	-	-	-	-	-
	광장19	-	〃	1,395.50	1,395.50	1,395.50	1,395.50	-	-	-	-	-	-
	광장20	-	중구 중산동	634.13	634.13	634.13	634.13	-	-	-	-	-	-
	광장21	-	〃	925.91	925.91	925.91	925.91	-	-	-	-	-	-
	광장22	-	〃	7,463.11	7,463.11	7,463.11	7,463.11	-	-	-	-	-	-
	광장23	-	〃	2,008.10	2,008.10	2,008.10	2,008.10	-	-	-	-	-	-
	광장24	-	〃	3,834.48	3,834.48	3,834.48	3,834.48	-	-	-	-	-	-
	광장25	-	〃	17,629.66	17,629.66	17,629.66	17,629.66	-	-	-	-	-	-
	광장26	-	〃	1,085.73	1,085.73	1,085.73	1,085.73	-	-	-	-	-	-
	광장27	-	〃	198.24	198.24	198.24	198.24	-	-	-	-	-	-
	광장28	-	〃	118.89	118.89	118.89	118.89	-	-	-	-	-	-
	광장29	-	〃	706.85	706.85	706.85	706.85	-	-	-	-	-	-
	광장30	-	〃	1,108.84	1,108.84	1,108.84	1,108.84	-	-	-	-	-	-
	광장31	-	〃	284.48	284.48	284.48	284.48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조경시설	소 계			604.00	604.00	604.00	604.00	-	-	-	375	375	
	가벽	A-1	중구 운남동	-	-	-	-	-	-	-	5	5	-
	경관폴딩	A-2	〃	-	-	-	-	-	-	-	10	10	-
	경관폭포	A-3	〃	-	-	-	-	-	-	-	1	1	-
	경관플랜터	A-4	〃	-	-	-	-	-	-	-	1	1	-
	성벽	A-5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습지	A-6	중구 운남동	604.00	604.00	604.00	604.00	-	-	-	1	1	-
조경시설	앉음벽	A-7	〃	-	-	-	-	-	-	-	1	1	-
	암석원	A-8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전망대	A-9	중구 운남동	-	-	-	-	-	-	-	1	1	-
	조형물	A-10	〃	-	-	-	-	-	-	-	234	234	-
	바닥분수	A-11	〃	-	-	-	-	-	-	-	4	4	-
	조형분수	A-12	〃	-	-	-	-	-	-	-	1	1	-
	조형열주	A-13	〃	-	-	-	-	-	-	-	43	43	-
	조형폴리	A-14	〃	-	-	-	-	-	-	-	1	1	-
	플랜터	A-15	〃	-	-	-	-	-	-	-	37	37	-
	자연석	A-16	〃	-	-	-	-	-	-	-	31	31	-
	조경석	A-17	〃	-	-	-	-	-	-	-	1	1	-
	성곽석	A-18	중구 중산동	-	-	-	-	-	-	-	1	1	-
휴양시설	소 계			7,439.18	7,439.18	7,439.18	7,439.18	-	-	-	665	665	-
	경로당	나-1	중구 운남동	500.00	500.00	500.00	500.00	-	-		-	-	-
	휴게소1	나-2	〃	42.18	42.18	42.18	42.18	-	-	-	-	-	-
	휴게소2	나-3	〃	70.00	70.00	70.00	70.00	-	-	-	-	-	-
	휴게소3	나-4	〃	70.00	70.00	70.00	70.00	-	-	-	-	-	-
	휴게소4	나-5	〃	160.96	160.96	160.96	160.96	-	-	-	-	-	-
	휴게소5	나-6	〃	245.64	245.64	245.64	245.64	-	-	-	-	-	-
	휴게소6	나-7	중구 중산동	34.40	34.40	34.40	34.40	-	-	-	-	-	-
	휴게소7	나-8	〃	35.36	35.36	35.36	35.36	-	-	-	-	-	-
	휴게소8	나-9	〃	50.00	50.00	50.00	50.00	-	-	-	-	-	-
	휴게소9	나-10	〃	39.18	39.18	39.18	39.18	-	-	-	-	-	-
	캠핑장	나-11	중구 운남동	4,500.75	4,500.75	4,500.75	4,500.75	-	-	-	-	-	-
	오토캠핑장	나-12	〃	1,690.71	1,690.71	1,690.71	1,690.71	-	-	-	-	-	-
	누각	B-1	〃	-	-	-	-	-	-	-	1	1	-
	초정	B-2	〃	-	-	-	-	-	-	-	2	2	-
	팔각정자	B-3	〃	-	-	-	-	-	-	-	2	2	-
	막구조파고라	B-4	〃	-	-	-	-	-	-	-	5	5	-
	막구조파고라 (야외무대)	B-5	〃	-	-	-	-	-	-	-	3	3	-
	연식파고라	B-6	〃	-	-	-	-	-	-	-	3	3	-
	조형파고라	B-7	〃	-	-	-	-	-	-	-	13	13	-
	파고라	B-8	〃	-	-	-	-	-	-	-	56	56	-
	쉘터	B-9	〃	-	-	-	-	-	-	-	16	16	-
	등의자	B-10	〃	-	-	-	-	-	-	-	242	242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휴양시설	평의자	B-11	〃	-	-	-	-	-	-	-	168	168	-
	조형의자	B-12	〃	-	-	-	-	-	-	-	71	71	-
	스탠드	B-13	〃	-	-	-	-	-	-	-	2	2	-
	파도스탠드	B-14	〃	-	-	-	-	-	-	-	1	1	-
	썬베드	B-15	〃	-	-	-	-	-	-	-	9	9	-
	야외테이블	B-16	〃	-	-	-	-	-	-	-	9	9	-
	세족장	B-17	〃	-	-	-	-	-	-	-	2	2	-
	족욕장	B-18	〃	-	-	-	-	-	-	-	1	1	-
	평상	B-19	〃	-	-	-	-	-	-	-	59	59	-
유희시설	소 계			5,487.65	5,487.65	5,487.65	5,487.65	-	-	-	35	35	-
	어린이놀이터1	다-1	중구 운남동	1,052.90	1,052.90	1,052.90	1,052.90	-	-	-	-	-	-
	어린이놀이터2	다-2	〃	164.12	164.12	164.12	164.12	-	-	-	-	-	-
	어린이놀이터3	다-3	〃	781.38	781.38	781.38	781.38	-	-	-	-	-	-
	물놀이장	다-4	중구 중산동	1,309.60	1,309.60	1,309.60	1,309.60	-	-	-	-	-	-
	숲체험장	다-5	〃	2,179.65	2,179.65	2,179.65	2,179.65	-	-	-	-	-	-
	레일바이크	C-1	중구 운남동	-	-	-	-	-	-	-	-	-	-
	그네	C-2	〃	-	-	-	-	-	-	-	1	1	-
	새싹네트균형잡기	C-3	〃	-	-	-	-	-	-	-	3	3	-
	수경놀이시설	C-4	〃	-	-	-	-	-	-	-	1	1	-
	숲속놀이시설	C-5	〃	-	-	-	-	-	-	-	3	3	-
	시소	C-6	〃	-	-	-	-				10	10	-
	육각네트	C-7	〃	-	-	-	-				2	2	-
	조합놀이대	C-8	〃	-	-	-	-				6	6	-
	점핑대	C-9	〃	-	-	-	-				6	6	-
	트램폴린	C-10	〃	-	-	-	-				2	2	-
	흔들놀이	C-11	〃	-	-	-	-				1	1	-
운동시설	소 계			5,297.18	5,297.18	5,297.18	5,297.18	-	-	-	38	38	-
	운동공간1	라-1	중구 운남동	648.24	648.24	648.24	648.24		-	-	-	-	-
	운동공간2	라-2	〃	1,780.80	1,780.80	1,780.80	1,780.80	-	-	-	-	-	-
	운동공간3	라-3	〃	1,024.49	1,024.49	1,024.49	1,024.49	-	-	-	-	-	-
	운동공간4	라-4	〃	588.72	588.72	588.72	588.72	-	-	-	-	-	-
	운동공간5	라-5	〃	591.36	591.36	591.36	591.36	-	-	-	-	-	-
	운동공간6	라-6	〃	663.57	663.57	663.57	663.57	-	-	-	-	-	-
	게이트볼장	D-1	〃	-	-	-	-	-	-	-	1	1	-
	스케이트파크	D-1	〃	-	-	-	-	-	-	-	1	1	-
	배드민턴장 (족구장겸용)	D-2	〃	-	-	-	-	-	-	-	1	1	-
	테니스장(3면)	D-3	〃	-	-	-	-	-	-	-	1	1	-
	조립식수영장	D-4	〃	-	-	-	-	-	-	-	1	1	-
	풋살장	D-5	〃	-	-	-	-	-	-	-	1	1	-
	농구대	D-6	〃	-	-	-	-	-	-	-	6	6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운동시설	족구지주	D-7	〃	-	-	-	-	-	-	-	1	1	-
	공중걷기	D-8	〃	-	-	-	-	-	-	-	6	6	-
	등허리지압기	D-9	〃	-	-	-	-	-	-	-	6	6	-
	어깨유연성운동	D-10	〃	-	-	-	-	-	-	-	2	2	-
	역기내리기	D-11	〃	-	-	-	-	-	-	-	2	2	-
	오금펴기	D-12	〃	-	-	-	-	-	-	-	2	2	-
	파도타기	D-13	〃	-	-	-	-	-	-	-	3	3	-
	허리돌리기	D-14	〃	-	-	-	-	-	-	-	4	4	-
교양시설	소 계			98,362.02	98,362.02	98,362.02	98,362.02	지하1층 지상3층	3,861.64	8,353.95	11	11	건축물 증) 1동
	염전보존지역	마-1	중구 운남동	82,300.75	82,300.75	82,300.75	82,300.75	-	-	-	-	-	-
	세계여행박물관	마-2	중구 중산동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	-	-	-	-
	영종역사문화관	마-3	〃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지상3층	1,735.99	2,936.12	-	-	-
	청소년수련시설	마-4	중구 운남동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지하1층 지상3층	2,125.65	5,417.83	-	-	건축물 증) 1동
	염전데크	E-1	〃	3,179.00	3,179.00	3,179.00	3,179.00	-	-	-	6	6	-
	조류관찰대	E-2	〃	-	-	-	-	-	-	-	2	2	-
	야외무대	E-3	〃	882.27	882.27	882.27	882.27	-	-	-	3	3	-
관리시설	소 계			13,578.84	13,578.84	13,578.84	13,578.84	지상 1층 ~ 2층	829.17	989.89	1,355	1,355	-
	관리사무소	사-1	중구 운남동	812.40	812.40	812.40	812.40	-	-	-	-	-	-
	거리안내판	G-1	〃	-	-	-	-	-	-	-	43	43	-
	종합안내판	G-2	〃	-	-	-	-	-	-	-	12	12	-
	시설안내판	G-3	〃	-	-	-	-	-	-	-	117	117	-
	경계휀스 (체육시설)	G-4	〃	-	-	-	-	-	-	-	1	1	-
	안전휀스	G-5	〃	-	-	-	-	-	-	-	1	1	-
	바이크스테이션	G-6	〃	-	-	-	-	-	-	-	2	2	-
	캐노피	G-7	〃	-	-	-	-	-	-	-	4	4	-
	턴테이블	G-8	〃	-	-	-	-	-	-	-	4	4	-
	자전거보관대	G-9	〃	-	-	-	-	-	-	-	5	5	-
	반사경	G-10	〃	-	-	-	-	-	-	-	14	14	-
	볼라드	G-11	〃	-	-	-	-	-	-	-	161	161	-
	스테인리스볼라드	G-12	〃	-	-	-	-	-	-	-	29	29	-
	쏠라볼라드	G-13	〃	-	-	-	-	-	-	-	11	11	-
	사각수목보호틀	G-14	〃	-	-	-	-	-	-	-	33	33	-
	자바라대문	G-15	〃	-	-	-	-	-	-	-	3	3	-
	철도건널목	G-16	〃	-	-	-	-	-	-	-	13	13	-
	카스토퍼	G-17	〃	-	-	-	-	-	-	-	1	1	-
	판둑A	G-18	〃	-	-	-	-	-	-	-	1	1	-
	판둑B	G-19	〃	-	-	-	-	-	-	-	891	891	-
	해 주	G-20	〃	-	-	-	-	-	-	-	8	8	-
	흑칠판	G-21	〃	-	-	-	-	-	-	-	1	1	-
	월파벽	G-22	〃	12,490.19	12,490.19	12,490.19	12,490.19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관리시설	염전창고모형1	G-23	〃	88.50	88.50	88.50	88.50	지상 1층	88.50	88.50	-	-	-
	염전창고모형2	G-24	〃	52.75	52.75	52.75	52.75	〃	52.75	52.75	-	-	-
	염전창고모형3	G-25	〃	135.00	135.00	135.00	135.00	〃	135.00	135.00	-	-	-
	관리사무소	G-26	중구 중산동	-	-	-	-	지상 2층	139.14	299.86	-	-	-
	관리실(염전)	G-27	중구 운남동	-	-	-	-	지상 1층	44.78	44.78	-	-	-
	관리실1	G-28	중구 중산동	-	-	-	-	〃	60.00	60.00	-	-	-
	관리실2	G-29	〃	-	-	-	-	〃	18.00	18.00	-	-	-
관리시설	관리실(창고)1	G-30	중구 운남동	-	-	-	-	〃	84.00	84.00	-	-	4동
	관리실(창고)2	G-31	〃	-	-	-	-	〃	18.00	18.00	-	-	-
	관리실(대기실)1	G-32	〃	-	-	-	-	〃	36.00	36.00	-	-	-
	관리실(대기실)2	G-33	중구 중산동	-	-	-	-	〃	27.00	27.00	-	-	-
	관리실(테니스장)	G-34	중구 운남동	-	-	-	-	〃	21.00	21.00	-	-	-
	관리실(초소)1	G-35	중구 중산동	-	-	-	-	〃	9.00	9.00	-	-	-
	관리실(초소)2	G-36	〃	-	-	-	-	〃	9.00	9.00	-	-	-
	관리실(교육장)1	G-37	〃	-	-	-	-	〃	18.00	18.00	-	-	-
	관리실(교육장)2	G-38	〃	-	-	-	-	〃	15.00	15.00	-	-	-
	관리실(레일바이크)	G-39	〃	-	-	-	-	〃	27.00	27.00	-	-	-
	창고(카라반)	G-40	중구 운남동	-	-	-	-	〃	27.00	27.00	-	-	-
편익시설	소 계			25,358.35	25,358.35	25,358.35	25,358.35	지상 1층 ~ 2층	1,225.08	1,616.74	161	161	-
	주차장1	바-1	중구 운남동	1,134.31	1,134.31	1,134.31	1,134.31	-	-	-	-	-	-
	주차장2	바-2	〃	3,042.06	3,042.06	3,042.06	3,042.06	-	-	-	-	-	-
	주차장3	바-3	〃	1,291.05	1,291.05	1,291.05	1,291.05	-	-	-	-	-	-
	주차장4	바-4	〃	731.66	731.66	731.66	731.66	-	-	-	-	-	-
	주차장5	바-5	〃	2,265.00	2,265.00	2,265.00	2,265.00	-	-	-	-	-	-
	주차장6	바-6	〃	980.75	980.75	980.75	980.75	-	-	-	-	-	-
	주차장7	바-7	〃	501.27	501.27	501.27	501.27	-	-	-	-	-	-
	주차장8	바-8	〃	359.88	359.88	359.88	359.88	-	-	-	-	-	-
	주차장9	바-9	중구 중산동	4,335.22	4,335.22	4,335.22	4,335.22	-	-	-	-	-	-
	주차장10	바-10	〃	622.61	622.61	622.61	622.61	-	-	-	-	-	-
	주차장11	바-11	〃	1,385.27	1,385.27	1,385.27	1,385.27	-	-	-	-	-	-
	주차장12	바-12	〃	1,752.15	1,752.15	1,752.15	1,752.15	-	-	-	-	-	-
	화장실	-	중구 운남동	374.76	374.76	374.76	374.76	-	-	-	-	-	-
	화장실1	F-6	〃	-	-	-	-	지상 1층	18.00	18.00	-	-	-
	화장실2	F-7	〃	-	-	-	-	〃	12.50	12.50	-	-	-
	화장실3	F-8	〃	-	-	-	-	〃	65.64	65.64	-	-	-
	화장실4	F-9	〃	-	-	-	-	〃	120.18	120.18	-	-	-
	화장실5	F-10	〃	-	-	-	-	〃	22.50	22.50	-	-	-
	화장실6	F-11	〃	-	-	-	-	〃	38.76	38.76	-	-	-
	화장실7	F-12	〃	-	-	-	-	〃	43.70	43.70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편익시설	화장실8	F-13	〃	-	-	-	-	〃	27.40	27.40	-	-	-
	매점	F-1	〃	-	-	-	-	〃	18.00	18.00	-	-	-
	주차장13	바-14	〃	3,583.87	3,583.87	3,583.87	3,583.87	-	-	-	-	-	-
	주차장14	바-15	〃	621.51	621.51	621.51	621.51	-	-	-	-	-	-
	주차장15	바-16	중구 중산동	420.00	420.00	420.00	420.00	-	-	-	-	-	-
	주차장16	바-17	〃	988.21	988.21	988.21	988.21	-	-	-	-	-	-
편익시설	매표소	F-2	중구 운남동	-	-	-	-	지상 1층	30.00	30.00	-	-	-
	매표소 및 매점1	F-3	〃	-	-	-	-	〃	21.00	21.00	-	-	-
	매표소 및 매점2	F-4	중구 중산동	-	-	-	-	〃	28.70	28.70	-	-	-
	카페테리아	F-5	〃	679.08	679.08	679.08	679.08	지상 2층	570.48	962.14	-	-	-
	화장실9	F-29	중구 중산동	33.0	33.0	33.0	33.0	지상1층	33.0	33.0	-	-	-
	레일바이크화장실	F-14	〃	-	-	-	-	〃	39.36	39.36	-	-	-
	레일바이크휴게실	F-15	〃	-	-	-	-	〃	92.16	92.16	-	-	-
	공동취사장	F-16	중구 운남동	206.84	206.84	206.84	206.84	〃	43.70	43.70	-	-	-
	목재계단	F-17	〃	-	-	-	-	-	-	-	24	24	-
	석재계단	F-18	〃	-	-	-	-	-	-	-	1	1	-
	철제계단	F-19	〃	-	-	-	-	-	-	-	2	2	-
	목재램프	F-20	〃	-	-	-	-	-	-	-	1	1	-
	목재데크	F-21	〃	-	-	-	-	-	-	-	6	6	-
	물놀이장데크	F-22	〃	-	-	-	-	-	-	-	1	1	-
	스카이데크	F-23	〃	-	-	-	-	-	-	-	1	1	-
	레일바이크탑승장	F-24	〃	-	-	-	-	-	-	-	1	1	-
	전망데크	F-25	〃	49.85	49.85	49.85	49.85	-	-	-	9	9	-
	약수터	F-26	〃	-	-	-	-	-	-	-	1	1	-
	음수전	F-27	〃	-	-	-	-	-	-	-	1	1	-
	디딤돌	F-28	〃	-	-	-	-	-	-	-	113	113	-
녹지및기타	소 계			1,421,438.13	1,421,438.13	-	-	-	-	-	-	-	-
	녹지	-	전지역	1,421,438.13	1,421,438.13	-	-	-	-	-	-	-	-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	-	22,372.26	139,441.33	-	-	-	
기정	소로	3류	진1	2.0	43.94	87.87	진입로	북측경계	연114	
기정	소로	3류	진2	3.8	35.01	133.05	진입로	북측경계	진3	
기정	소로	3류	진3	3.0	40.79	122.37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류	진4	3.0	28.0	84.01	진입로	광장4	연8	
기정	소로	3류	진5	3.0	85.08	255.25	진입로	광장6	연8	
기정	소로	3류	진6	4.5	29.44	132.47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7	
기정	소로	3류	진7	4.0	44.18	176.70	진입로	광장8	연33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류	진8	3.0	39.95	119.86	진입로	서측경계	연36	
기정	소로	3류	진9	6.5	8.74	56.83	진입로	서측경계	주차장3	
기정	소로	3류	진10	2.0	33.83	67.65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2	
기정	소로	3류	진11	1.5	19.42	29.13	진입로	북측경계	연46	
기정	소로	3류	진12	2.0	45.4	90.80	진입로	북측경계	연48	
기정	소로	3류	진13	1.5	22.37	33.56	진입로	북측경계	연52	
기정	소로	3류	진14	2.0	61.93	123.86	진입로	북측경계	연53	
기정	소로	3류	진15	6.0	140.77	844.60	진입로	북측경계	주차장6	
기정	소로	3류	진16	2.0	41.42	82.83	진입로	북측경계	주차장5	
기정	소로	3류	진17	9.5	100.38	953.59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5	
기정	소로	3류	진18	3.0	190.07	570.22	진입로	연114	연114	
기정	소로	3류	진19	6.0	160.11	960.64	진입로	연114	북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진20	4.0	459.36	1837.42	진입로	주차장10	광장25	
기정	소로	3류	진21	4.0	260.72	1042.88	진입로	동측경계	주차장10	
기정	소로	3류	진22	3.5	11.86	41.52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진23	3.0	6.14	18.43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진24	6.5	110.92	722.88	진입로	서측경계	주차장11	
기정	소로	3류	진25	2.0	107.67	215.34	진입로	북측경계	연96	
기정	소로	3류	진26	4.5	27.98	125.93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진27	5.0	133.4	666.98	진입로	남측경계	연110	
기정	소로	3류	진28	3.0	61.38	184.14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31	
기정	소로	3류	진29	7.36	5.65	41.05	진입로	동측경계	주차장13	
기정	소로	3류	연1	2.0	32.88	65.76	연결로	주차장2	연2	
기정	소로	3류	연2	15.0	9.68	145.13	연결로	북측경계	광장2	
기정	소로	3류	연3	3.0	223.57	670.71	연결로	광장2	광장3	
기정	소로	3류	연4	1.5	77.33	115.99	연결로	연3	연5	
기정	소로	3류	연5	2.0	32.14	64.28	연결로	연14	광장3	
기정	소로	3류	연6	1.5	7.87	11.80	연결로	광장3	연7	
기정	소로	3류	연7	2.0	126.82	253.64	연결로	연13	연13	
기정	소로	3류	연8	3.0	211.38	634.13	연결로	광장3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9	1.5	23.37	35.05	연결로	연7	연8	
기정	소로	3류	연10	2.0	10.5	21.00	연결로	연114	연13	
기정	소로	3류	연11	2.0	15.66	31.31	연결로	연13	연14	
기정	소로	3류	연12	2.0	22.13	44.26	연결로	연14	광장5	
기정	소로	3류	연13	1.5	331.86	497.79	연결로	연5	연21	
기정	소로	3류	연14	1.5	81.5	122.25	연결로	연7	연13	
기정	소로	3류	연15	1.5	215.14	322.71	연결로	연14	연16	
기정	소로	3류	연16	2.0	17.5	35.00	연결로	연17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17	2.0	9.45	18.90	연결로	연114	연13	
기정	소로	3류	연18	1.5	52.25	78.38	연결로	연16	연13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류	연19	1.2	29.43	35.31	연결로	연18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20	1.5	37.4	56.10	연결로	연13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21	2.0	27.04	54.07	연결로	연114	광장7	
기정	소로	3류	연22	2.0	7.82	15.64	연결로	연114	휴게소1	
기정	소로	3류	연23	5.0	20.97	104.85	연결로	광장7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4	3.0	20.63	61.88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5	4.0	35.32	141.28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6	4.0	32.57	130.26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7	8.0	32.64	261.14	연결로	광장9	연28	
기정	소로	3류	연28	4.0	225.14	900.56	연결로	연21	연33	
기정	소로	3류	연29	1.5	6.35	9.52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0	2.0	7.87	15.74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1	2.0	7.61	15.21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2	2.0	7.49	14.97	연결로	연114	연28	
기정	소로	3류	연33	3.0	234.39	703.17	연결로	광장7	연114	
기정	소로	3류	진18	3.0	190.07	570.22	진입로	연114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34	5.0	126.51	632.54	연결로	연33	연37	
기정	소로	3류	연35	1.5	24.81	37.22	연결로	연33	주차장4	
기정	소로	3류	연36	2.0	46.39	92.77	연결로	주차장3	연37	
기정	소로	3류	연37	6.0	101.55	609.29	연결로	주차장3	주차장4	
기정	소로	3류	연38	3.0	82.96	248.88	연결로	연37	광장10	
기정	소로	3류	연39	2.0	47.65	106.83	연결로	주차장14	광장10	
기정	소로	3류	연40	1.5	100.46	150.69	연결로	광장11	광장12	
기정	소로	3류	연41	1.5	104.29	156.44	연결로	연39	연40	
기정	소로	3류	연42	1.5	118.54	177.81	연결로	연39	연43	
기정	소로	3류	연43	2.0	34.96	69.91	연결로	광장12	염전데크	
기정	소로	3류	연44	1.5	140.26	210.39	연결로	연43	진13	
기정	소로	3류	연45	1.5	48.59	72.89	연결로	연46	연44	
기정	소로	3류	연46	1.5	143.19	214.78	연결로	광장12	진13	
기정	소로	3류	연47	1.5	40.17	60.25	연결로	진13	연48	
기정	소로	3류	연48	2.0	47.5	94.99	연결로	염전데크	광장13	
기정	소로	3류	연49	1.5	16.73	25.1	연결로	진13	연48	
기정	소로	3류	연50	1.5	22.87	34.31	연결로	연48	염전데크	
기정	소로	3류	연51	1.5	42.99	64.49	연결로	광장13	연52	
기정	소로	3류	연52	1.5	215.19	322.78	연결로	염전데크	진16	
기정	소로	3류	연53	1.5	123.64	185.46	연결로	연52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54	1.5	39.04	58.56	연결로	진416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55	2.5	37.64	94.11	연결로	광장14	주차장5	
기정	소로	3류	연56	2.0	57.38	114.75	연결로	주차장5	주차장5	
기정	소로	3류	연57	2.0	43.93	87.85	연결로	주차장5	전망데크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류	연58	2.0	20.0	38.83	연결로	주차장14	연57	
기정	소로	3류	연59	2.5	60.57	151.42	연결로	연58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60	3.0	497.3	1491.9	연결로	주차장4	연59	
기정	소로	3류	연61	1.5	91.75	137.63	연결로	연60	연60	
기정	소로	3류	연62	6.0	18.07	108.42	연결로	목재데크	연64	
기정	소로	3류	연63	1.0	21.86	21.86	연결로	연62	진20	
기정	소로	3류	연64	2.0	35.62	71.23	연결로	진20	진20	
기정	소로	3류	연65	2.0	121.51	243.01	연결로	진20	진20	
기정	소로	3류	연66	2.0	118.07	236.13	연결로	연67	공원경계	
기정	소로	3류	연67	6.0	360.03	2160.19	연결로	연114	연72	
기정	소로	3류	연68	1.5	163.32	244.98	연결로	연67	연67	
기정	소로	3류	연69	6.0	9.04	54.25	연결로	연114	연67	
기정	소로	3류	연70	2.0	93.67	187.34	연결로	산7	휴게소3	
기정	소로	3류	연71	2.5	146.12	365.31	연결로	남측경계	북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연72	8.0	12.86	102.89	연결로	연114	도로	
기정	소로	3류	연73	3.0	6.77	20.3	연결로	동측경계	광장21	
기정	소로	3류	연74	2.0	49.49	98.98	연결로	산11	주차장9	
기정	소로	3류	연75	3.5	202.54	708.9	연결로	주차장9	산15	
기정	소로	3류	연76	2.0	13.12	26.24	연결로	광장24	연77	
기정	소로	3류	연77	2.0	176.85	353.7	연결로	진22	연80	
기정	소로	3류	연78	2.0	10.25	20.5	연결로	연77	연82	
기정	소로	3류	연79	2.0	8.3	16.59	연결로	연77	연82	
기정	소로	3류	연80	2.0	38.87	77.74	연결로	진22	연82	
기정	소로	3류	연81	2.0	11.08	22.15	연결로	연82	연84	
기정	소로	3류	연82	3.0	111.60	334.79	연결로	연89	연86	
기정	소로	3류	연83	2.0	28.53	57.05	연결로	연82	연84	
기정	소로	3류	연84	2.0	137.20	274.4	연결로	연89	연82	
기정	소로	3류	연85	2.5	12.44	31.1	연결로	연84	연86	
기정	소로	3류	연86	2.5	337.19	842.97	연결로	광장24	연89	
기정	소로	3류	연87	3.0	33.53	100.59	연결로	연86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88	3.0	58.02	174.06	연결로	연89	연86	
기정	소로	3류	연89	7.5	268.61	2014.61	연결로	진22	연114	
기정	소로	3류	연90	7.5	214.60	1609.5	연결로	북측경계	광장27	
기정	소로	3류	연91	3.0	272.01	816.02	연결로	진23	연90	
기정	소로	3류	연92	1.5	841.48	1262.22	연결로	광장28	광장27	
기정	소로	3류	연93	2.0	141.89	283.39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연94	3.0	28.36	107.17	연결로	북측경계	주차장15	
기정	소로	3류	연95	5.0	184.02	920.09	연결로	주차장11	야외무대2	
기정	소로	3류	연96	3.5	178.32	624.11	연결로	연95	광장31	
기정	소로	3류	연97	2.0	253.73	507.45	연결로	연95	광장31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류	연98	2.5	32.18	80.46	연결로	연96	연97	
기정	소로	3류	연99	2.5	28.47	71.18	연결로	연96	연97	
기정	소로	3류	연100	1.5	109.68	164.52	연결로	연97	연104	
기정	소로	3류	연101	1.5	10.39	15.58	연결로	연100	광장30	
기정	소로	3류	연102	1.5	11.20	16.80	연결로	연103	광장30	
기정	소로	3류	연103	1.5	88.91	133.36	연결로	연108	연104	
기정	소로	3류	연104	1.5	44.57	66.86	연결로	광장31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05	1.5	39.88	59.82	연결로	광장31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06	1.5	72.85	109.27	연결로	연104	연105	
기정	소로	3류	연107	1.5	30.71	46.06	연결로	연105	광장32	
기정	소로	3류	연108	3.5	339.32	1187.63	연결로	광장31	연95	
기정	소로	3류	연109	3.5	94.59	331.05	연결로	야외무대2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06	1.5	72.85	109.27	연결로	연104	연105	
기정	소로	3류	연107	1.5	30.71	46.06	연결로	연105	광장32	
기정	소로	3류	연108	3.5	339.32	1187.63	연결로	광장31	연95	
기정	소로	3류	연109	3.5	94.59	331.05	연결로	야외무대2	연108	
기정	소로	3류	연110	1.5	20.91	31.36	연결로	야외무대2	진29	
기정	소로	3류	연111	1.8	79.11	142.39	연결로	진30	진30	
기정	소로	3류	연112	1.8	58.07	104.52	연결로	진30	진30	
기정	소로	3류	연113	1.5	21.38	32.07	연결로	주차장12	진26	
기정	소로	3류	연114	1.5	8.46	12.69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28	
기정	중로	1류	연115	20.0	4488.33	89766.51	연결로	서측경계	광장28	
기정	소로	3류	연116	10.0	8.08	80.77	연결로	연115	주차장2	
기정	소로	3류	연117	2.0	47.05	112.35	연결로	염전데크	주차장14	
기정	소로	3류	산1	2.0	314.45	628.89	산책로	광장16	산2	
기정	소로	3류	산2	1.5	342.22	513.33	산책로	북측경계	광장17	
기정	소로	3류	산3	2.0	821.01	1642.02	산책로	산1	광장17	
기정	소로	3류	산4	2.0	291.98	583.96	산책로	산3	광장19	
기정	소로	3류	산5	2.0	207.49	414.97	산책로	산4	휴게소2	
기정	소로	3류	산6	2.0	507.30	1014.6	산책로	산3	광장18	
기정	소로	3류	산7	2.0	498.69	997.37	산책로	광장18	연70	
기정	소로	3류	산8	2.0	291.28	582.56	산책로	산7	북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산9	2.0	191.55	383.09	산책로	산8	광장21	
기정	소로	3류	산10	2.0	178.81	357.62	산책로	산7	광장21	
기정	소로	3류	산11	2.0	161.13	322.25	산책로	서측경계	광장22	
기정	소로	3류	산12	2.0	19.52	39.04	산책로	광장22	산14	
기정	소로	3류	산13	2.0	109.87	219.74	산책로	주차장9	산14	
기정	소로	3류	산14	2.0	157.16	314.31	산책로	산11	연75	
기정	소로	3류	산15	2.0	7.68	15.35	산책로	연75	동측경계	
기정	소로	3류	산16	2.0	125.0	250.00	산책로	연95	산17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운북IC 실시계획(변경)

ㅇ 토지세목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600	광장	교통광장	운북동 1329 도 일원	63,211.0 (74,044.9)	감) 543.4	62,667.6 (73,501.5)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ㅇ 토지세목 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연번	행정동	지번	면적(㎡)	연번	행정동	지번	면적(㎡)	
1	운서동	2825-1	36.3	1	운서동	2825-1	36.3	
2	운서동	2826-1	20,730.7	2	운서동	2826-1	20,730.7	
3	운서동	1472-4	3,038.0	3	운서동	3245	4,236.6	
4	운서동	1472-6	878.0	4	운서동	2810-3	16,642.1	
5	운서동	641-38	313.0	5	운서동	2810-4	0.4	
6	운서동	2810-3	16,642.1	6	운서동	3244	13,335.6	
7	운서동	2810-4	0.4	7	운서동	2746-11	1,344.6	
8	운서동	2810-5	1,345.5	8	운북동	1370	6,341.3	
9	운북동	779-218	6,286.0					
10	운서동	산97-2	799.0					
11	운서동	산98-11	12,749.0					
12	공유수면		393.0					제외
소계			63,211.0	소계			62,667.6	
2-4단계	운북동	1329	10,833.9	2-4단계	운북동	1329	10,833.9	영종하늘도시 내
합계			74,044.9	합계			73,501.5	

ㅇ 사업기간 변경

- (사 유) 도시계획시설사업(영종하늘도시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시행 및 공용 중인 운북IC의 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13. 03월 ~ 2016. 12월 (2017. 1월부터 공용 중)
  (변경) 2013. 03월 ~ 2020. 12월

▣ 운북IC 공사시행(변경)허가

ㅇ 공사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3년 3월 1일 ~ 2016년 12월 31일(2017년 1월부터 공용중)
- 변경 : 2013년 3월 1일 ～ 2020년 12월 30일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ㅇ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공사기간 연장

- 기정 : 2007년 12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156개월)
- 변경 : 2007년 12월 27일 ~ 2021년 12월 31일(168개월)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단지사업부(032-717-4317, 430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16호

일반측량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0.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2020.10.27. ~ 2020.11.9.
2. 공고장소: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일반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		
2. 당사자	상 호 (대표자)	㈜다린이앤씨[정재동]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1-10, 3층(학익동)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위반		
4.처분내용		등록취소		
5.법적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6.고지내용		일반측량업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없음)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실시 통지		
7.청문일시/장소		2020. 11. 17.(화) 14:00~15:00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8.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한담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연락처	032-440-4573		
	의견제출기한	2020. 11. 17.(화)		

※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할 예정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17호

일반측량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0.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2020.10.27. ~ 2020.11.9.
2. 공고장소: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일반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		
2. 당사자	상 호 (대표자)	정인엔지니어링[박완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61번길 40, 201호(간석동,벙양상가)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위반		
4.처분내용		등록취소		
5.법적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6.고지내용		일반측량업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없음)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실시 통지		
7.청문일시/장소		2020. 11. 17.(화) 16:00~17:00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8.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한담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연락처	032-440-4573		
	의견제출기한	2020. 11. 17.(화)		

※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할 예정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18호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 포상하여 물류산업분야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안내

○ 추 천 자

- 물류관련 기관·단체·기업 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본인 직접신청 가능

2. 시상훈격 및 종류

○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부문 및 대상

구 분		인원	추천 및 응모대상
계		4	
기업	본상	1	- 소재지 또는 주요사업 활동지역이 인천인 업체로서, ■ 물류산업 분야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업 ■ 타 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이룩한 기업
	특별상	1	
개인 및 단체	본상	1	- 市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특별상	1	-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

3. 시상일정

가. 서류접수 : 2020. 11. 3.(화) ~ 11. 12.(목), 10일간

나. 수상자 발표 : 2020. 12월중(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시 상 : 2020. 12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물류산업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송도동, 미추홀타워), 우편번호 21999

나.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구 분	기업 및 단체	개인
제출 서류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행정 →고시/공고 →검색창 →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추천서 등 다운로드 가능)

라.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표창기준>

① 이중표창 금지 :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이중표창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동안 표창추천 제외

② 재표창 금지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및 1년 이내 동일 훈격 포상 불가

-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및 상장에 한하여 예외 인정(고유업무, 일상업무 등 통상적 성과 제외)

<추천제한>

① 지방세 체납자(완납 이후 표창 추천 가능)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032-440-4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류발전대상 추천(신청) 제출서류 [서식 1~7]

[서식 1]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개인용)

부 문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공적요약 (추천사유)	○ ○ ○ ○		

상기인(본인)을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첨부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③ 기타서류(이력서 등) 1부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추천(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기업/단체용)

부 문			
기업(단체)명			
대표자명	(한글) (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적요약 (추천사유)	○ ○ ○ ○		

상기 기업(단체)을 제15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신청) 합니다.

[첨부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③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3년 간 재무제표 등)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추천(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3]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	*	*	*	*	*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근무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 4]

공 적 조 서

(기업/단체용)

(앞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공적기간	
특기사항			
공 적 요 지 (간략하게 기재)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뒷면)

주요 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일	주요내용	년 월 일	주요내용

공 적 내 용

□ 공적조서 작성요령

○ 포상은 수상 순으로 빠짐없이 기재

○ 공적내용은 사례위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 물류발전·혁신·개선 주요활동 및 그 성과
- 물류산업발전 기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기타 수상자격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공적기간

- 개인: 재직증명서 상의 최초 발령일을 기산일로 포상 공고일까지의 월수로 환산, 이직의 경우 동일업무분야 근무기간 인정
- 기업(단체): 설립 시부터 환산하여 산출

□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요령

○ 증빙자료는 A4로 작성

- 관련 이미지, 사진, 보도기사 등 사실검증 자료 삽입
- 분량은 10페이지 내외

○ 기타 증빙자료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 시 인사기록카드 형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정확한 학력(입학, 졸업 연월일), 경력(입·퇴사 연월일) 기재
- 학력 및 경력사항과 과거포상 및 징계, 형벌 구분 작성

[서식 5]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홍 길 동 (弘 吉 童)	성 별(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E-mail		TEL H·P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과거 포상 및 징계, 형벌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인)

[서식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후보자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시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시장표창 계획 등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추천제한 사유(지방세 체납 및 범죄경력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천제한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7]

현지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기관(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속		직급(직위)	
도로명 주소			
추 천 분 야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공적사항 사실여부	
추천제한 대상 확인여부	
인품 및 성품 등 (개인)	
재정건정성 등 (기업/단체)	
물류발전 기 여 도	
조 사 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25호

일반측량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0.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2020.10.28. ~ 2020.11.11.
2. 공고장소: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table>
<tr><td colspan="2">1. 처분의 제목</td><td colspan="4">일반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td></tr>
<tr><td rowspan="2">2. 당사자</td><td>상 호
(대표자)</td><td colspan="4">박완수[정인엔지니어링 대표]</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 **7호(간석동, **빌딩)</td></tr>
<tr><td colspan="2">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위반</td></tr>
<tr><td colspan="2">4.처분내용</td><td colspan="4">등록취소</td></tr>
<tr><td colspan="2">5.법적근거</td><td colspan="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td></tr>
<tr><td colspan="2">6.고지내용</td><td colspan="4">일반측량업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없음)에 따른 행정처분
(등록취소) 청문실시 통지</td></tr>
<tr><td colspan="2">7.청문일시/장소</td><td colspan="4">2020. 11. 17.(화) 16:00~17:00 /인천시청 토지정보과</td></tr>
<tr><td colspan="2" rowspan="4">8.기타(문의처)</td><td>기관명</td><td>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td><td>담당자</td><td>이한담</td></tr>
<tr><td>주소</td><td colspan="3">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032-440-4573</td></tr>
<tr><td>의견제출기한</td><td colspan="3">2020. 11. 17.(화)</td></tr>
</table>

※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할 예정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27호

숭릉천 등 10개 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결정(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숭릉천 등 10개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하천법」제 10조,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숭릉천 등 10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안),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숭릉천 등 10개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숭릉천, 다송천, 덕하천, 삼거천, 내가천, 인산천, 삼흥천, 덕교천, 길정천, 온수천)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 연 장 : 금회 총 33.41km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년 11월 02일 ~ 11월 30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수질환경과,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및 각 읍 · 면사무소
(양사면, 하점면, 송해면, 강화읍, 내가면,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길상면)
○ 정보통신망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일	2020년11월16일		2020년11월17일		2020년11월18일		2020년11월19일		2020년11월20일
시 간	10시	14시	10시	14시	10시	14시	10시	14시	10시
장 소 (각읍·면 사무소 등)	양사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	하점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송해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	강화읍 대산1리 마을회관	내가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	길상면 면사무소 옆 여울마당 1층	불은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11월 02일 ~ 2020년 12월 07일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1)를 서면(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전자우편 (keikei95@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의견 등록
○ 의견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와 그 필요성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032-440-3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3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10. 30.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사항		주관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제2017-0- 인천광역시-24호 (2017.11.30.)	사단법인 인문의 향기	인천 부평구 마장로 338 지하1층(산곡동, 남양빌딩)	인천 부평구 안남로 434번길 23, 3층 303호(청천동)	도서관 정책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10.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제2020-2270호)

2. 공고기간 : 2020년 11월 01일 ~ 2020년 11월 15일까지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메*츠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 , *층(여의도동, 메리츠화재빌딩)	62무0174	이사불명	
2	김*종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0-*(만리동*가)	68부8533	주소불명	
3	(주)두*요업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번길 ** (석남동)	66모9451	수취인불명	
4	정*채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 8**동 7**호(운*동, ***아*원8-*단지 아파트)	47러2891	수취인불명	
5	임*용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번길 1*,C동 **호 (심*동, **아트빌)	43노2067	수취인불명	
6	이*주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번길 *0-*2(온*동)	27노6990	수취인불명	
7	주*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번길 **, **1호 (**동)	11조0545	수취인불명	
8	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5, ****호(삼*동, **타운1단지아파트)	20모8222	주소불명	
9	(주)씨**이테크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 (가*동)	25거6562	수취인불명	
10	노*우	충청남도 당진시 신**로*길 **-3 ,2*5호(송*읍)	39모3163	수취인불명	
11	주식회사 성*전자	인천광역시 서구 *곡로 **-1 (가*동)	24거8981	수취인불명	
12	문*숙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번길 ** , A동 ***호 (**동, ***인빌)	81조8768	이사불명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4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록번호	제2020-0-인천광역시-29호		
단 체 명	굿월드 인터내셔널		
대 표 자	박경래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97번길 46 (고잔동)		
주된사업	○ 다문화가족 교육 사업 - 다문화부모 한국어 교실 - 천안 온라인 챌린지 댄스 대회 ○ 다문화가족 문화 나눔 사업 - 다문화 힐링 문화 콘서트		
등록일자	2020. 10. 30.	등록구분	신 규

2020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346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18조, 20조에 의하여 「2020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일시 : 2020. 10. 28.(수) 14:00
2.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
3. 심의작품
   ○ 총 14작품
4. 심의결과
   ○ 가결 12작품(권고 2작품 포함), 부결 2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0년 제10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설치지역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고
				가결	부결	
1	미추홀구 주안동 19-2, 주안7구역	조각	바람 꽃 풍경		○	조형성이 미흡하고 재료조합이 어색하며 시공방법의 구체성이 요구됨. 독창성이 부족하며 시각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함.
2		조각	라 루나(La Luna)	○		
3	서구 청라동 84-6, 청라 호반베르디움	조각	WAVE-순수의 선율	○		
4	서구 검단신도시 AA1블럭 (호반 써밋 검단2차)	조각	행복한 나들이		○	작가의 반복되는 씨리즈작품으로 작품성 문제 및 자기작품 복제의 우려가 있음. 작품의 독창성이 부족하며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보임.
5		조각	Composition stack	○		
6	남동구 간석동 616-36	조각	봄-하모니	○		
7	미추홀구 도화동 642-17 (더프레스티움)	회화	휴일의 아침	○		
8	연수구 송도동 29-1	조각	별비	○		(위치이동)
9	연수구 송도동 29-2 (송도 푸르지오시티)	회화	사유의 흔적Ⅰ	○		
10		회화	새로운 탄생을 위한 성인식Ⅰ	○		
11		회화	새로운 탄생을 위한 성인식Ⅱ	○		
12		회화	냉정과 열정 사이- 하나가 되기까지	○		[권고] 작품의 독창성 및 내용적인 부분에서 미흡함. 가격과다
13		조각	시간 . 공간 - 여행	○		[권고] 시대적 흐름이나 트렌드와 동떨어져 있어 아쉽고 가격이 과다.
14	연수구 송도동 8-23(송도 지웰푸르지오시티)	미디어	Into a time frame_ Shanhai red wall V1 / Into a time frame _sunset in Spain	○		(위치이동 및 작품수 증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29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일괄이양법 등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고 개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일괄이양법 등에 따라 삭제하는 위임사무

○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등의 사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20. 5. 26. 시행) 개정으로 군수·구청장에게 사무권한을 부여하고, 농수산물품질법에 따른 사무를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재위임사무에서 삭제함.

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위임사무

○ 국가어항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어촌·어항법 개정(법률 제14244호, 2016.5.29.)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변경함.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127호, 2019.10.15.)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변경함

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부서명칭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 소관부서 변경

-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 : 문화유산과 ⇒ 문화예술과
- 국유재산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용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

○ 부서명칭 변경

- 문화재과 ⇒ 문화유산과
- 환경정책과 ⇒ 환경기후정책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032-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5, FAX) 032-440-8628,
E-mail) lubi4002@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칙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거주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9조제1항	
일자리경제과	1	가격표시제실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나. 가격표시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다.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 라.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3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 방지업무 가. 의견청취 나.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 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고발 등 바. 시정여부 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0조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 취급규정」제13조 같은 규정 제1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산 업 진 흥 과	1	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 중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조성 사업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의뢰 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2	「광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채광 재개신고 나. 조광권의 휴지 인가 다.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광업법」제4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2호	
농 축 산 유 통 과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농어촌정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나.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다.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사업시행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정비법」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사항은 제외한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승인.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2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사.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아.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차.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카.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타.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파.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하.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거.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너.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더.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노 인 정 책 과	1	노인복지시설 검사감독	「노인복지법」 제42조	
가 족 다문화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건의료 정 책 과	1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 원소유자인 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문 화 예술과	1	전통사찰의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권한 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	
문 화 콘텐츠과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재발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나. 결격사유 조회 다.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라.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마. 등록사항 직권말소 바.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 징수 (군・구 세외수입 처리)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1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31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처분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3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실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6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문 화 유산과	1	문화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미판명시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나.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다. 경찰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재의 처리 결과 통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환 경 기 후 정책과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및 신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등 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대 기 보 전 과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4호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 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자동차의 운행정지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같은 법 제70조의2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벌금,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5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에너지정책과	1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함) 가.「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다.「국가기술자격법」제1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청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2	일반용 전기공작물 기술수준적합 명령	「전기사업법」제71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5조제2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자 원 순 환 과	1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단,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써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구(군)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 가.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2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접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및 결과 공개 나.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 반환, 토지이용 제한 다.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 인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비용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명세서의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담보물의 접수,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접수, 반환금액의 결정,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접수,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제29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제2항, 제3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4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 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5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	「폐기물관리법」 제61조	
	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항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사용 권고 및 시정조치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제39조	
	7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수질환경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35조제3항	일부 제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라.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마.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제40조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0조	
		자. 배출부과금 관련 사무		
		1)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1조	
		2)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3)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4)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차.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2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44조	
		파.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같은 법 제45조	
		하.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거.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같은 법 제61조제2항	
		너. 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및 오염도검사 의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8조제2항	
		더.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같은 법 제72조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2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하천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한한다.)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나.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바.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 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 아.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자.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차.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타.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파.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6항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	
버스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마. 청문실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86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영업소, 정류소, 차고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인가(고속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택 시 화 물 과	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나.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0조	
		다.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같은 법 제14조	
		라. 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단,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 제외)	같은 법 제84조	
		사.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아. 면허취소(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함) 및 사업의 정지 처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차. 과태료 처분 및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카. 청문실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같은 법 제85조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94조	
		마. 청문실시	같은 법 제86조	
	3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관한 법률」제16조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변경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차. 청문 카. 등록증과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타. 운송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조제7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운송주선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5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6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법 제28조 및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13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	
	6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나.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 상태진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9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 개선명령 라.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70조	
교통관리과	1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권한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해양항만과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사업의 승계의 신고수리 다.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라.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사. 청문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7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7조	
	2	연안의 오염실태점검(「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의 항만구역 제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3	경미한 연안정비사업(구청장의 사업시행, 시행자 지정 등)의 경우 실시 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승인·협의·고시 및 통보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역항만 이외의 지역) 가.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나.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다. 해안 편의점·휴식용 의자의 설치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도 서 지 원 과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권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27조제1항	
		나.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에 대한 제1항제1호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27조제3항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의 제한 및 영어행위의 제한	같은 법 제27조제5항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3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권한	같은 법 제33조	
		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같은 법 제33조제1항	
	4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권한	같은 법 제34조	
		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의 사업 시행(단, 시장이 필요 시 직접사업 시행)	같은 법 제34조제1항	
		나.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의 강구·시행	같은 법 제34조제2항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	같은 법 제34조제3항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실비보상 권한	같은 법 제41조	
		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같은 법 제41조제1항	
		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에 따른 실비보상	같은 법 제41조제2항	
	6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권한	같은 법 제47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같은 법 제65조	
		가.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같은 법 제65조제2항제5호	
		나. 법제27조제1항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3호	
		다. 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4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역에서 개발행위 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수 산 과	1	국가어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신고 및 협의 나.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 다. 사용 또는 점용료의 징수 라.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어촌·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청문(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함)	 「어촌·어항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54조	
도 로 과	1	국유재산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관리·처분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2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관한 관리사무(동의 등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가목 「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나목 「국유재산법」 제1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다목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라.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라목	
		마. 관리전환의 협의 등	「국유재산법」 제1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마목	
		바.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국유재산법」 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바목	
		사.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제2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사목	
		아. 관리의 위탁	「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아목	
		자. 사용 허가 및 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자목	
		차. 사용료 징수 등	「국유재산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차목	
		카.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법」 제3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카목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타목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국유재산법」 제36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파목	
		하. 청문	「국유재산법」제3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하목	
		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제3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거목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너목	
		더. 대부	「국유재산법」제4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더목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국유재산법」 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러목	
		머. 멸실 또는 철거보고	「국유재산법」제7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머목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국유재산법」제72조 및·제7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버목	
		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국유재산법」제73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서목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제7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어목	
		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저목	
		처. 국유재산 내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처목	
건 설 심 사 과	1	지하도겸 지하상가 유지관리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 검사증의 교부 나. 검사의 최고 다. 정비명령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다목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3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제10호	
		차. 건설업 등록말소등의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의2호	
		카. 청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의2호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3호	
건 축 계 획 과	1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60m 이상의 건물 시설물)	「항공법」 제83조	
녹 지 정 책 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조림비 및 산림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4호	
		나. 산림용 종자묘목의 검사 및 출하금지·소독·폐기 등의 조치권	같은 법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제3호	
	2	「사방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권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이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승인권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다. 사방지안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권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라. 사방지의 지정 해제권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별표 2]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거주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9조제1항	
일자리경제과	1	「부정경쟁 방지업무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 방지업무 가. 의견청취 나.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 다. 위반행위에 시정권고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고발 등 바. 시정여부 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0조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 취급규정」제13조 같은 규정 제15조	
	2	가격표시 실시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나. 가격표시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다.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 라.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제3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산 업 진 흥 과	1	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 중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조성 사업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의뢰 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아.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자. 보고지시 및 검사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7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2	「광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채광 재개신고 나. 조광권의 휴지 인가 다.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2호	
농 축 산 유 통 과	1	구「농경지조성법」(1975.4.11.폐지)(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법 제16조(타인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나. 법 제17조(허가의 양도·상속자격) 다. 법 제18조(개간 준공인가) 라. 법 제19조(허가의 취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농어촌정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농어촌정비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나.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다.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사업시행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승인.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사.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아.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차.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카.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타.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파.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하.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거.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너.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더.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가 족 다문화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건의료 정 책 과	1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가.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및 취소 나. 동대리인의 신고 다. 취급자 대리인 변경신고	「약사법」 부칙 제6조	
	2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 원소유자인 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문 화 예술과	1	전통사찰의 다음 각목의 행위에 대한 권한 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마. 「산지관리법」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	
문 화 콘텐츠과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재발급 나. 결격사유 조회 다.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라.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마. 등록사항 직권말소 바.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 징수 (군・구 세외수입 처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1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31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처분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3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실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6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 화 유산과	1	문화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미판명시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나.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다. 경찰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재의 처리 결과 통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환 경 기 후 정책과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및 신청 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등 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대 기 보 전 과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4호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 중지· 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자동차의 운행정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의2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62조제3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호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수검명령	같은 법 제6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호	
		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4호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벌금,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5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제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같은 법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에너지정책과	1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함) 가.「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다.「국가기술자격법」제1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청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자 원 순 환 과	1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단, 「폐기물관리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써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구(군)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가.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다.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2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접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및 결과 공개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나.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사후관리 이행보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 반환, 토지이용 제한 다.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 인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비용명세서의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담보물의 접수,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접수, 반환금액의 결정,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접수,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제2항, 제3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4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 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5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	「폐기물관리법」 제61조	
	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항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사용 권고 및 시정조치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제39조	
	7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수 질 환경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변경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일부제외 (「산업입지 및 개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제3항까지	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다.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5조제3항	
		라.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마.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접수·확인 등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제40조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0조	
		자. 배출부과금 관련 사무		
		1)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1조	
		2)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3)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4)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차.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2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44조	
		파.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같은 법 제45조	
		하.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거.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같은 법 제61조제2항	
		너. 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출입, 채취, 검사 및 오염도검사 의뢰 더.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호, 제5호 및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82조	
버 스 정 책 과	1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면허 나. 운송개시 다. 운임의 신고 라. 운송약관의 신고 마. 사업계획변경인가 바.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치 아. 사업개선명령 자.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차.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카.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2	한정면허(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면허(등록) 나. 운임·요금 및 운송약관신고 다. 사업계획 변경 라. 공동운수계약협정신고 및 변경 신고 마. 사업개선명령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사. 사업의 상속신고 아. 사업의 휴·폐지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3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영업소, 정류소, 차고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인가(고속버스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같은 법 제85조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94조	
		마. 청문실시	같은 법 제86조	
택 시 화 물 과	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나. 임원 또는 정관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다. 사업상속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	
		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마. 시설확인 및 운송개시일 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승인	같은 법 제7조	
		바.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제8조	
		사. 운송약관의 신고	같은 법 제9조	
		아. 사업계획변경 인가	같은 법 제10조	
		자. 공동운수 협정신고	같은 법 제11조	
		차.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카.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같은 법 제13조	
		타.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신고	같은 법 제14조	
		파.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	
		하.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	같은 법 제89조	
		거.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 처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더. 인허가사항의 이행신고 및 그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단,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 제외)	같은 법 제84조	
		머.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버. <삭 제>	<삭 제>	
		서.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어. 과태료 처분 및 징수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3조	
		저. 청문실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9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나. 사업의 일부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같은 법 제85조	
		다.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라. 과태료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94조	
		마. 청문실시	같은 법 제86조	
	3	택시운전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가.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변경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같은 법 제3조제7항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같은 법 제38조제2항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1조제11항	
		바.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같은 법 제16조	
		아. 상속의 신고	같은 법 제17조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같은 법 제19조제1항	
		차. 청문	같은 법 제22조	
		카. 등록증과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같은 법 제20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타. 운송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다.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운송주선사업영업소의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5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6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법 제28조 및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제28조 및 제13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	
	6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나.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진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9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 개선명령 라.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70조	
교 통 관 리 과	1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나. 기계식주차장의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의 교부 다. 벌칙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같은 법 제19조의10제1항 같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2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3	택시미터기 수리에 관한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권한 중 「군 단위 이하의 출력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해양항만과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사업의 승계의 신고수리 다.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라.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사. 청문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7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7조	
도서지원과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나.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에 대한 제1항제1호의 행위제한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의 제한 및 영어행위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5항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3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	
	4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권한 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의 사업 시행(단, 시장이 필요 시 직접사업 시행) 나.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의 강구·시행 다. 해양보호구역에서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	 같은 법 제34조제3항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실비보상 권한 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에 따른 실비 보상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6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권한	같은 법 제47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가.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나. 법제27조제1항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다. 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4호	
수 산 과	1	국가어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신고 및 협의 나.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 다. 사용 또는 점용료의 징수 라.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 (「어촌·어항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함)	 「어촌·어항법」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5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마.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같은 법 제45조	
		바.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43조	
		사. 청문(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함)	같은 법 제54조	
도 로 과	1	일반국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도로법」 제50조제4항	
	2	일반국도의 접도구역내 다음사항 관리 가. 표주·표찰 및 표지 나.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다.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도로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3	국유재산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국유재산법」 제2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관한 관리사무(동의 등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가목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나목	
		다.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1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다목	
		라.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라목	
		마. 관리전환의 협의 등	「국유재산법」 제1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마목	
		바.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국유재산법」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바목	
		사.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국유재산법」제2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사목	
		아. 관리의 위탁	「국유재산법」제2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아목	
		자. 사용 허가 및 승인	「국유재산법」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자목	
		차. 사용료 징수 등	「국유재산법」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차목	
		카.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법」제3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카목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국유재산법」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타목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국유재산법」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파목	
		하. 청문	「국유재산법」제37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하목	
		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제3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거목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너목	
		더. 대부	「국유재산법」제4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더목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국유재산법」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러목	
		머. 멸실 또는 철거보고	「국유재산법」제7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머목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국유재산법」제72조 및 제7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버목	
		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국유재산법」제73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서목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제7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어목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 내 매장물 발굴 승인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저목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처목	
건 설 심 사 과	1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 검사 나. 검사의 최고 다. 정비명령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 등록말소등의 공고 및 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다목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3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제10의2호	
		카. 청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의2호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3호	
건축계획과	1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60m 이상의 건물 시설물)	「항공법」 제83조	
녹지정책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조림비 및 산림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4호	
		나. 산림용 종자묘목의 검사 및 출하금지·소독·폐기 등 조치권	같은 법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제3호	
	2	임업후계자 등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3	국유림 경영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중앙관서장 또는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작성한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또는 동의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6호	
		나.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작성한 국유림 경영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6호	
	4	「사방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권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인이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승인권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다. 사방지안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권 라. 사방지의 해제권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5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에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산림조합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기타 관계법령 발췌사항 ○ “별도 첨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일괄개정]

제5장 행정안전부 소관

제7조(「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12조제5항 중 "주무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제8호 중 "주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정부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으로 한다.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독한다.

2. 중앙회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제74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제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제7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제83조 본문 중 "주무부장관이나 회장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로, "제74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74조의3제1항제3호"로, "명하거나"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0장 환경부 소관

제25조(「환경보건법」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제23조제5항 및 제9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제3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7352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정책과

☞ 이양사무

□ 새마을금고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7조(설립)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7조

제12조(총회)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8.,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12조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0. 2. 18.>

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독한다.
2. 중앙회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74조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2. 18.>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74조의3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개선·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83조

환경정책과(생활환경과)

☞ 이양사무

□ 환경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23조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시행일 : 2021. 1. 1.] 제29조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33조

환경기후정책과

☞ 법령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 20.>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u>같은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u>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9. 10. 15.>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 10. 15.>]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삭제 <2015. 6. 9.>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음 페이지 계속 >

수산과

☞ 법령개정

□ 어촌·어항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어촌·어항법[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44호, 2016. 5.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 *현행법 제39조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5조 등에서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제39조 및 제41조).

제39조 삭제 <2016. 5. 29.>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22., 2019. 8. 27., 2020. 3. 24.>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14호, 2020. 5. 26.,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4호, 2020. 5.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하 생략...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10.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13., 2020. 5. 26.>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 2017. 10. 13., 2020. 5. 2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6. 1., 2017. 5. 29., 2019. 6. 18.>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약칭:농수산물품질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조사·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4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u>같은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u>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6.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8.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9.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문화유산과 / 환경기후정책과 / 도로과

☞ 조직개편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0.07.20.]

제11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문화콘텐츠과, 문화유산과, 도서관정책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 대회정산과를 둔다.

④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06.25.>

34. 전통사찰 등록·지원·보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국) ① 환경기후정책과, 생활환경과, 대기보전과,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수질환경과, 하수과를 둔다.

③ 환경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06.25.>

2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15조2(도시재생건설국) ① 도시재생건설국에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도로과, 고속도로재생과, 건설심사과를 둔다.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공유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국소관 건설사업(과년도)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수용보상

⑧ 건설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2. 삭제 <2020.06.25.>

3. 삭제 <2020.06.2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0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책임 강화되고,

나.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근로 처우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6조)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노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3층 306호, 전화: 032-440-2825, 팩스: 032-440-8655, 전자우편: shinpe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규모 : 1개소, 종사자3명
- 내　　용 : 시설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 입(국비)	640,000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규모(1개소)	1	1	1	1	1	1
세 출	1,280,000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 산출기준

- 운영비 :　29,000천원
- 사업비 :　61,000천원 (장기요양요원 지원)
- 인건비 : 110,000천원 (종사자3명)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50%, 시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소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세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비 등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1,280,000
	소계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1,280,000
재원 조달		20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1,280,000
국 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시비	소 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일반회계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64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1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사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가족단위 시설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명칭 명시 (안 제9조제3항)

나. 자연장형 신규 가족단위 시설(가족정원장) 운영 계획에 따라 봉안에만 국한된 현재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봉안시설에서 가족장사시설로 변경(안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제2항, 제20조의3의 제목, 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다.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라.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 신설(안 제21조의2 및 별표 2)

마. 신규 봉안시설 별빛당 명칭 신설(안 별표 1)

바.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범위에 관외주민 포함(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인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832, 팩스 : 032-440-8655, 전자메일 : dbsgustn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가족봉안묘 및 계단식가족봉안묘(이하 “가족봉안시설”이라 한다”)를”을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등”을 “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봉안시설”을 각각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5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 설 묘 지	비조성 묘 지	인천광역시 중 구영종공설묘지	인천광역시 중 구 운북동	
		〃 남 구주안공설묘지	〃 남 구 주안동	
		〃 연수구옥련공설묘지	〃 연수구 옥련동	
		〃 청학공설묘지	〃 청학동	
		〃 남동구장수공설묘지	〃 남동구 장수동	
		〃 도림공설묘지	〃 도림동	
		〃 운연공설묘지	〃 운연동	
		〃 논현공설묘지	〃 논현동	
		〃 수산공설묘지	〃 수산동	
		〃 서 구경서공설묘지	〃 서 구 경서동	
		〃 원창공설묘지	〃 원창동	
		〃 가정공설묘지	〃 가정동	
		〃 검암공설묘지	〃 검암동	
		〃 원당공설묘지	〃 원당동	
		〃 불로공설묘지	〃 불로동	
		〃 왕길공설묘지	〃 왕길동	
		〃 대곡공설묘지	〃 대곡동	
		〃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 부평구 부평동	
	조성 묘지	인천광역시 서구왕길조성묘지	인천광역시 서 구 왕길동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 부평구 부평동	
화 장 시 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봉 안 시 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신설)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자 연 장 지	·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 인천가족공원 정원식 수목장 · 인천가족공원 가족정원장(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유 택 동 산	·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부 속 시 설	· 장사문화홍보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제1항 관련)

1.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시설	봉안당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안담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1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봉안담 (12위)	사용료	1기	90년	9,500,000	-	
			관리료			5,760,000	-	
		가족 봉안담 (8위)	사용료	1기	90년	6,330,000	-	
			관리료			3,840,000	-	
	가족봉안묘 (16위)		사용료	1기	90년	8,8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4,500,000원	-	
	계단식가족 봉안묘(8위)		사용료	1기	90년	4,4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2,700,000원	-	
	무연고		사용료	1기	10년	150,000원	-	
자연장지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	1기	30년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	30년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정원장(6위)		사용료	1기	90년	7,200,000	-	
			관리료			2,160,000	-	
유택동산	산골		사용료	1기		10,000원	50,000원	

2. ~ 4. (생 략)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1. (생 략)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100분의50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3. ~ 6. (생 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및 계단식가족봉안묘(이하 "가족봉안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조성묘지 중 반환·개장된 분묘를 가족봉안시설로 재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족장사시설로 ----------
제19조의 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시장은 안치 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장사시설의 사용계약 및 허가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족봉안시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 가족장사시설의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재사용하는 가족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90년으로 한다.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 5년---------- ② ---------- ----------가족장사시설의 ----------
제20조의3(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등) ① 가족봉안시설의 사용권자는 사용허가 신청 당시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권자 및 사용권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 5. (생 략)	제20조의3(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 ① 가족장사시설의 ---------- ② 가족장사시설에 ----------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 (봉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① (생 략) ② 연고가 있는 유골은 사용권자로부터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할 것을	제21조 (봉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하며, 10년간 봉안시설내의 일정장소에 안치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 5년간 ----------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단서조항 신설)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제목개정 2015. 7. 20.]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2020. 1. 7.>

② 공설묘지·사설묘지의 설치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세입의 발생요인 : 가족형 장사시설 신규 사용허가를 통한 세입 확대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와 정상 유지를 통해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비용의 발생요인 : 가족형 장사시설 신규 운영에 필요한 관리와 정상 유지를 통해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5조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8조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료

➟ 신규 가족장사시설(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관련 사항 반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신규운영 대상 시설은 기존 봉안담과 암석장 시설을 활용하며, 가족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1년 중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 홍보비용 반영

- 2021년 시설개선, 홍보 비용

(단위 : 천원)

대상시설 및 내용			산출내역	비용	비고
합계				58,092	
시설 개선 비용	가족 정원장	경계목 설치	기당 90,000원 * 56기	5,040	
		게이트 설치	트랠리스형 1개	20,000	
		안내판 설치	안내판 1개	3,000	
	가족 봉안담	번호표 교체	금속 번호표 12,000원 * 1,696개	20,352	
		안내판 설치	안내판 1개	3,000	
홍보 비용		일간지 공고	사용자선정 공고 2회 * 2,000,000원	4,000	
		리플렛 제작	시설개요, 사용신청 홍보 5,000매	1,500	
		현수막 게시	현수막 150,000원 * 8개소	1,200	

○ 향후 시설 유지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가족정원장 연간 1%, 가족봉안담 연간 0.8%

※ 가족봉안담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가족정원장은 조경시설로 관리비용 차등 적용

- 연간 관리비용

(단위 : 천원)

대상시설	산출내역	관리비용(연간)	비고
계		2,862	
가족 봉안담	조성비용 261,184,000원 * 0.8%	2,090	
가족 정원장	조성비용 77,130,000원 * 1%	772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21~`25)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9,540	58,092	2,862	2,862	2,862	2,862

3. 세입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이후 연차별 사용허가 예상 수량

(단위 : 개)

대상 시설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족봉안담 (8위)	80 (100%)	40 (50%)	24 (30%)	16 (20%)	-	-
가족봉안담 (12위)	88 (100%)	35 (40%)	18 (20%)	18 (20%)	17 (20%)	-
가족정원장 (6위)	56 (100%)	34 (60%)	17 (30%)	5 (10%)	-	-

※ 2017년 가족봉안시설 사용허가 완료 2년 소요 : 1차년도 80%, 2차년도 20%

※ 핵가족화로 소규모 가족시설 선호 예상 및 가족봉안담에 대한 낮은 인지도 고려하여 연차별 소진 비율 추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대상 시설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680,640	1,259,140	677,880	484,200	259,420	-
가족봉안담 (8위)	813,600	406,800	244,080	162,720	-	-
가족봉안담 (12위)	1,342,880	534,100	274,680	274,680	259,420	-
가족정원장 (6위)	524,160	318,240	159,120	46,800	-	-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6. 작성자 :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가족봉안시설 사용수입	1,259,140	677,880	484,200	259,420	-	2,680,640
	소계	1,259,140	677,880	484,200	259,420	-	2,680,640
세출	시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소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일반회계	58,092	2,862	2,862	2,862	2,862	69,54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2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 등으로 정비함.

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어의 뜻과 산정기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안건 상정기준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의 뜻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개정함. (안 제3조제1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의 운영기준을 정비함. (안 제3조제2항, 제4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본관 5층 505호)

(2) 연락처: ☎ 032-440-4602, FAX 032-440-8678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또는 획지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영 및 조례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2/3 이내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말한다)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거나 또는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 제1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

3.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의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 제1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

제3조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을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등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제17조의2제3항”을 “조례 제17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

원회가 공동으로 하는”을 “공동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 또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의 조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획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 또는 세분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또는 세분후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또는 획지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현 행	개 정 안
위계획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통하여 정하는 용적률로서 시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거나 대지내 공지 및 보행공간의 조성,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녹지·광장·도로·하천·주차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지(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제3조(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현 행	개 정 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용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영 및 조례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세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1.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2/3 이내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2/3 이내
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말한다)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

현 행	개 정 안
	내
2. 영 제30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와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2.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거나 또는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가. 기준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조례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이내	나. 허용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상한용적률 : 제1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
3. 영 제30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3.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이내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의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다. 상한용적률 : 제1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

현 행	개 정 안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상한용적률의 산출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등의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 조례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조례 제17조의2 제3항----------.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 공동위원회의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안건의 상정 등) 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 등) ① 조례 제79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한다)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2. ~ 3. (생 략)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안건 사전심사 및 보고 5.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생 략)	제1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 등) ① ---------- 이라 한다----------. 1. 위원회 ---------- 2.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 ---------- 5. ----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 및 제13호, 제30조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4조, 제30조, 제42조의3제2항제12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제17조의2, 제17조의3제1항, 제79조, 제87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12. (생 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 20. (생 략)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⑦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가. 공공시설

나. 기반시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 15. (생 략)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 ① <삭제>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

제79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시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등

제8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27호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지진방재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 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재해원인 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 대응, 교육, 홍보, 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진방재자문) ①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 · 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6.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진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진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발생 시 정보수집
2. 관내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의 업무 지원 및 상황관리
3. 인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지원요청
4. 그 밖의 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건축물·가스·통신·전력·도로·상수도·하수도·철도·공항·항만 등 지진 피해분야 부서 및 관계기관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단장이 소집·운영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지진방재 관련 자문시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비용 발생시 2021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점검수당을 우선 활용하고, 자문수당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예산 확보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김원연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28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적극행정 교육을 명문화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모범사례를 공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적극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 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지원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4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지원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를 “위원회에는 위원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생 략)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1. ---------- 제6호 ---------- 2.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 위원회를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1항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 4. (생 략)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 1. ~ 4.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 위원회----------.
<신 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1)]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인천광역시 행정국 혁신과장 윤병철

---

1)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30호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 기능보강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5조(예산의 지원)에 시설 기능보강 지원 근거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amboh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붙임1)

다. 관계법령(붙임2)

라. 비용추계서(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운영”을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

(붙임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16조(재정)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55,000천원

○ 향군회관 승강기 보수 교체 비용 55,000천원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에 의함

※ 현재까지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 자부담으로(임대료 등 활용) 건물을 유지관리 해오고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수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임.

- 향군회관 승강기는 1996.1.26. 설치되어 24년이 경과된 상태로 설치검사를 받고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부품 및 장치를 추가하여 개정기준에 맞춰 개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국 보훈과장 김 관 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31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과 위약금 부담 경감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감면 등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 공개 기준 마련(안 제3조)

나.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4조)

다.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 발급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명시(안 제13조의2)

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 감소, 기간 차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안 제14조)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설치 금지규정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advanced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붙임1)

다. 관계법령(붙임2)

라. 비용추계서(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체육활동 및 행사”를 “체육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또는 이용료”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를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로 하여,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

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조 (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 5. (생 략) 6. 각 군・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9. (생 략) ② (생 략)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체육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 두 자녀 ----------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사용료 또는 이용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 설>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

	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노인복지법 ○ 제26조(경로우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 능원 · 박물관 ·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이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
- 사용료 반환 시 위약금 비율 감소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에 따른 지출비용 증가

나. 관련조문 :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및 감면현황에 의거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829,189천원

- 아이모아카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증가(세입 감소)

가구현황		**3자녀**, 30% 감면			**2자녀**, 30% 감면	
3자녀	2자녀	이용자수	감면금액	⇨	이용자수	감면금액
28,862	154,002 (5.3배)	11,591	162,042천원	x5	58,000	810,210천원 **(증 648,168천원)**

- 보훈대상자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증가(세입 감소)

현 재			⇨	확 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고엽제환자 국군포로		
대상자수	이용자수	감면금액		대상자수	이용자수	감면금액
34,000	7,800 (23%)	166,000천원		2,000	460	**9,794천원**

- 위약금 비율 감소(50%→10%)에 따른 비용 증가(세출 증가)

건수	반환금액(50%)	⇨	반환금액(90%)
5,512	214,034천원		385,261천원 **(증 171,227천원)**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수익 감소분	657,962	657,962	657,962	657,962	657,962	3,289,810
	소계	657,962	657,962	657,962	657,962	657,962	3,289,810
세출	비용 증가분	171,227	171,227	171,227	171,227	171,227	856,135
	소계	171,227	171,227	171,227	171,227	171,227	856,135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829,189	829,189	829,189	829,189	829,189	4,145,945
	일반회계	829,189	829,189	829,189	829,189	829,189	4,145,945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3. 작성자: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 완 근

군 · 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167호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도화동 1011번지)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 미추홀구 도화지구 상업용지 8-7블록 주상복합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8-7블록 (도화동 1011번지)
   나. 대지면적 : 36,570.20㎡
   다. 규 모
      1) 연면적 : 247,027.2083㎡
      2) 층수 및 동수 : 지하4층, 지상3~지상49층, 9개동 및 부속동
      3) 용도 및 세대수 : 공동주택 1,3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8개동)
         판매시설 및 문화및집회시설(1개동)
4.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0. 11. 30
5. 주요변경내역: 대지면적 변경(36,555.3㎡→36,570.2㎡)
6.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168호

『도화도시개발구역 8-5블록』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8-5블록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도화도시개발구역 8-5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8-5블록
   나. 대지면적: 16,409.9㎡
   다. 규 모: 지하 3층~지상 49층, 주4개동 및 부속7개동
   공동주택 5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93호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2017. 5. 31.
5. 사업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20. 11. 30.
6. 사업계획승인 변경내용
   ○ 대지면적 변경: 16,406.8㎡ → 16,409.9㎡
   ○ 건폐율 변경: 39.05㎡ → 39.04㎡
   ○ 용적률 변경: 439.38㎡ → 439.3㎡
   ○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확정지번 부여(도화동 1002번지)
7.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